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은선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16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운용 현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문제 해결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지출금액은 2015년 1조 8,163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중 4번째로 높은 편에 속함
- 동 제도는 적용된 17년간 7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고, 10여 차례에 걸쳐 공제율, 공제한도 등이 변경됨

<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대상)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적은 금액 ○ 일몰기한: 1999.9.1부터 2002.11.30까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여신전문금융법상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2.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02.12.1부터 2005.11.30.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수강료의 지로납부금액 공제대상 추가 - 신규 출고 자동차 구매 금액 및 리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매액 소득공제대상 제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직불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로 통일(중전 직불카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3.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추가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 - 적용시기: 201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은 2005.1.1.부터 적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 일몰기한: 2005.12.1부터 2007.11.30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2006.1.1.이후 지출분)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공제대상 제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 시 소득공제 허용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조특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소득공제 허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 일몰기한: 2008.1.1.부터 2009.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실지명화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이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에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대상 추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가,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정치기부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 공제한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로 인상 ○ 일몰기한: 2012.1.1.부터 2014.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한도초과분과 전통시장 사용분 중 적은 금액 추가로 공제 - 최저사용률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진행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로 인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30%로 인상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과 한도초과분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연장 ○ 기타: 직불카드등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의 신용카드등사용분이 2013년보다 초과된 경우 2014년 7월~12월과 2015년 1월~ 6월에 신용카드를 제외한 소득공제대상금액의 추가사용분이 2013년 소득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각각 초과한 경우 각 과세연도에서 동 초과금액의 10%를 추가공제(2015.1부터 적용) - 2015년의 신용카드등사용분이 2014년보다 초과된 경우 2015년 7월~12월과 2016년 1월~ 6월에 신용카드를 제외한 소득공제대상금액의 추가사용분이 2014년 소득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각각 초과한 경우 각 과세연도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추가공제(2015.12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1)) - 본 조항으로 적용할 시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사용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주: 1) 기획재정부, 「2014 간추린 개정세법」
자료: 김재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변천 과정

시행연도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연장
1999	10%	Min[300만원, 총급여액 10%]	총급여액의 10%	2002년
2001	20%	Min[500만원, 총급여액 20%]	〃	〃
2002	20%(30%)	〃	〃	2005년
2003	20%	〃	〃	〃
2004	〃	〃	총급여액의 15%	〃
2005	15%	〃	〃	2007년
2008	20%	〃	총급여액의 20%	2009년
2010	20%(25% ¹⁾)	Min[300만원, 총급여액 20%]	총급여액의 25%	2011년
2012	20%(30% ²⁾)	Min[300만원+ β ⁵⁾ , 총급여액 20%]	〃	2014년
2013	15%(30% ³⁾)	Min[300만원+ γ ⁶⁾ , 총급여액 20%]	〃	〃
2015	15%(30%+ α ⁴⁾)	〃	〃	2016년

주: 1) 직불/선불/체크카드, 전자결제지급수단, 전자화폐 적용 공제율

2) 주 1)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 주 2) +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공제율

4) α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5) β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작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6) γ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대중교통 이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작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자료: 김재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6조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을 한도로 동 초과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소득공제에 적용됨
 -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30%, 전년대비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의 25%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공제액부터 차감하여 근로소득자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의 합과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의 한도는 각각 100만원으로 적용함
 -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2014년에는 총 825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표 3> 연도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단위: 백만원, 명, 만원)

연도	공제금액(A)	공제인원(B)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A/B)	1인당 경감세액
2007	9,064,949	5,385,390	168.3	20.0
2008	13,143,132	5,503,770	238.8	26.5
2009	13,839,775	6,253,955	221.3	19.6
2010	11,563,158	6,305,853	183.4	15.9
2011	12,828,036	6,739,692	190.3	17.2
2012	14,886,973	7,246,023	205.5	18.8
2013	16,642,766	7,645,693	217.7	20.3
2014	19,194,108	8,252,634	232.6	2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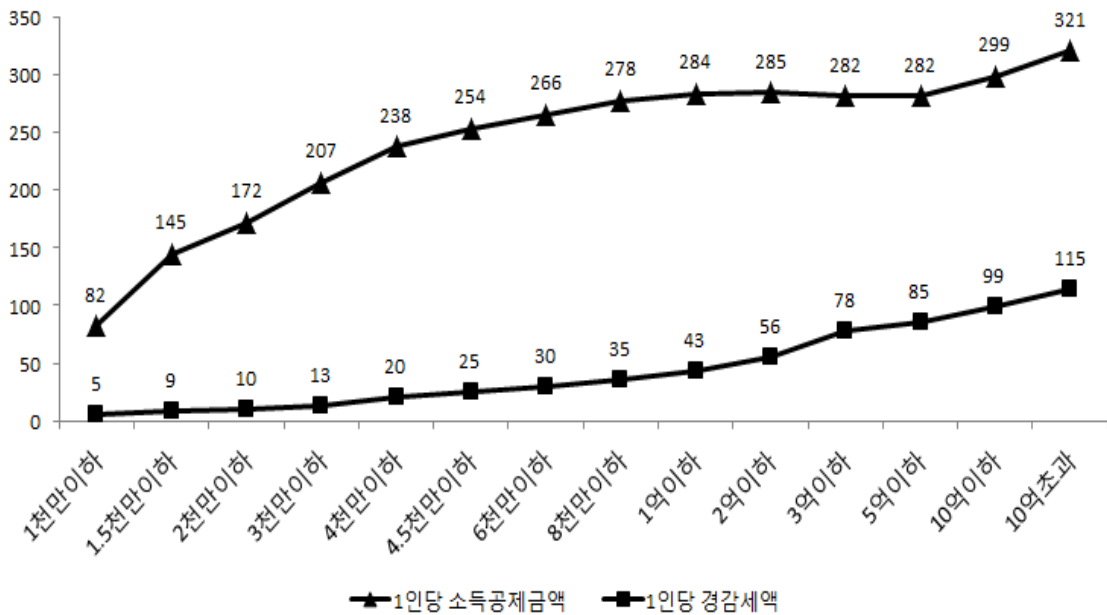
-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232.6만원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23만원으로, 2007년부터 20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과 총급여 2~3억원 구간에서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한계세율을 적용한 경감세액을 고려할 경우 약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 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에서는 평균 172만원, 총급여 2~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282만원을 받음
- 한계세율²⁾을 적용한 1인당 경감세액은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에서는 10만원, 총급여액 2~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7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2014년)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년

2) 한계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II. 부문별 종합평가 의견

1.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에서는 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했고, 제도를 통한 지원대상 및 제도 방식 등의 적절성 판단을 통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분석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 납세인원 및 세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세금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금액에 비해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의 상용화로 인하여 동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과표양성화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제도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어 왔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일몰 연장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지만, 공제인원과 총 공제금액은 중하위계층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동 제도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이들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소득공제제도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효과성 평가

- 효과성 평가에서는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공제제도 변경 및 조항 추가를 통한 소득수준별 공제 혜택 귀착효과를 통하여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함
- 본 평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측면, 제도의 형평성 측면,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추가공제조항의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과표양성화 측면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납세인원과 세수가 증가하였고, 카드에 의한 결제가 일상화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표 4>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및 세수 추이

(단위: 천명, 십억원)

연도	종합소득세 ¹⁾				부가가치세 ²⁾			
	인원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인원	전년대비	금액	전년대비
1999	1,322	8.96%	3,314	16.0%	2,767	4.1%	4,216	22.8%
2000	1,535	16.11%	4,237	27.9%	3,112	12.5%	5,149	22.1%
2001	1,741	13.42%	4,975	17.4%	3,388	8.9%	5,093	-1.1%
2002	1,942	11.55%	4,382	-11.9%	3,618	6.8%	5,558	9.1%
2003	2,031	4.58%	5,467	24.8%	3,636	0.5%	6,047	8.8%
2004	2,133	5.02%	5,934	8.5%	3,570	-1.8%	7,273	20.3%
2005	2,195	2.91%	6,365	7.3%	3,723	4.3%	8,288	14.0%
2006	2,616	19.18%	7,777	22.2%	3,841	3.2%	9,552	15.3%
2007	2,900	10.86%	9,180	18.0%	4,146	7.9%	10,853	13.6%
2008	3,393	17.00%	9,757	6.3%	4,412	6.4%	12,128	11.7%
2009	3,336	-1.68%	9,593	-1.7%	4,605	4.4%	12,348	1.8%
2010	3,529	5.79%	10,697	11.5%	4,703	2.1%	13,680	10.8%
2011	3,703	4.93%	12,484	16.7%	4,798	2.0%	14,799	8.2%
2012	3,903	5.40%	13,447	7.7%	4,793	-0.1%	15,146	2.3%
2013	4,106	5.20%	14,712	9.4%	4,988	4.1%	15,946	5.3%
2014	4,589	11.76%	16,937	15.1%	4,970	-0.4%	16,480	3.3%

주: 1) 해당연도에 귀속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연도 2기 확정신고자 수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신고인원 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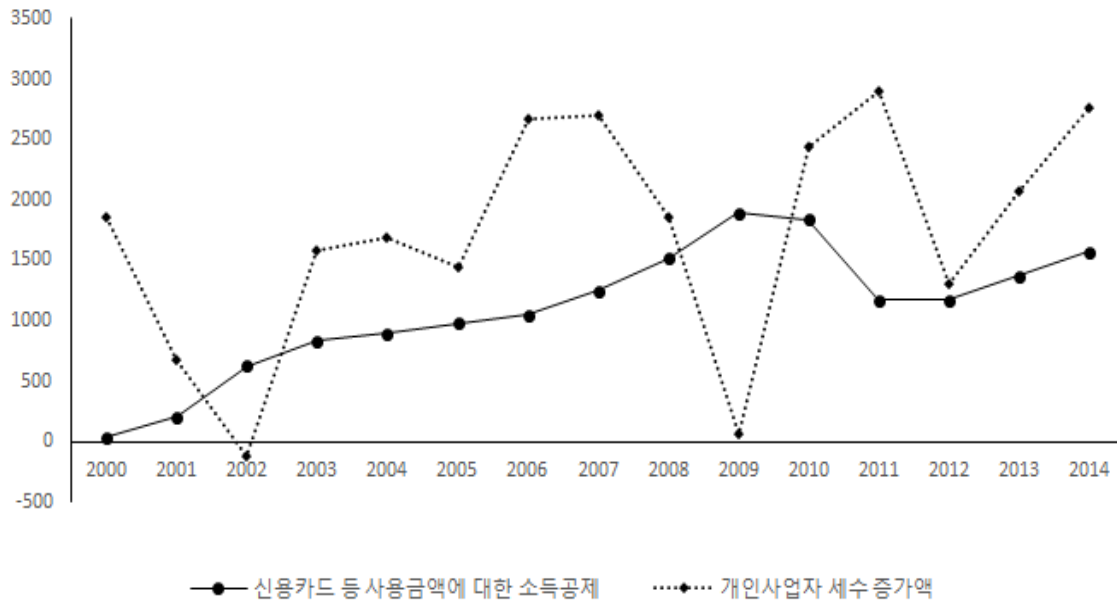
- 형평성 측면에서는 제도의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체 근로자의 3.1%인 총급여 1억원 초과 계층에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에 해당하는 1,887억원이 귀착되었고, 전체 근로자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2천만원 이하 계층은 약 4.7%인 888억원이 귀착됨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혜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제문턱 인상 및 공제한도 인하,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전통시장 소비 및 대중교통 이용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제도로 인한 소비 진작효과는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 제도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움

3. 효율성 평가

- 효율성 평가에서는 제도의 편익 및 비용을 추산하여 제도의 경제적 운용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분석함
- 제도의 편익은 세수 증대효과로,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극적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유지로 인한 증분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동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 조세지출비용은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세수증가액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에 약 2,000억원 증가하였으나, 이후 세수증가액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도의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증가액 비교

(단위: 억원)



- 제도의 비용으로는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있고, 이 중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일몰 이후 제도를 축소하여 제도 축소 및 직불카드 등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거나, 제도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표 5>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회적 비용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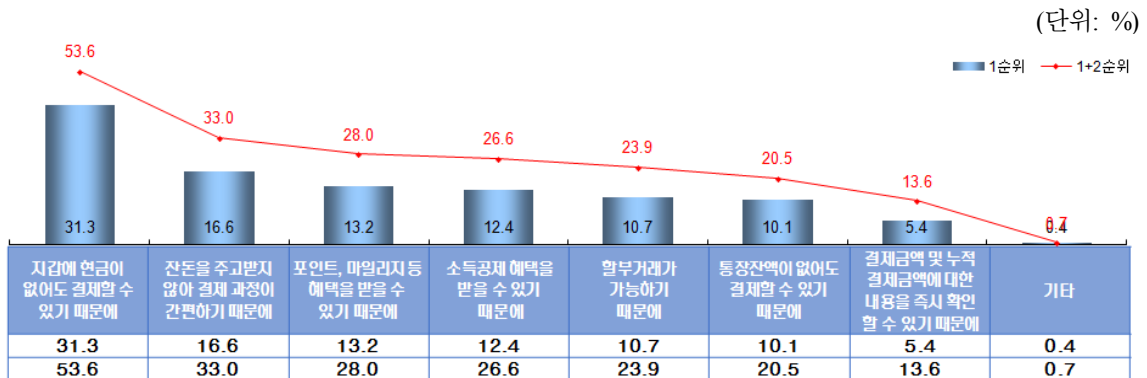
연도	직접비용				간접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비용
1999	-	72	16	-	-	-
2000	35	243	27	18	-	-
2001	203	543	42	19	-	-
2002	623	755	60	19	-	-
2003	831	775	41	16	2,158	17
2004	897	544	30	6	1,636	366
2005	981	499	20	5	2,019	395
2006	1,047	589	28	6	3,361	202
2007	1,251	699	37	6	5,610	238
2008	1,517	845	39	5	5,575	268
2009	1,893	1,004	38	5	6,130	249
2010	1,841	1,233	41	3	7,195	237
2011	1,173	1,383	42	-	8,569	277
2012	1,170	1,441	-	-	8,849	250
2013	1,372	1,367	-	-	9,260	185
2014	1,571	1,389	-	-	9,963	168
2015	1,816	1,348	-	-	10,730	191
합계	18,220	14,726	458	107	81,055	3,042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신용회복위원회

IV. 설문조사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일반 근로자들의 의식과 실태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행위 변화를 파악하고,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경험이 3회 이상 있는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33.0%),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 대부분이 소득공제제도의 편의보다는 이용 편의성에 대한 측면이 매우 큼

[그림 3] 신용카드 주 이용 이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율은 모르고 있음(42%, 잘 모르는 편+전혀 모르고 있음)이 알고 있음(14.3%, 매우 잘 알고 있음 + 잘 아는 편)보다 높게 나타남
 - 제도의 세부 조항 인지도 분석 또한 제도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높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1순위 35.9%,

1+2순위 62.4%), ‘제도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큼’(1순위 26.2%, 1+2순위 55.5%),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움’(1순위 27.9%, 1+2순위 49.9%)이 그다음으로 나타남

〈표 6〉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단위: %)

제도 내용	1순위	1+2순위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 높음	35.9	62.4
소득공제 혜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큼	26.2	55.5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움	27.9	49.9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지출 비용이 큼	9.7	31.2

- 제도 개편 시 가장 선호되는 방안으로는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함’이 가장 높았고(1순위: 41.2%, 1+2순위 65.5%),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등의 의견이 다음으로 많이 선택됨

〈표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편 선호 방안

(단위: %)

제도 내용	1순위	1+2순위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함	41.2	65.5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非신용카드와 공제율 격차 늘림	21.2	43.6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동일하게 함	13.3	29.6
최저사용금액(충급여액의 25%) 기준을 인상함	9.5	22.2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제한도 및 공제율 축소	7.2	19.3
정책목적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폐지, 추가재원 타 목적으로 사용함	6.8	17.2

V. 정책방향 및 결론

- 타당성·효과성·효율성 평가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제도 유지로 인한 추가적인 정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득공제보다는 편의성 등의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으므로, 제도 폐지로 인한 과표양성화의 급격한 후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제도의 단순화) 소득공제제도를 단순화하여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조항을 폐지함
- (제도의 효율성 제고) 소득공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제율 인하 및 최저사용금액 인상을 통하여 조세지출비용을 인하시켜 조세지출비용을 낮춤
- (제도의 형평성 개선) 고소득자에 편중된 공제 혜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한도 인하,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추가공제금액 폐지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고려함

①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통시장 소비 및 대중교통 이용에 뚜렷한 효과가 없으므로, 제도를 폐지하여 단순화함

- (1안)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를 모두 폐지하였을 때, 현행 제도 대비 조세지출규모가 약 10~15% 감소했고, 총급여액 수준별 공제 혜택 감소율이 비교적 균일함
- (2안)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제도의 평균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11만원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한도 인상 전보다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 혜택이 적게 감소함
 - 총급여액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두 제도를 폐지했을 때보다 공제 혜택 감소율이 약 1~3%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제도의 효율성 제고:** 조세지출 비용을 절감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와 최저사용금액 인상을 고려함

- (1안)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시 전반적인 조세지출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공제율을 인하해도 여전히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던 고소득층의 혜택은 저소득층에 비해 적게 감소하여 공제 혜택이 여전히 역진적인 것으로 확인됨

- 신용카드공제율을 10%로 인하했을 때 조세지출액이 2014년의 조세지출액보다 약 5% 감소했고, 소득 1~2천만원 구간의 공제 혜택이 다른 소득구간비율에 비해 많이 감소함
- (2안) 최저사용금액을 인상한 경우에 고소득층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경감세액 감소율이 높음
 -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0%로 인상한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에 비해 1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제도의 형평성 개선:** 공제한도 인하, 추가공제제도 폐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함

- (1안) 추가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감소함
 - 추가공제제도로 인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효과와 비슷함
- (2안) 공제한도를 150만원으로 인하 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초과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총급여 2천만원 이상의 공제 혜택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의 공제 혜택은 그보다 낮은 소득구간보다 더 많이 감소함
- (3안) 소득구간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여 총급여액 상위 10%의 공제한도를 인하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함
 - 소득세 기본세율을 고려하여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차등화함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 혜택이 약 5~33% 감소하였으나, 전체 근로자 중 10%의 공제 혜택만 감소하여 조세지출액은 약 2%만 감소함
- (4안) 세액공제 전환 시 동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므로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용카드공제율 1%, 그 외 공제율 2%를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급여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공제 혜택이 이전보다 상승하였고,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감소하여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형평성이 이전보다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 제도별 공제 혜택 감소율¹⁾

제도	총급여액별 공제 혜택 감소율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전체		
제도 단순화	전통시장공제율 폐지	4%	4%	4%	5%	5%	1~7%	5%		
	대중교통공제율 폐지	8%	6%	5~6%	5~6%	7%	0~7%	6%		
	모두 폐지	13%	10%	10%	10~11%	12%	1~14%	11%		
제도 효율성 제고	모두 폐지+공제한도 300→311만원	13%	9~10%	8~9%	8~9%	10%	-3~11%	9%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공제율 10%)	5%	8%	5~6%	3~4%	3%	0~7%	5%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공제율 5%)	12%	19%	12~15%	9~10%	8%	0~6%	12%		
	최저사용금액 인상(총급여액 30%)	4%	7~9%	9~10%	10%	12%	0~42%	11%		
	최저사용금액 인상(총급여액 35%)	8%	13~17%	18~19%	20%	25%	25~62%	21%		
고소득층 공제 혜택 집중 해결	추가공제한도 200→100만원, 공제한도 300→200만원	0~10%	15%	18~21%	23~24%	25%	25~33%	21%		
	공제한도 300→150만원	4%	22~27%	31~35%	37~38%	38%	36~49%	34%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0%	0%	0%	0%	5%	25~33%	2%		
	신용카드공제율 1% 그 외 공제율 2% 공제한도 50만원	67%	-3~18%	-35~10%	8~14%	24%	54~62%	10%		
	신용카드공제율 0.5% 그 외 공제율 1% 공제한도 50만원	82%	40~48%	31~43%	51~53%	59%	54~75%	52%		

주: 1) 각 제도 적용 시 현재 공제 혜택 대비 감소율이므로 음수인 경우 공제 혜택이 2014년보다 증가한다는 의미임

2) 직불카드 등 공제율, 현금영수증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을 의미함

목 차

I. 서 론	29
II.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33
1. 「여신전문금융업법」	35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37
II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39
1. 도입배경	41
가. 도입목적	41
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개요	42
2.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과표양성화 과정	45
가. 카드 지급결제수단 거래의 과표양성화	45
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과표양성화	50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과정	52
가. 1999년 도입	52
나. 2001년 개정	53
다. 2002년 개정	53
라. 2003년 개정	55
마. 2004년 개정	55
바. 2005년 개정	55
사. 2006년 개정	56
아. 2007년 개정	56
자. 2009년 개정	57
차. 2011년 개정	58
카. 2012년 개정	59

다. 2014년 개정	60
파. 현행 제도	61
IV.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 현황	69
1. 연도별 공제금액·공제인원 및 경감세액	71
2. 총급여액수준별 공제인원 및 1인당 공제금액	73
가. 총급여액수준별 공제인원	73
나. 총급여액수준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75
다. 총급여액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76
3. 공제제도 변경이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에 미친 효과	77
가. 2008년 세법개정효과	
(공제율 15%→20% 인상/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15%→20% 인상)	78
나. 2010년 세법개정효과	
(직불카드공제율 20%→25% 인상/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인하/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25% 증가)	80
다. 2012년 세법개정효과	
(직불카드 공제율 25%→30% 인상/ 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 포함)	82
라. 2013년 세법개정효과	
(신용카드 공제율 20%→15% 인하/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대중교통이용액 공제율 포함)	83
4. 연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 추이	84
5.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추이	89
6. 제도변경 시 공제항목 사용금액 변동 추이	90
V. 타당성 평가	95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97
가. 지원의 필요성	97
2. 정책 수행방법의 적절성	100
가. 조세지원 대상의 적절성	100
나.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102
3. 정책적 시사점	104

VI. 효과성 평가	107
1.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	109
가.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및 세수 증가	109
나. 신용카드 등 사용 활성화	128
2. 형평성 측면	148
가. 소득분위별 공제 혜택	148
나. 공제문턱, 공제율, 공제한도 조정 시 공제 혜택	153
다. 세액공제로 변동 시의 공제 혜택	159
3.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측면	162
가. 전통시장 이용률 추이	162
나. 대중교통 이용률 추이	166
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시 혜택 비교	168
4.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추가공제조항을 통한 소비 활성화 측면	170
가.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공제를 통한 소비증가 추이	170
5. 정책적 시사점	174
VII. 효율성 평가	179
1. 편익 측면	181
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181
2. 비용 측면	186
가. 조세지출비용	186
나. 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업자 수수료	190
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비용	193
3. 정책적 시사점	194
VIII. 설문조사 결과	197
1. 조사 개요	199
가. 조사 목적	199
나. 조사 설계	199
다. 조사 결과	200

IX. 정책방향 및 대안	213
1. 정책 방향	215
가. 타당성·효과성·효율성 평가의 정책 시사점	215
나.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 시사점	217
2. 정책 대안	221
가. 제도의 단순화	222
나. 제도의 효율성 제고	228
다. 제도의 형평성 개선	236
라. 정책적 시사점	244
참고문헌	247
부 록	249
부록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지	251
부록2.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제출서식	263
부록3.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제출서식	264
부록4.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제출서식	265
부록5.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정보 제출서식	266
부록6. 신용카드 회원 등의 항목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출서식 ...	267
부록7. 주유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정보 제출서식	268

표 목 차

<표 II-1> 국내 신용카드발급사 현황(2014년 9월말 기준)	37
<표 II-2> 국내 VAN사 현황	38
<표 III-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변천 과정	43
<표 III-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
<표 III-3> 카드 지급결제수단 개요	48
<표 III-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변천 과정	62
<표 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행 제도	64
<표 III-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변천 과정 ..	66
<표 IV-1> 연도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	72
<표 IV-2> 총급여액수준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인원	73
<표 IV-3> 연도별·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공제금액	76
<표 IV-4> 연도별·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77
<표 IV-5> 2007, 200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78
<표 IV-6> 2011, 201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80
<표 IV-7> 2011, 201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82
<표 IV-8> 2012,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84
<표 IV-9> 총급여액 구간별 인원 분포	85
<표 IV-10>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자 수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 분포	86
<표 IV-11>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88
<표 IV-12> 연도별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비율	89
<표 IV-13> 연도별 공제율 변동	91
<표 IV-14> 2012~2013년 소득수준별 공제항목별 사용금액 비중	91
<표 V-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이	98

<표 V-2> 과세대상 소득규모별 공제인원과 소득공제금액	103
<표 V-3>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과 지출액 추이	106
<표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신고인원	110
<표 VI-2>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113
<표 VI-3>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115
<표 VI-4>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17
<표 VI-5>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자료	121
<표 VI-6>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신고인원	122
<표 VI-7>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과세표준	124
<표 VI-8>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자료	125
<표 VI-9> 부가가치세 Tax Gap 추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127
<표 VI-10> 신용카드 발급실적	129
<표 VI-11> 신용카드 가맹점 수	130
<표 VI-12>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131
<표 VI-13> 민간소비지출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133
<표 VI-14>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건수	135
<표 VI-15> 연도별 건당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136
<표 VI-16>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 국가 간 비교	137
<표 VI-17>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139
<표 VI-18>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건수	141
<표 VI-19>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금액	142
<표 VI-20>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145
<표 VI-21>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46
<표 VI-22>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액수	147
<표 VI-23>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2014년 기준)	150
<표 VI-24> 급여구간별 과세비율 및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152
<표 VI-25>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비교(2014년 기준)	151
<표 VI-26> 공제문턱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155
<표 VI-27> 공제한도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157
<표 VI-28> 공제율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158

<표 VI-29> 세액공제로의 전환 방안	160
<표 VI-30>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시 공제 혜택 추정	161
<표 VI-31> 전통시장 경영현황	162
<표 VI-32> 전통시장 매출액 추정	163
<표 VI-33>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	164
<표 VI-34> 신용카드 취급비율	165
<표 VI-35> 급여구간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165
<표 VI-36> 대중교통 이용횟수	166
<표 VI-37> 교통수단별 여객운송실적	167
<표 VI-38>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시 효과 추정	169
<표 VI-39> 연도·분기별 소비동향	171
<표 VI-40> 2015년도 카드사용동향	172
<표 VI-41> 2015년도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 변화	173
<표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182
<표 VII-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변화 추이	184
<표 VII-3>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화추이	185
<표 VII-4>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187
<표 VII-5>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비교	189
<표 VII-6> 연도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90
<표 VII-7>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 비교	191
<표 VII-8>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비중 비교	192
<표 VII-9>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수	193
<표 VII-10> 연도별 워크아웃 인원 수 및 감면금액	194
<표 VIII-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99
<표 VIII-2> 지불결제수단별 이용횟수(10회 가정, 평균값)	201
<표 VIII-3> 지불결제수단별 이용금액(100%, 평균값)	201
<표 VIII-4> 구체적 제도 내용별 인지도	202
<표 V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비·지출 영향 정도	203

<표 VIII-6> 구체적 제도 내용별 소비·지출 영향도	204
<표 VIII-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210
<표 VIII-8> 세액공제제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	210
<표 VIII-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조세수입 감소 내용 인지 여부	210
<표 VIII-10>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211
<표 VIII-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편 선호 방안	211
<표 IX-1> 공제조항 폐지에 따른 공제 혜택 변화	224
<표 IX-2> 소득별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신용카드 소득공제수혜자 대상)	225
<표 IX-3> 공제조항 폐지 및 공제한도 11만원 인상 시 공제 혜택	228
<표 IX-4>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233
<표 IX-5> 최저사용금액 인상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추이	236
<표 IX-6> 과세표준별 적용세율(2014년 기준)	240
<표 IX-7> 공제한도 인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241
<표 IX-8> 세액공제로 전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244
<표 IX-9> 제도별 공제 혜택 감소율	245
<표 IX-10> 신용카드 공제율 하락 및 직불카드 등 공제율 인상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246

그 립 목 차

[그림 II-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38
[그림 III-1] 신용·체크카드의 연도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증가율	47
[그림 III-2] 3당사자 간 거래구조	49
[그림 III-3] 카드거래의 과표양성화 과정	50
[그림 III-4]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과표 양성화 과정	51
[그림 III-5]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추이	66
[그림 III-6]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공제율 추이	67
[그림 III-7]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최저사용금액 비율 추이	67
[그림 IV-1] 연도별 공제금액 및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추이	72
[그림 IV-2] 총급여액 규모별 공제인원 비중	75
[그림 IV-3] 2007, 2008년 소득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인원 추이	79
[그림 IV-4] 2009, 2010년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추이	79
[그림 IV-5] 2009, 2010년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추이	81
[그림 IV-6] 2009, 2010년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 추이	81
[그림 IV-7] 2011, 2012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추이	83
[그림 IV-8] 총급여액 구간별 인원분포(2014년)	86
[그림 IV-9]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자 수 대비 신용카드 수혜자 분포(2014년)	87
[그림 IV-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추이 ...	88
[그림 IV-11] 2014년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비율	90
[그림 IV-12] 신용카드사용액 비중 변화	92
[그림 IV-13] 직불카드등 사용액 비중 변화	93
[그림 IV-14] 현금영수증사용액 비중 변화	94
[그림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신고인원	111

[그림 VI-2]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납세인원	112
[그림 VI-3]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납세인원비율	112
[그림 VI-4]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인원 및 납부면제인원	113
[그림 VI-5]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인원비율	114
[그림 VI-6]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116
[그림 VI-7] 연도별 개인사업자 기장신고인원 수	118
[그림 VI-8] 연도별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	118
[그림 VI-9]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장부기장비율	119
[그림 VI-10]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 비교(2014년 기준) ...	120
[그림 VI-11]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	123
[그림 VI-12] 업태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비중(2014년 기준)	126
[그림 VI-13] 현금수입업종의 연도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비중	126
[그림 VI-14]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128
[그림 VI-1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132
[그림 VI-16] 민간소비지출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변화추이	133
[그림 VI-17] 민간소비지출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 비교	134
[그림 VI-18]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	134
[그림 VI-19] 주요국의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 비교	138
[그림 VI-20] 상위 10대 업종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2015년 기준)	140
[그림 VI-21]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금액	143
[그림 VI-22]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144
[그림 VI-23] 급여구간별 소득세 감면규모 추정	148
[그림 VI-24] 급여구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정액(2014년 기준)	151
[그림 VI-25] 1인당 공제 혜택 비교(2014년 기준)	151
[그림 VI-26] 급여구간별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2014년 기준)	153
[그림 VI-27] 공제문턱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	156
[그림 VI-28] 공제한도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	157
[그림 VI-29] 소득공제율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	159
[그림 VI-30] 세액공제(방안 1)방식으로 전환 시 급여구간별 상대적 공제 혜택 비교 ...	160
[그림 VI-3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 추이	163
[그림 VI-32]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	164

[그림 VI-33] 급여구간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비중	166
[그림 VI-34] 대중교통 이용횟수	167
[그림 VI-35]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	170
[그림 VI-36] 연도·분기별 소비동향 추이	171
[그림 VI-37] 2015년도 카드사용동향	173
[그림 VI-38] 2015년도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 변화	174
[그림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181
[그림 VII-2] 연도별 GDP 및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율	183
[그림 VII-3]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액 및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율	183
[그림 VII-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변화 추이	185
[그림 VII-5]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화추이	186
[그림 VII-6]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188
[그림 VII-7]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비교	189
[그림 VII-8]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이용액 추이	192
[그림 VI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지도	201
[그림 VIII-2] 구체적 제도 내용별 인지도	203
[그림 VIII-3] 제도 관심도	205
[그림 VIII-4] 추가소득공제 혜택 조건 이해도	205
[그림 VIII-5] 전반적인 소비지출 영향 정도	206
[그림 VIII-6] 각 조항별 소비지출 영향 정도	207
[그림 VIII-7] 전통시장 비이용 이유	208
[그림 VIII-8] 신용카드 주 이용 이유	209
[그림 VIII-9]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 시 이용 조정 여부	209
[그림 IX-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218
[그림 IX-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선호 방안	218
[그림 IX-3] 제도 관심도	219

[그림 IX-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도로 인한 소비·지출 영향	220
[그림 IX-5] 공제제도 조항 추가에 따른 소비 변화(조항을 알고 있는 응답자 대상) ...	221
[그림 IX-6] 각 조항별 소비지출 영향 정도	225
[그림 IX-7] 소득구간별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이용금액 및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추이(소득공제수혜자 대상)	226
[그림 IX-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전년대비 증가율 및 공제율 변동 ...	229
[그림 IX-9]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신용카드 공제율	229
[그림 IX-10]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0% 적용 시 소득별 공제금액 비중 추이 ..	231
[그림 IX-11]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5% 적용 시 소득별 공제금액 비중 추이	232
[그림 IX-12]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0%로 인상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234
[그림 IX-13]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5%로 인상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235
[그림 IX-14] 공제한도 150만원으로 감소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238
[그림 IX-15] 세액공제[방안 1]로 전환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공제수혜자 대상) ...	243

I. 서론



I. 서 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한 경우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여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표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9월에 도입됨
 -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90년대 말까지도 장부기장에 따라 과세되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30~50%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됨
 - 과세당국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여섯 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되었고, 카드 사용 현황 및 경제 여건에 따라 공제율, 공제한도 등의 세부조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최근 개정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안정화되었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인하되었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인상됨
 - 또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였고,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증가하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소비 활성화 목적의 제도도 추가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인원 및 조세수입 추이를 파악을 통해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인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 여부를 판단함
 - 소득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공제율 변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공제 혜택 변화를 파악하여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재설정함
 - 동 제도는 1~3년에 한 차례씩 이루어진 일몰기간 연장 시기의 경제 여건에 따라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등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시 활용함

- 동 보고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목적 및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차후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함
 - 특히, 동 제도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제 수혜대상자 및 공제금액 변경 등에 따른 효과를 과거 조세자료를 이용해 산출하여 도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판단하여 추후 제도 개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II. 신용카드 관련 법령 및 이해관계자

1.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을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최근 신용카드 다음으로 주로 사용되는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되어 있음
 -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및 서비스³⁾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의미함
 -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에 따라 결정됨
 -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뜻함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과 관련된 거래는 신용카드 사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카드에 기록된 금액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임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자와 가맹점 간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의미함⁴⁾
 - 지급수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함께 카드수단 중 ‘직불형 카드’로 구분되나⁵⁾ 법적으로는 직불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자를 의미함
-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여신금융업의 허가조건은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자본금이 200억원,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유통, 직불카드 발행 및 대금 결제, 선불카드 발행·판매 및 대금결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금액 결제업무로 한정됨
-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결제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함
- 신용카드 가맹점은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동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없음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5)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p. 130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의 이해관계자는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발급사, 신용카드 채권매입자, VAN(Value Added Network)사로 이루어져 있음
 -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함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계약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단말기를 설치한 집단을 뜻함
 - 신용카드 발급사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은행 및 카드사를 의미함
 - 신용카드 발급사와 신용카드 채권매입자를 통틀어 신용카드 사업자로 지칭함
 - 2014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신용카드 사업자 수는 23개사로, 전업카드사 9개사, 겸영은행 11개사,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는 3개사인 것으로 확인됨⁶⁾

<표 II -1> 국내 신용카드발급사 현황(2014년 9월말 기준)

(단위: 개사)

구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제휴)
전업카드사	은행계	6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산은캐피탈,
	기업계	3	롯데, 삼성, 현대
겸영 은행		11	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전북, 제주, NH농협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3	백화점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 수(전업 및 겸영)		23(20)	

자료: 여신금융협회

- VAN사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거래의 전송 및 조회, 매출전표 수집 및 청구 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수업무를 담당함
 - 국내에는 총 16개의 VAN사가 있고, 이들은 거래형태별, 거래건수별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얻음

6)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 이미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VAN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 및 무서명 거래 확대를 통하여 VAN사 및 VAN사 대리점 업계의 기반이 약화됨

<표 II -2> 국내 VAN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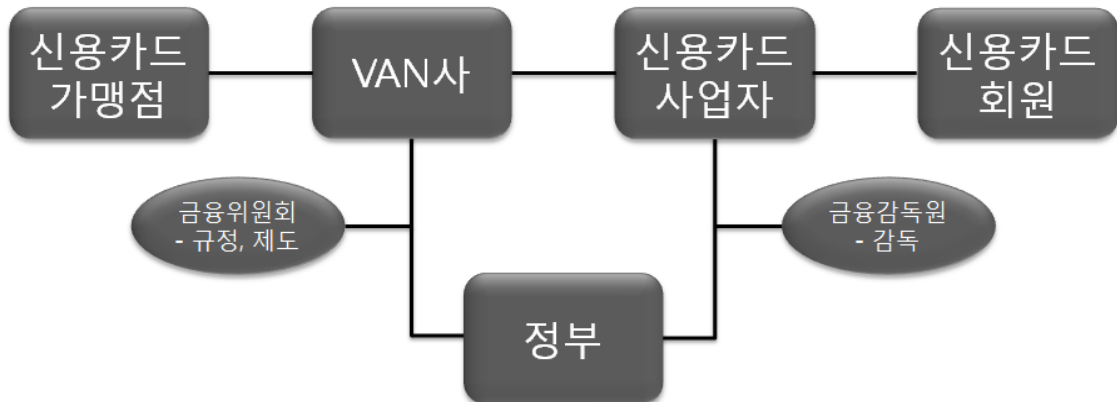
(단위: 개사)

구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제휴)
주요 VAN사	7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퍼스트데이터코리아(First Data Korea), 스마트로(Smartros), KIS정보통신(KIS VAN), 케이에스넷(KSNET), 금융결제원(KFTC)
중소형 VAN사 (연매출 300억 이하)	5	한국신용카드결제(KOCES), 제이티넷(JTNet), 코벤(KOVAN), 다우데이터, 한국사이버결제(KCP)
기타 (일부 가맹점만 서비스)	4	SPC, KORAIL, LG U+, VP
총합	16	

자료: 정훈(201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업자와 VAN사를 감독 및 검사함
 - 금융위원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주관하여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용함
 - 금융감독원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함

[그림 II -1]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이해관계자



자료: 한국신용카드 가맹점중앙회(2011), 김재진(2011) 재인용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가. 도입목적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탈세 가능성이 높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정보보고제도(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를 도입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음⁷⁾
 - 제3자 정보보고제도 도입 이후, 근로소득자는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로 인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일 수 있었음
 -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제3자 정보보고 체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당시 제도에 따라 장부기장에 근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했음
 - 1994년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실제수입금액의 50%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업과 소매업 또한 30~40%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음⁸⁾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3자 정보보고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하여 사업자의 매출액 및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카드회사, 가맹점, 소비자 3자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이 작동될 수 있고, 이는 합리적인 근거과세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도입함

7) 김재진(1999) 인용

8) 안중범(1994), 장춘(1997) 재인용

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개요

1)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1999년 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고, 2000년 1월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함
 - 2000년 1월부터 도입된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재화 및 용역 구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주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당첨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제시하여 동 제도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계층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함
 - 2004년부터 신용불량자 축소와 소액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와 분리하여 실시함
 - 당시 직불카드의 사용률이 신용카드 사용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보다 당첨 가능성이 약 15배 높았음
 - 체크카드 및 1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공여가 가능한 체크카드 또한 직불카드 주첨대상 범위에 포함됨
 - 이후 세무당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2006년에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먼저 폐지했고,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2010년에 폐지함
- 2005년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함
 -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됨
 - 청소년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습관을 위하여 주니어복권제를 분리하여 시행했으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06년에 통합하여 시행함

-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용화하기 위해 2006년 당첨금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당첨인원을 확대하였고, 2007년 8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먼저 추첨을 실시함
- 2010년 1월부터 당첨금이 5만원으로 단일화하여 복권 당첨자 수와 당첨 확률을 높임
-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어 2011년에 폐지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늘리기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영수증 복권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상금을 지급하였고, 2005년 1월에 폐지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994년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함⁹⁾
 - 도입 당시 과표양성화 비율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은 제외되었고, 세액공제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0.005%로 정해짐
 - 2011년부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및 기타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2.6%, 공제한도는 700만원이 적용되어 일반개인사업자에 비해 우대되었으나, 2015년 우대공제한도가 폐지되었고 우대공제율도 2016년까지 적용됨
 - 2016년부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표 III-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0.5% ○ 공제대상자에 법인 제외

9) 「부가가치세법」 제46조(2015년 2월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6	○ 공제율 1%로 상향조정
1998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에 직불카드 포함
1999	○ 공제한도(300만원) 신설
2000	○ 공제율 2%로 인상 ○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 업종 명확화
2004	○ 공제율 1%로 축소
2005	○ 공제율 인상: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1.5%
2006	○ 영수증 교부대상을 일반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 - 여객운송업, 목욕이발미용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등의 업종은 제외
2008	○ 공제율 인상: 간이과세자중 음식숙박업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2% ○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년말까지)
2009	○ 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2.6% ○ 일몰기한: 2010년말까지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	○ 일몰기한: 2012년말까지 연장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기타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
2013	○ 일몰기한: 2014년말까지 연장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공제한도 700만원은 적용 종료됨(공제율은 유지됨)
2015	○ 일몰기한: 2016년말까지 연장
2016	○ 공제대상자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자료: 김제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 1997년부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¹⁰⁾ 제도를 시행하여 신용·직불·선불카드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함
 - 도입 당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총수입금액 대비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 초과금액의 50%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함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1998년 이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5 제2항)

- 2001년 개정에서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와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 이후 2003년 및 2004년에 공제율이 축소되었고 일몰기한이 3차례 연장된 이후에 2011년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표 III-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7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 일몰기한: 2003년말까지
200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 변경 - 기존 방식(매출액 증가분의 50% 소득세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
2003	○ 공제금액(매출액의 10%) 축소
2004	○ 공제율을 5%로 축소 ○ 일몰기한: 2006년말까지 연장
2007	○ 일몰기한: 2008년말까지 연장
2009	○ 일몰기한: 2010년말까지 연장
201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부터

자료: 김재진(2011)

2.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과표양성화 과정

가. 카드 지급결제수단 거래의 과표양성화

1) 카드 지급결제수단 개요¹¹⁾

가) 신용카드

- 현금과 수표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개인의 경제 여건을 토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는 지급결제수단

11)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2014) 참고

-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최근에는 여러 할인 혜택 및 보험가입, 항공권 예약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영역 또한 강화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가 다른 지급결제수단에 비해 높고 카드대금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체 카드 결제지급수단의 사용액 및 사용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함

나) 직불카드

-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 방법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결제지급수단
 - 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 사용률이 낮음
 - 사용자 측면에서는 예금잔액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므로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으나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10%의 수준으로 매우 적어 카드 발급률이 매우 낮은 편임

다) 선불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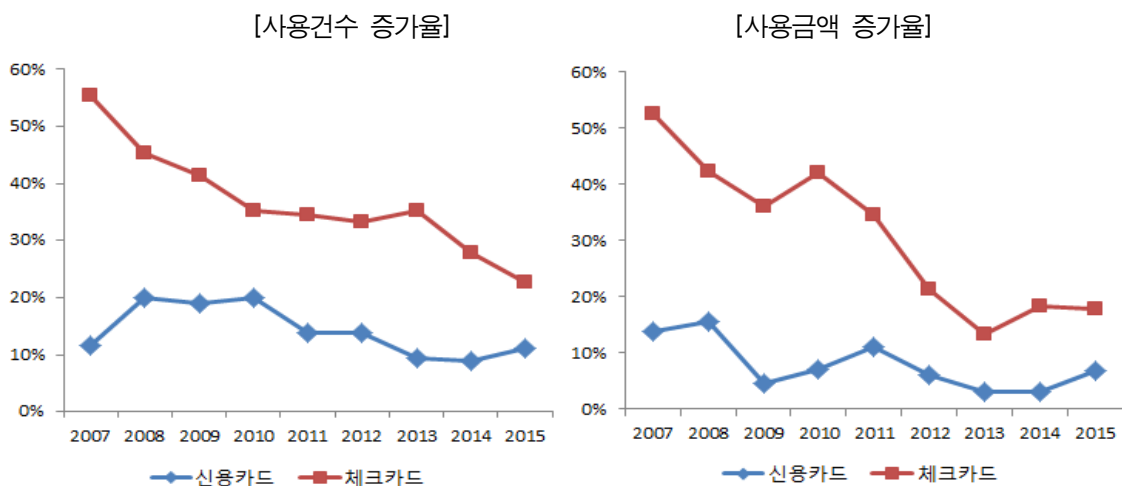
- 이용고객이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 발행자로부터 구입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금이 자동적으로 차감, 지급되는 형태의 결제수단
 - 이전에는 주유소, 백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점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홍보와 가맹점 부족으로 현재 발행 및 이용 금액이 매우 저조함
 - 최근에는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고,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발행됨
 -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 수 및 이용실적은 저조함

라) 체크카드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결제수단’을 의미하며 사용 측면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공여 기능이 있으면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신용구매가 가능함
 -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계좌 금액 내에서만 거래대금이 인출되어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적음

- 최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2014년 체크카드 발급 수가 신용카드 발급 수를 상회하였고, 체크카드의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증가율도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준임
 - 임윤화(2015)에 따르면, 2014년의 신용카드 발급 수는 약 0.92억장으로 체크카드 발급수(약 1억장)를 처음으로 하회하였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보유 수 또한 체크카드(3.79장)가 신용카드(3.47)장을 처음으로 초과함
 -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건수 증가율은 2015년 23%로 신용카드(11%)보다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의 사용금액 증가율 또한 체크카드가 18%, 신용카드 7%로 체크카드의 증가율이 더 높음

[그림 III-1] 신용·체크카드의 연도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국

〈표 III-3〉 카드 지급결제수단 개요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네트워크	신용카드망	직불카드공동망	신용카드망	신용카드망
발급기관	은행 및 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및 신용카드사	은행 및 신용카드사
사용장소	신용카드 가맹점 ¹⁾ (약 268만개)	직불카드가맹점 ²⁾ (약 21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시간	24시간	08:00~23:30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24시간	24시간 (하루 5분 정도의 시스템점검시간에 사용불가)
결제방법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결제	구매 즉시 결제	구매 즉시 결제
연회비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이용한도	신용한도액	예금잔액 범위내	충전잔액 이내	예금잔액 범위내
할부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신용공여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단, 신용공여 기능이 있으면 가능)

주: 1) 『국세통계연보』, 2013년 기준 가맹점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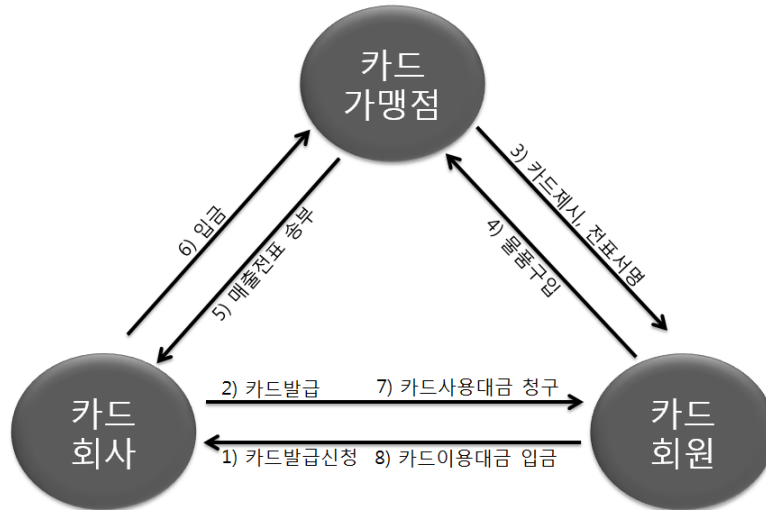
2) 한국은행, 전자금융총람, 201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9)

2) 카드 지급결제수단 거래의 과표양성화 과정

- 우리나라의 카드거래는 카드회사, 가맹점, 카드회원의 3-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 검정과 견제기능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음
 -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매출전표가 카드회사로 송금되고, 카드회사는 매출전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여 가맹점에 입금하고 회원에게 사용대금을 청구함
 - VAN사는 가맹점과 카드회사 사이에서 가맹점에서 발생한 결제를 승인하고 관련 매출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하는 역할을 함

[그림 III-2] 3당사자 간 거래구조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업자,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자료를 국세청에 정해진 시기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 제19조제5항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함¹²⁾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승인내역에 대한 자료는 매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함(부록3 참고)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는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에 제출해야 함(부록2 참고)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한 국세청에 매일 제출하여 신용카드의 부정거래를 감시함(부록4 참고)
- 신용카드업자 또는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2호,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¹³⁾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에 제출해야 함(부록6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같은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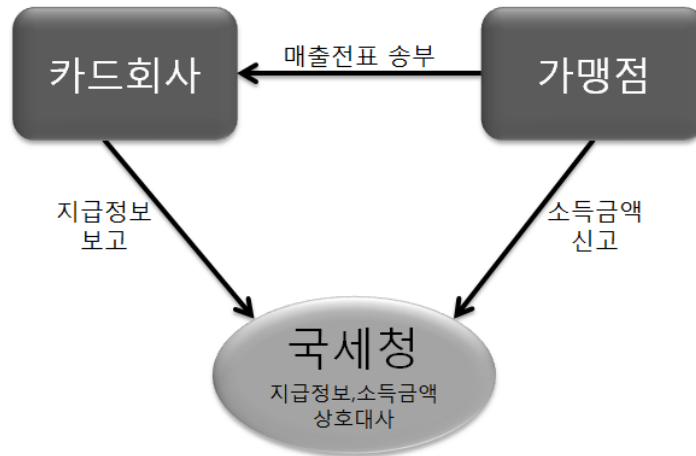
12)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65호, 91호
 13)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00호, 101호

된 업무에 관한 자료 중 주유소의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는
매월 15일에 제출해야 함(부록7 참고)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를
매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¹⁴⁾(부록5 참고)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으로 세수 확보 가능

[그림 III-3] 카드거래의 과표양성화 과정



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과표양성화

1) 현금영수증 개요

- 과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과세
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으로 가입하여 거래당사자의 발급요청이 있을 시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
치해야 함¹⁵⁾

14)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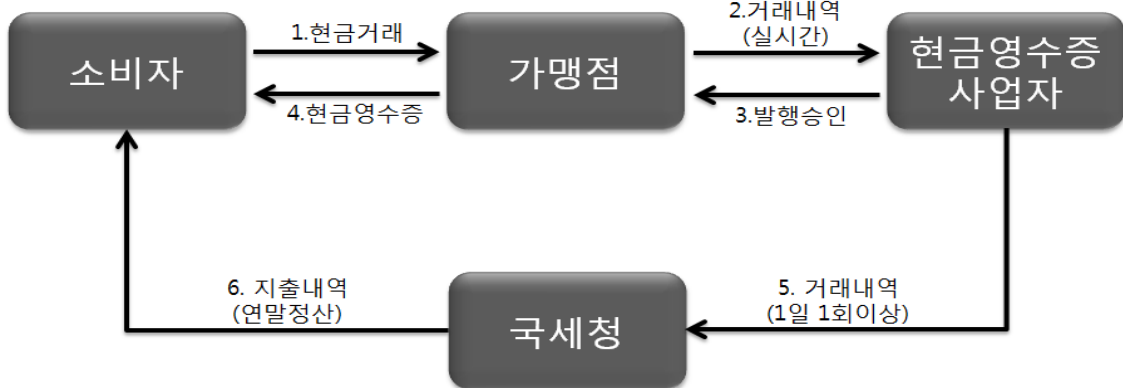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등

-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¹⁶⁾

2)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과표양성화 과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한 후 카드나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이 전송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달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전달되어 현금 사용액에 대한 과세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자신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파악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의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함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함
-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적 세제 혜택을 받게 됨

[그림 III-4]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과표 양성화 과정



자료: 김재진(2011)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과정

가. 1999년 도입

※ 개정이유(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1999년 9월 1일 지출하는 분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¹⁷⁾이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일용근로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됨
 -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금액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신용·직불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하여 공제함
- 근로소득이 아니거나 이미 과표양성화가 된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됨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 비용 및 법인 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됨
 -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한 상호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를 다를 때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제외됨
 - 이미 과표양성화가 된 의료관련비용, 교육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납부 요금은 제외됨

17)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999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text{공제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 (\text{총급여액} \times 0.1)\} \times 0.1$$

주: 1)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나. 2001년 개정

※ 개정이유(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 신용카드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 조정

□ 2001년 1월 세법개정을 통해 2001년 1월 지출하는 분부터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

-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20%로 10%p 증가함
- 공제한도가 500만원과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되어 최대한도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함

다. 2002년 개정

※ 개정이유(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

- 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
- ②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도모
- ③ 이미 과표가 완전히 양성화되어 있는 신규 출고 차량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서 제외
- ④ 직불카드(30% 공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지로(20% 공제) 이용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안분계산방법을 규정
- ⑤ 과표가 100% 노출된 품목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실익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현행도 해석상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로 규정

- 2002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2002년 12월 지출하는 분부터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30%로 적용되어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과거 20%에서 30%로 10%p 증가함
- 공제대상에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하 ‘학원수강료’)이 추가되어 2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구매한 금액 및 이미 과세표준이 노출된 리스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액, 인터넷이용료 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신용·직불카드사용금액과 학원 수강료를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신용·직불카드, 학원수강료를 사용한 비중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어 계산됨
- 제도의 적용기한이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됨

<2002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text{공제금액} = \text{초과금액}^2) \times \frac{(\text{신용카드 사용금액} + \text{학원수강료})}{\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times 0.2 +$$

$$\text{초과금액} \times \frac{\text{직불카드 사용금액}}{\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times 0.3$$

주: 1)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

라. 2003년 개정

※ 개정이유(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

- 거래내용이 자동노출되는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가되 지급결제수단 간 소득공제율을 일원화

- 2003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2003년 12월 지출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고¹⁸⁾, 공제비율이 20%로 일원화되어 직불카드 공제율이 30%에서 20%로 10%p 하락함

마. 2004년 개정

※ 개정이유(2004년 간추린 개정세법)

-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되므로 적정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 2004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04년 12월 지출하는 분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에서 15%로 5%p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항목에 포함됨

<2004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text{공제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 (\text{총급여액} \times 0.15)\} \times 0.2$$

주: 1)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의 연간합계액

바. 2005년 개정

※ 개정이유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 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18) 선불카드는 2003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됨

- 카드 사용자에게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 2005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2005년 12월 지출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15%로 이전보다 5%p 하락하였고, 제도의 일몰기한이 200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의료비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항목 제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2005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text{공제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 (\text{총급여액} \times 0.15)\} \times 0.15$$

주: 1)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의 연간합계액

사. 2006년 개정

※ 개정이유(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

- 무기명선불카드를 통한 매출에 대한 소득과약을 강화
-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

□ 2006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06년 12월부터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아. 2007년 개정

※ 개정이유(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 최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15% 초과에서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은 15%에서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높아진 문턱을 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
- 2007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저사용금액이 이전보다 5%p 증가, 공제율도 5%p 증가함
-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전자지급수단)과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를 이용한 금액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됨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및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의 대가와 정당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제도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됨

자. 2009년 개정

※ 개정이유(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

- 공제수준 축소: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 직불·선불카드공제율 인상: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중복공제 배제

-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최저사용금액이 20%에서 25%로 5%p 인상되었고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¹⁹⁾의 공제율이 20%에서 25%로 5%p 인상됨

19) 직불·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합

□ 제도 일몰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됨

<2009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begin{aligned} \text{○ 공제금액} &= \text{초과금액}^3) \times \frac{(\text{신용카드 사용금액} + \text{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text{학원수강료})}{\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2)} \\ &\quad \times 0.2 + \text{초과금액} \times \frac{\text{직불카드 등 사용금액}^1)}{\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times 0.25 \end{aligned}$$

주: 1)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학원수강료+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차. 2011년 개정

※ 개정이유(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 2011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이하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30%를 적용함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됨

□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율이 5%p 인상됨

□ 최저사용금액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되어 납세자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됨

<2011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text{공제금액} = (\text{전통시장사용분} + \text{직불카드 등 사용분}^{1)}) \times 0.3 + (\text{신용카드 사용분}^{2}) \\ + \text{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text{학원수강료}) \times 0.2 - \text{㉠} + \text{㉡}$$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0.2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0.3 +
신용카드 사용분 × 0.2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주: 1)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카. 2012년 개정

※ 개정이유(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 대중교통 이용 유도
- 2012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학원수강료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중교통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이하 대중교통 이용분)에 30% 공제율 적용
-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변경되어 5%p 인하됨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금액의 합과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조항이 신설됨

<2012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¹⁾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0.3 + (신용카드사용분²⁾) × 0.15 - ㉠ + ㉡
-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0.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0.3 +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함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³⁾+대중교통 이용분×0.3³⁾]

주: 1)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금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금액
3) 최대 한도 100만원

타. 2014년 개정

※ 개정이유(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 2014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의 신용카드사용액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추가공제율을 적용함
-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이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과세연도에 적용함
 -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이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과세연도에 적용함
-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됨

파. 현행 제도

- 2015년 12월의 세법개정을 통해 2015년 12월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이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이하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함

<2015년 개정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¹⁾) +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 0.3 + (신용카드 사용분²⁾) × 0.15 + ㉠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³⁾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14년 과세연도: {(2014.7.1.~2014.12.31.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 × 0.1
 - 2015년 과세연도: {(2015.1.1.~2015.6.30.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 × 0.1
-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보다 증가한 경우
 - 2015년 과세연도: {(2015.7.1.~2015.12.31.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 × 0.2
 - 2016년 과세연도: {(2016.1.1.~2016.6.30.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 × 0.2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0.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0.3 +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⁴⁾+대중교통 이용분×0.3⁴⁾]

주: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금
 2)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금액
 3)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
 4) 한도 100만원

-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이 2013년 사용금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함
- 동 조항에 따라 공제율 산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제외함

〈표 III-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대상)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적은 금액 ○ 일몰기한: 1999.9.1부터 2002.11.30까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여신전문금융법상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2.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02.12.1부터 2005.11.30.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수강료의 지로납부금액 공제대상 추가 - 신규 출고 자동차 구매 금액 및 리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매액 소득공제대상 제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직불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로 통일(중전 직불카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3.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추가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14.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현금영수증은 2005.1.1.부터 적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 일몰기한: 2005.12.1부터 2007.11.30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2006.1.1.이후 지출분)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공제대상 제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 시 소득공제 허용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조특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소득공제 허용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 일몰기한: 2008.1.1.부터 2009.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실지명의를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이용한 금액을 공제대상에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대상 추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대가,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정치기부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 공제한도 :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로 인상 ○ 일몰기한: 2012.1.1.부터 2014.12.31까지 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 사용분 중 적은 금액 추가로 공제 - 최저사용률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진행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로 인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30%로 인상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 신설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합과 한도 초과분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연장 ○ 기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2013년보다 초과된 경우 2014년 7월~12월과 2015년 1월~ 6월에 신용카드를 제외한 소득공제대상금액의 추가 사용분이 2013년 소득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각각 초과한 경우 각 과세연도에서 동 초과금액의 10%를 추가공제(2015.1부터 적용) - 201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2014년보다 초과된 경우 2015년 7월~12월과 2016년 1월~ 6월에 신용카드를 제외한 소득공제대상금액의 추가 사용분이 2014년 소득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각각 초과한 경우 각 과세연도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추가공제(2015.12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²⁰⁾) - 본 조항으로 적용할 시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사용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김재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표 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행 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126의2)>

○ 도입목적

- 1999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제도관련 용어

용어	의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 금액의 합계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한도초과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얻는 소득공제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에서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직불카드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의 합계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
직계존비속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형제 및 시부모를 포함하지 않음

*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 3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여 공제율을 최대로 적용받게끔 유도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 2015년 7월부터 12월에 사용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율 20%를 2015년 소득공제에 적용
 - 2016년 1월부터 6월에 사용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율 20%를 2016년 소득공제에 적용
- ※ 추가공제를 받을 때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⑥ - ⑤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0.3
 - ② 대중교통 이용분 × 0.3
 - ③ 직불카드 등 사용분 × 0.3
 - ④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⑤ 다음 중 해당되는 금액
 - 1)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0.15
 - 2)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0.3}
 - ⑥ 201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초과한 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금액
 - 1)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2016년 12월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0.5)} × 0.2
 - 2)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2016년 6월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의 추가공제율 사용분 × 0.5)} × 0.2

- 공제한도
 - 기본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공제한도: Min[(전통시장 사용분의 30% + 대중교통 이용분의 30%), 한도초과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추가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의 한도는 각각 100만원으로 한도를 초과해도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6조

<표 III-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변천 과정

시행시기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연장
1999.9	10%	Min[300만원, 총급여액 10%]	총급여액의 10%	2002년
2001.1	20%	Min[500만원, 총급여액 20%]	〃	〃
2002.12	20%(30%)	〃	〃	2005년
2003.12	20%	〃	〃	〃
2004.12	〃	〃	총급여액의 15%	〃
2005.12	15%	〃	〃	2007년
2008.1	20%	〃	총급여액의 20%	2009년
2010.1	20%(25% ¹⁾)	Min[300만원, 총급여액 20%]	총급여액의 25%	2011년
2012.1	20%(30% ²⁾)	Min[300만원+ β ⁵⁾ , 총급여액 20%]	〃	2014년
2013.1	15%(30% ³⁾)	Min[300만원+ γ ⁶⁾ , 총급여액 20%]	〃	〃
2015.1	15%(30%+ α ⁴⁾)	〃	〃	2016년

주: 1) 직불/선불/체크카드, 전자결제지급수단, 전자화폐 적용 공제율

2) 주 1)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 주 2) +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공제율

4) α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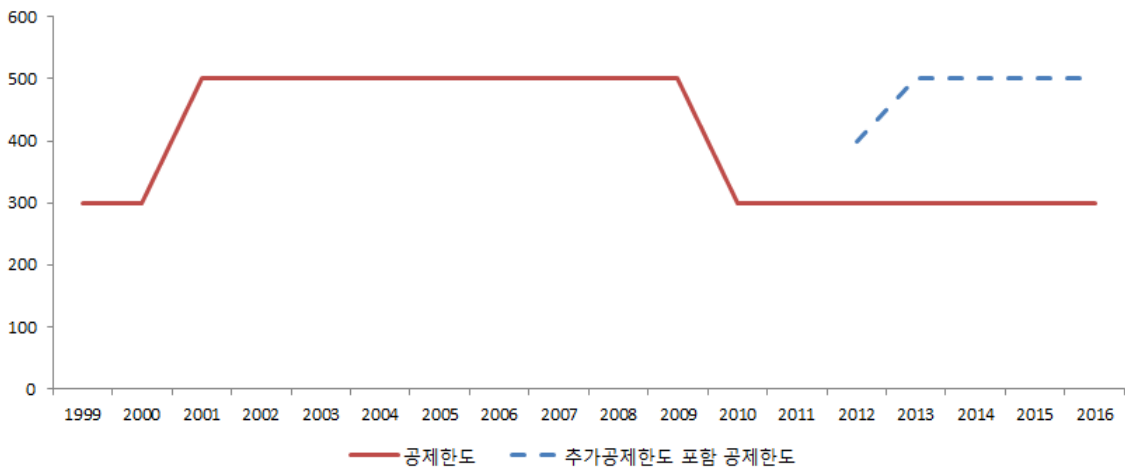
5) β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작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6) γ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대중교통 이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작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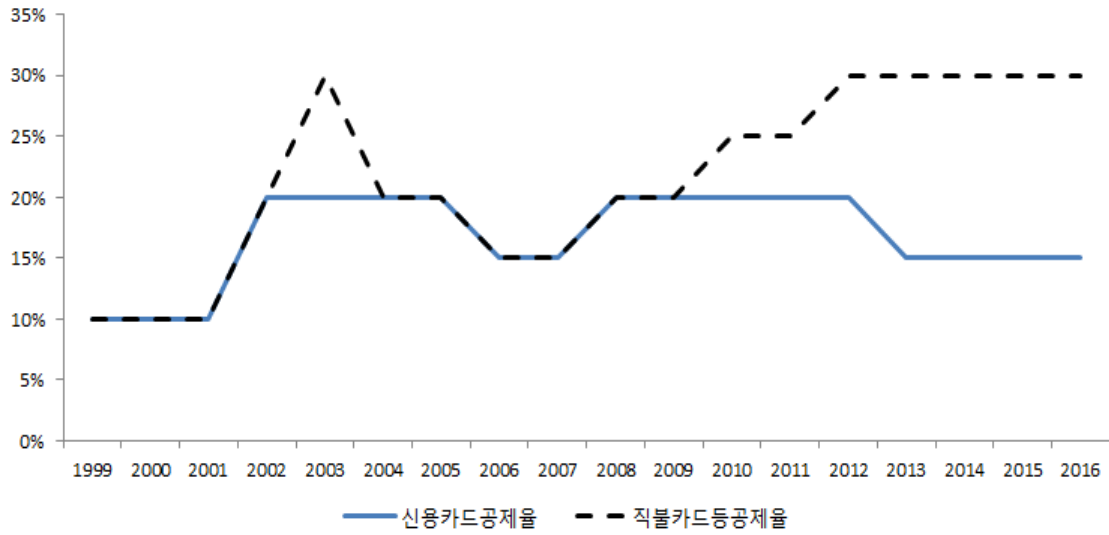
자료: 김재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그림 III-5]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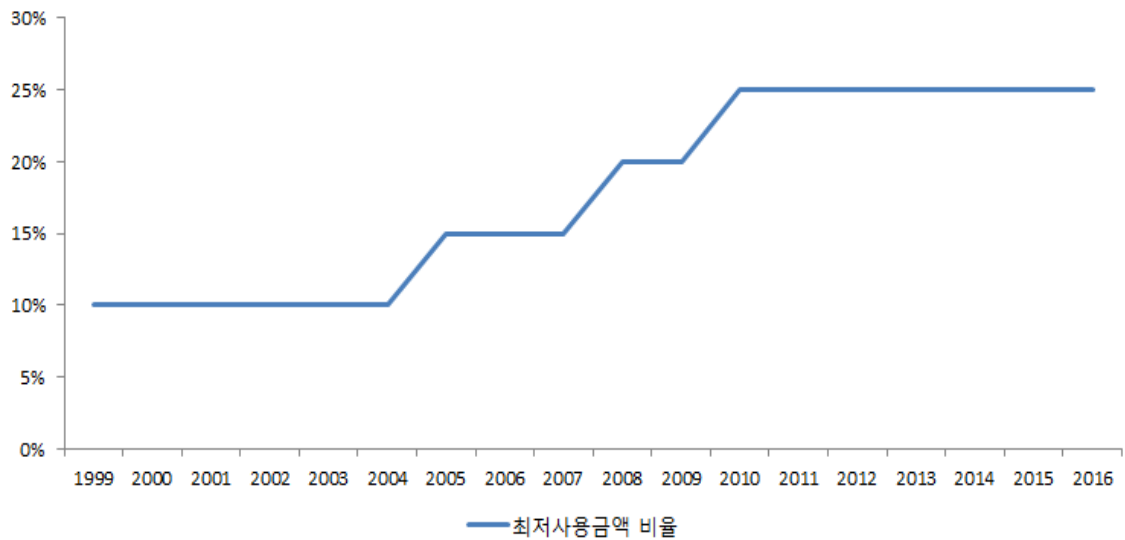


[그림 III-6]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공제율 추이



- 주: 1. 공제율 변동이 12월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2.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12년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동일하고, 2013년부터는 직불카드 등 공제율과 동일함

[그림 III-7]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최저사용금액 비율 추이



- 주: 1. 최저사용금액 변동비율이 12월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IV.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 현황



IV.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 현황

1. 연도별 공제금액·공제인원 및 경감세액

- 동 제도로 인한 연도별 소득공제금액은 2010년에 공제한도 및 최저사용금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포함 약 2조원가량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19조원에 도달함
 - 2010년에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0%에서 25%로 상승함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제인원은 제도 확대 및 축소와 관계없이 전년 대비 최소 1%에서 최대 13% 증가함

-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2010년 공제한도 축소로 인하여 221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약 17% 감소 이후 매년 5.7%씩 꾸준히 증가함
 -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증가하였고, 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추가된 2012년 평균 공제금액이 7%로 증가함
 - 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하락하였으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이 포함되어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함

- 연도별로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을 이용하여 구한 1인당 경감세액은 대체로 15만원~26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됨
 - 1인당 경감세액은 각 소득별 한계세율을 구한 뒤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해준 값임
 - 대체로 1인당 경감세액은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의 크기와 비례하여 변동 추이 또한 비슷함

<표 IV-1> 연도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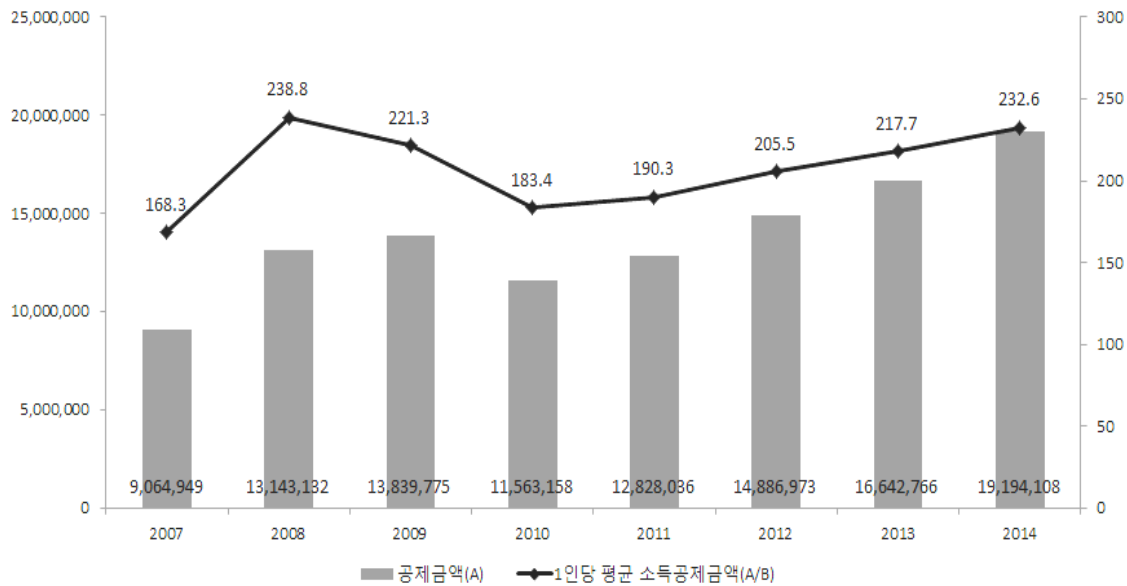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만원)

연도	공제금액(A)	공제인원(B)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A/B)	1인당 경감세액
2007	9,064,949	5,385,390	168.3	20.0
2008	13,143,132	5,503,770	238.8	26.5
2009	13,839,775	6,253,955	221.3	19.6
2010	11,563,158	6,305,853	183.4	15.9
2011	12,828,036	6,739,692	190.3	17.2
2012	14,886,973	7,246,023	205.5	18.8
2013	16,642,766	7,645,693	217.7	20.3
2014	19,194,108	8,252,634	232.6	2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1] 연도별 공제금액 및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만원)



2. 총급여액수준별 공제인원 및 1인당 공제금액

가. 총급여액수준별 공제인원

□ 공제인원의 연도별 변동은 총급여액규모와 연도별로 진행된 소득공제제도 변경 내용에 따라 상이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공제인원은 201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함
- 총급여 2천만원~2억원의 공제대상자의 수는 2013년까지 대체로 증가함
-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자는 공제한도가 축소된 2010년에 약 4%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최소 10~25% 증가하였음

<표 IV-2> 총급여액수준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인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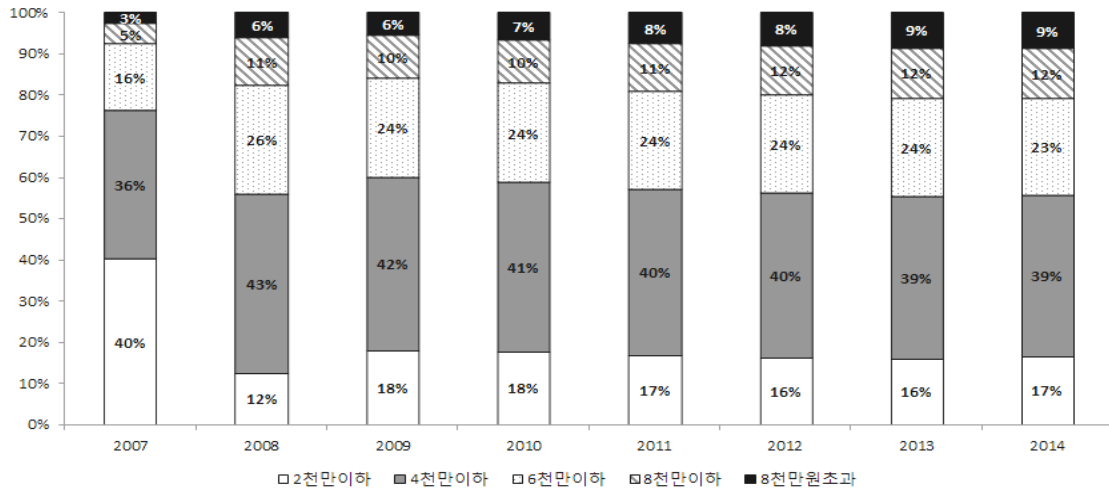
총급여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천만 이하	47,637	46,621	42,555	35,414	33,563	8,563
1.5천만 이하	432,152	435,372	430,540	439,932	441,430	395,535
2천만 이하	648,087	641,343	659,552	709,461	748,661	1,087,332
3천만 이하	1,429,108	1,401,547	1,451,678	1,546,491	1,605,239	3,020,936
4천만 이하	1,194,625	1,172,620	1,252,959	1,334,274	1,394,850	3,154,060
4.5천만 이하	472,368	487,398	512,839	537,704	569,493	1,394,546
6천만 이하	1,025,241	1,030,711	1,100,496	1,187,742	1,256,798	3,248,200
8천만 이하	652,446	661,030	766,208	859,817	931,627	2,505,983
1억 이하	223,502	265,828	300,658	334,837	367,799	1,012,234
2억 이하	121,802	156,678	213,706	250,165	284,998	784,549
3억 이하	5,550	5,506	6,880	8,326	9,171	25,091
5억 이하	1,212	1,045	1,397	1,609	1,814	5,009
10억 이하	210	137	203	231	227	662
10억 초과	15	17	21	20	23	69
합계	6,253,955	6,305,853	6,739,692	7,246,023	7,645,693	8,252,63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공제인원의 전체 비중은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 4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인원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08년 55%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공제인원은 2009년 전체 18.0%에서 매년 0.1~1%p씩 감소하여 2013년에 16.5%로 2.5%p 감소함
 - 총급여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공제인원은 전체 공제인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 42%였던 비중이 2014년 39%로 약 3%p 감소함
 - 총급여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의 공제인원 비중은 2008년 16%에서 26%로 증가한 후에 25~26%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총급여 6천만원 이상의 공제인원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총급여 6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공제인원 비중은 2007년 5%에서 2008년 11%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 전체 공제인원의 12%를 차지하여 총급여 2천만원 이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제인원비중은 2009년 6%에서 2013년 9%로 비중이 3%p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함

-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승하고, 최저사용금액은 15%에서 20%로 증가한 2008년에 공제인원 비중이 가장 크게 변동함
 -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공제인원 비중이 2007년 40.2%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12.4%로 약 27.8%p 감소하였음
 - 그 외 구간의 비중은 3~10%p씩 증가하였고, 특히 총급여 2천만~6천만원 구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그림 IV-2] 총급여액 규모별 공제인원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총급여액수준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파악되고, 가장 낮은 소득구간과 높은 소득구간의 공제금액은 약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됨
- 2010년 공제한도 변경으로 인해 1인당 공제금액이 약 17%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득이 높을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0년 제도 변경 시 총급여 1천만원~2천만원 구간의 1인당 공제금액은 약 3%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의 1인당 공제금액은 모두 감소함
 - 특히 총급여 1억원 이상 구간에서 약 30%가 넘는 공제금액이 감소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1인당 공제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이후 2013년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1인당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공제율이 30%로 증가한 2012년에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공제액이 약 6~8% 증가하여 다른 구간보다 증가율이 높음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하락한 2013년에는 총급여 8천만원~3억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공제금액 증가율이 0.7%로 가장 낮음

- 소비증가분 조항이 추가된 2014년에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1인당 공제금액이 약 10~200% 이상 증가하였음

<표 IV-3> 연도별·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공제금액

(단위: 만원)

근로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천만 이하	25	25	25	25	26	82
1.5천만 이하	78	81	84	89	90	145
2천만 이하	127	128	134	145	145	172
3천만 이하	179	164	169	183	188	207
4천만 이하	233	196	200	215	226	238
4.5천만 이하	267	212	217	231	245	254
6천만 이하	289	222	228	242	258	266
8천만 이하	302	225	232	249	269	278
1억 이하	318	227	234	252	275	284
2억 이하	329	228	232	251	275	285
3억 이하	336	230	234	249	274	282
5억 이하	358	239	242	259	276	282
10억 이하	398	272	265	278	292	299
10억 초과	433	265	267	285	300	321
소계	221	183	190	205	218	2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총급여액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 <표 IV-3>에 각 근로소득수준별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소득별 1인당 경감세액을 구하면,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과 총급여 2~3억원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은 약 8배 차이인 것으로 파악됨
 -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으로, 매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6~36%의 세율이 적용됨
 -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총급여 10억원 이내의 1인당 경감세액이 총급여액 구간별로 2~6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표 IV-4> 연도별·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단위: 원)

근로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천만 이하	15,113	15,105	15,043	15,277	15,373	49,252
1.5천만 이하	47,093	48,587	50,128	53,263	53,782	86,885
2천만 이하	76,140	76,706	80,215	87,103	87,160	103,472
3천만 이하	108,947	99,790	103,126	111,699	115,271	133,573
4천만 이하	172,837	144,591	149,132	160,581	169,903	200,158
4.5천만 이하	189,524	156,140	186,536	200,746	214,351	248,634
6천만 이하	295,095	221,738	226,401	242,956	261,441	295,503
8천만 이하	372,215	267,141	273,271	293,919	319,495	351,983
1억 이하	478,264	326,046	326,182	351,759	384,227	432,957
2억 이하	640,105	424,458	425,444	458,668	505,600	556,486
3억 이하	913,646	598,797	609,496	650,833	716,520	776,509
5억 이하	1,034,227	683,846	687,873	741,714	792,817	854,348
10억 이하	1,202,561	834,181	805,681	887,024	924,875	989,227
10억 초과	1,416,698	865,821	873,967	995,816	1,051,522	1,150,206
평균	196,363	158,734	172,147	187,877	203,185	231,6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공제제도 변경이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에 미친 효과

-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변경 및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등의 공제항목 추가로 인한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변경을 파악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경에 의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국세통계연보』 2006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대상자의 근로소득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추이 파악
 - 2006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공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 변화 시 소득별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증가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최저사용금액이 증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됨

가. 2008년 세법개정 효과

(공제율 15%→20% 인상/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15%→20% 인상)

- 2008년에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었고,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인상됨
-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최저사용금액 인상으로 인하여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득공제 금액 또한 감소했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상에서는 소득공제 인원 및 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2007년 73만명의 공제인원이 565명으로 줄어들었고, 소득공제금액 또한 76.3만원에서 12.6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공제 인원 및 공제금액은 모두 증가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비중 또한 증가함
 - 총급여 1천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의 증가로 인한 소득공제금액의 비중 또한 1천만원 이하 구간 이외에는 모두 최소 0.1%p에서 최대 2.6%p까지 증가하여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공제금액 증가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표 IV-5> 2007, 2008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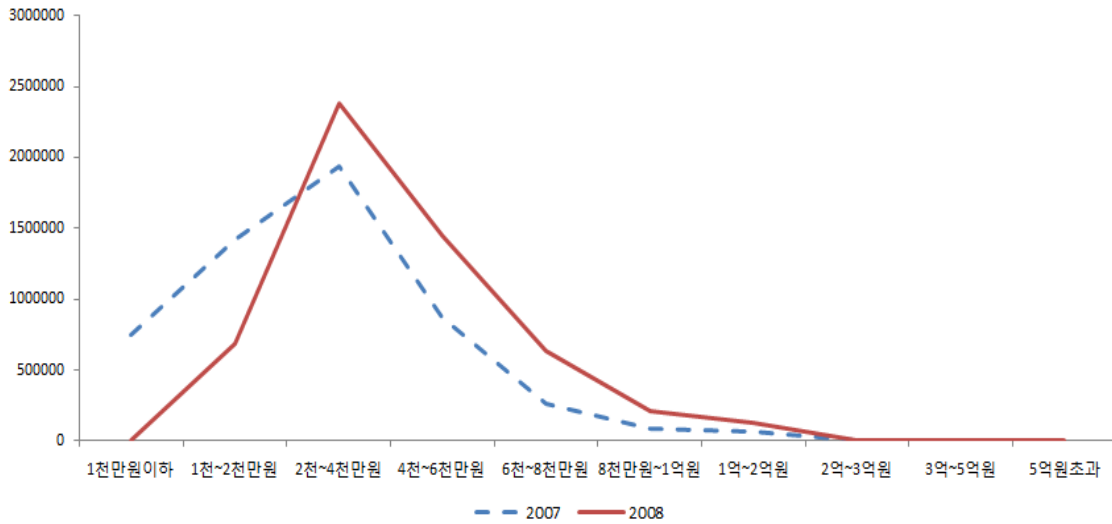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1천만원이하	743,154	565	76.3	12.6	4.9	1.2
1천~2천만원	1,420,567	684,649	129.9	105.1	5.0	6.7
2천~4천만원	1,936,806	2,383,859	187.9	212.6	4.5	7.1
4천~6천만원	867,623	1,455,464	223.0	291.9	3.5	5.8
6천~8천만원	262,282	631,541	248.4	309.1	3.0	4.4
8천만원~1억원	89,051	214,976	270.6	326.9	2.6	3.6
1억~2억원	60,752	125,510	280.0	340.3	1.9	2.7
2억~3억원	3,841	5,619	292.1	341.1	1.1	1.4
3억~5억원	1,096	1,320	307.8	359.6	0.8	1.0
5억원 초과	218	267	381.7	401.9	0.3	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득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인원의 추이를 보면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 인원이 감소한 만큼 2천만원 이상의 소득공제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아, 최저사용금액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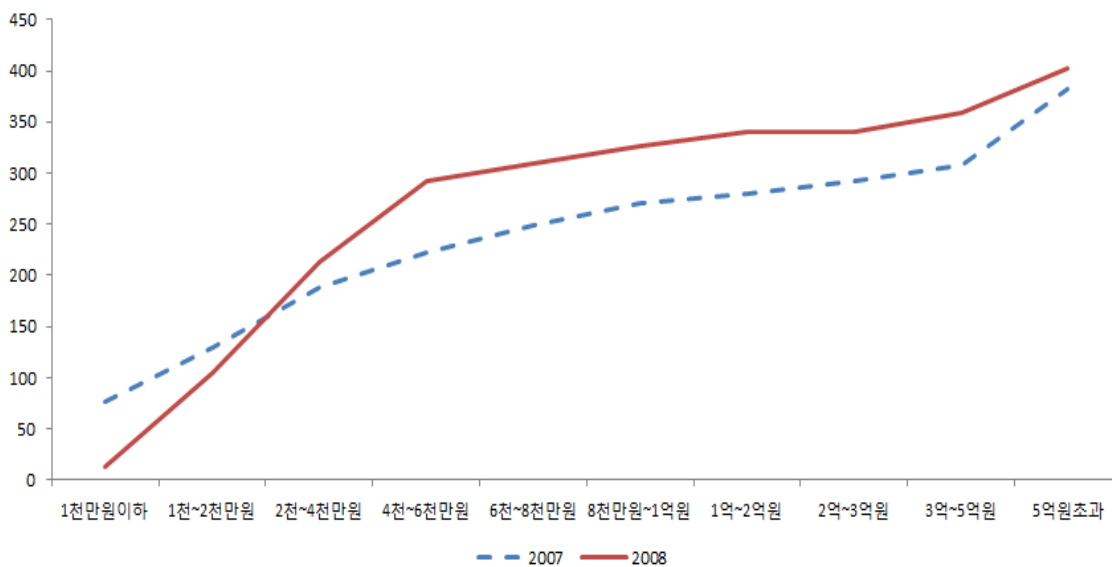
[그림 IV-3] 2007, 2008년 소득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인원 추이

(단위: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4] 2007, 2008년 소득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2010년 세법개정효과

(직불카드공제율 20%→25% 인상/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인하/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25% 증가)

- 2010년에는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었고,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에서 25%로 증가함
- 2010년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소득공제 인원의 변화는 없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공제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비중 또한 감소함
 - 2008년의 최저사용금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총급여 2천만원 이상의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2010년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 하락은 공제한도 축소로 인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의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이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6%까지 하락하여 제도로 인한 소득공제금액 감소 비중이 적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V-6> 2009,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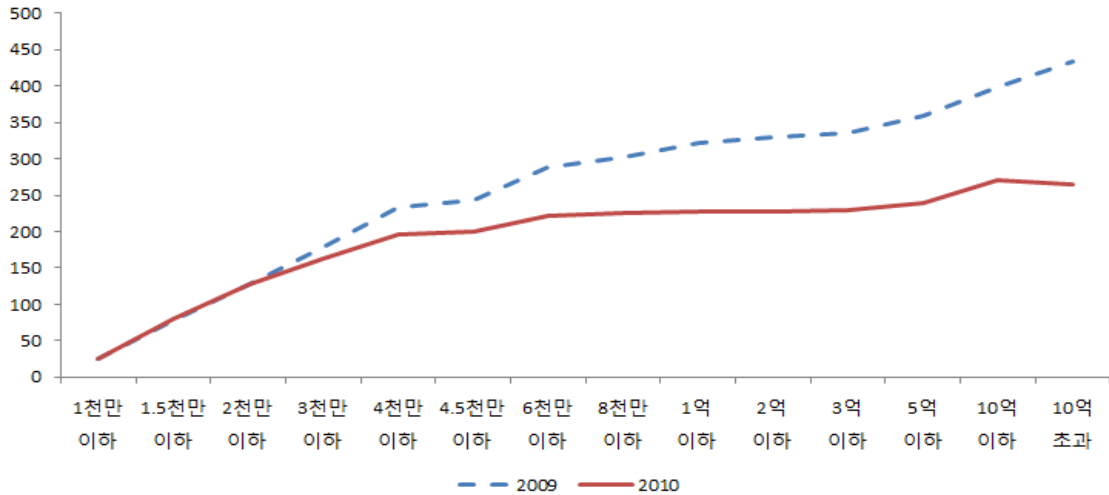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1천만 이하	47,637	46,621	25	25	0.1	0.1
1.5천만 이하	432,152	435,372	78	81	1.5	1.4
2천만 이하	648,087	641,343	126	127	3.4	3.1
3천만 이하	1,429,108	1,401,547	178	163	4.9	4.2
4천만 이하	1,194,625	1,172,620	233	195	5.5	4.4
4.5천만 이하	1,666,993	1,660,018	242	200	5.5	4.4
6천만 이하	1,025,241	1,030,711	288	222	4.9	3.6
8천만 이하	652,446	661,030	301	225	3.8	2.7
1억 이하	142,796	176,046	321	227	2.9	1.9
2억 이하	121,802	156,678	329	227	1.9	1.2
3억 이하	5,550	5,506	335	229	0.5	0.3
5억 이하	1,212	1,045	358	238	0.2	0.1
10억 이하	210	137	397	271	0.0	0.0
10억 초과	15	17	433	264	0.0	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추이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더 하락한 것을 보아 공제한도를 인하할 때 저소득층의 공제금액보다 고소득층의 공제금액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IV-5] 2009, 2010년 소득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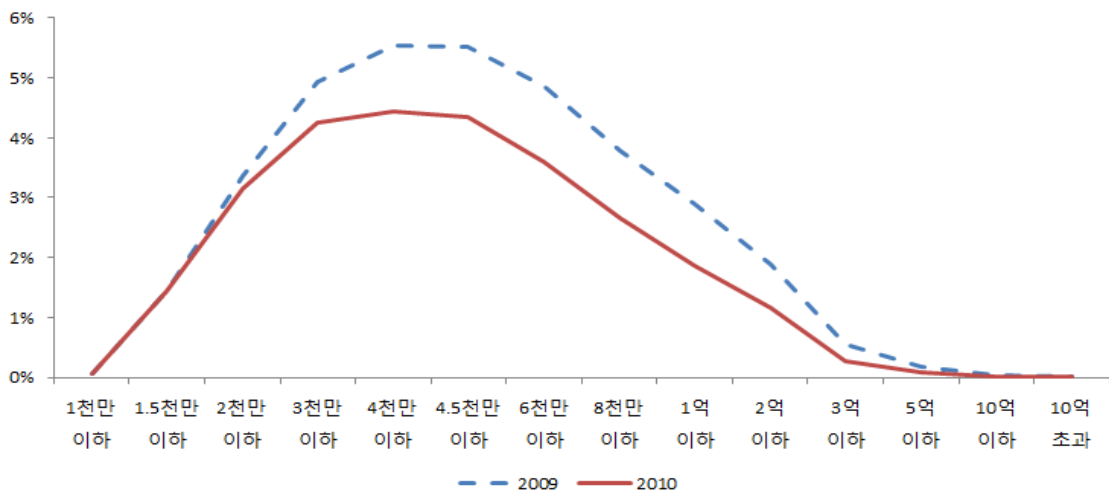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1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감소폭이 축소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IV-6] 2009, 2010년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2012년 세법개정효과

(직불카드 공제율 25%→30% 인상/ 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 포함)

- 2012년에는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조항이 도입되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 이외에는 모두 증가하였고,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전 구간에서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총급여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총급여 2천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구간별로 최소 7%에서 최대 21%까지 증가하였고,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도 최소 4천원에서 최대 약 19만원까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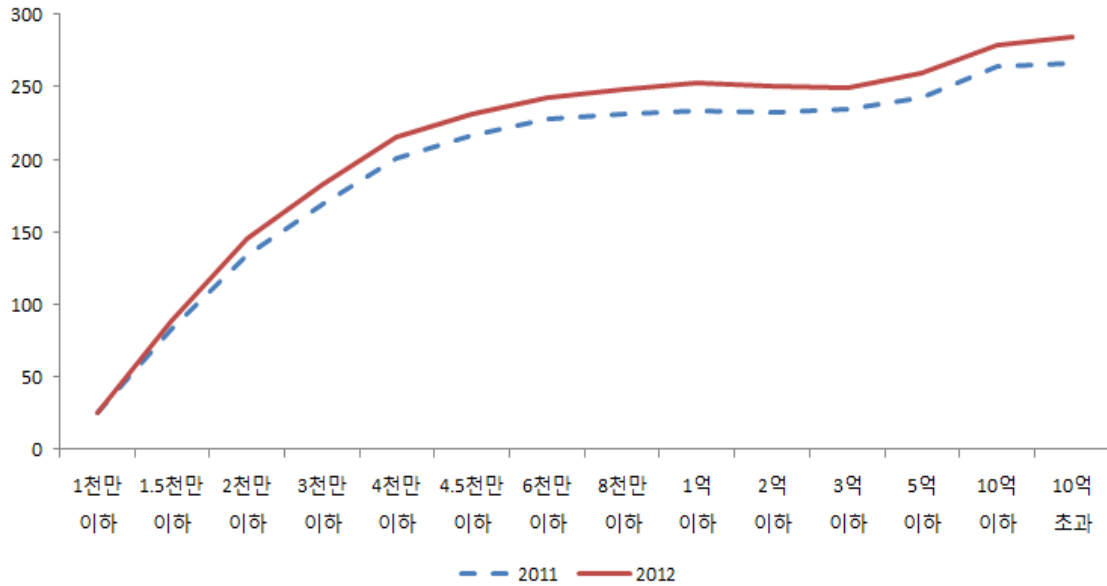
<표 IV-7> 2011, 201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만원, %)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비중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1천만 이하	42,555	35,414	25.0	25.4	0.1	0.0
1.5천만 이하	430,540	439,932	83.5	88.8	1.4	1.4
2천만 이하	659,552	709,461	133.7	145.2	3.2	3.5
3천만 이하	1,451,678	1,546,491	168.8	182.7	4.3	4.6
4천만 이하	1,252,959	1,334,274	200.4	215.4	4.6	4.9
4.5천만 이하	512,839	537,704	216.8	231.3	4.3	4.6
6천만 이하	1,100,496	1,187,742	227.9	242.4	3.7	4.0
8천만 이하	766,208	859,817	232.0	248.6	2.8	3.0
1억 이하	300,658	334,837	234.1	252.4	2.1	2.2
2억 이하	213,706	250,165	232.0	250.8	1.2	1.4
3억 이하	6,880	8,326	234.5	249.4	0.3	0.3
5억 이하	1,397	1,609	242.3	259.4	0.1	0.1
10억 이하	203	231	264.5	278.4	0.0	0.0
10억 초과	21	20	266.7	285.0	0.0	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7] 2011, 2012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라. 2013년 세법개정효과

(신용카드 공제율 20%→15% 인하/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포함)

- 2013년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조항을 도입하였음
- 소득공제 인원은 2012년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인원 이외에는 모두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평균 15만원씩 전 구간 증가하였으나, 소득공제금액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
- 소득공제금액이 전 소득구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감소가 현금영수증 발급액 공제율 증가 등의 조항이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보이나, 총급여액 대비 소득공제금액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어 총급여액 증가로 인한 공제금액 증가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표 IV-8> 2012,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만원, %)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1천만 이하	35,414	33,563	25	26	0.0	0.0
1.5천만 이하	439,932	441,430	89	90	1.4	1.5
2천만 이하	709,461	748,661	145	145	3.5	3.5
3천만 이하	1,546,491	1,605,239	183	188	4.6	4.7
4천만 이하	1,334,274	1,394,850	215	226	4.9	5.1
4.5천만 이하	537,704	569,493	231	245	4.6	4.8
6천만 이하	1,187,742	1,256,798	242	258	4.0	4.2
8천만 이하	859,817	931,627	249	269	3.0	3.2
1억 이하	334,837	367,799	252	275	2.2	2.4
2억 이하	250,165	284,998	251	275	1.4	1.5
3억 이하	8,326	9,171	249	274	0.3	0.3
5억 이하	1,609	1,814	259	276	0.1	0.1
10억 이하	231	227	278	292	0.0	0.0
10억 초과	20	23	285	300	0.0	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연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 추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공제한도는 2002년, 2010년에 변경되어 총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음.
 - 1999년 제도 도입 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에서 작은 값이 공제한도였고, 2002년에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작은 값으로 조정됨
 - 2010년에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작은 값으로 다시 인하되어 현재까지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음
- 『국세통계연보』 자료에서는 공제한도 초과자의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을 파악하려 함

- 국세통계연보 자료와 국세청 내부자료의 총급여액 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분포 및 총급여액 구간별 수혜자의 비율이 유사하므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현행 및 과거의 제도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과 2011년에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한 총급여액 1,500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 분포가 국세통계연보의 인원 분포보다 적게 추정되었으나, 그 이후 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 분포 또한 전체적으로 국세통계와 국세청 내부자료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분포에서는 국세청 내부자료의 소득공제 수혜자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추산한 공제금액은 실제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약 80% 이상 일치했으나, 학원수강료 지불납부금액 및 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추산에서 제외되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게 추정된 것으로 사료됨

<표 IV-9> 총급여액 구간별 인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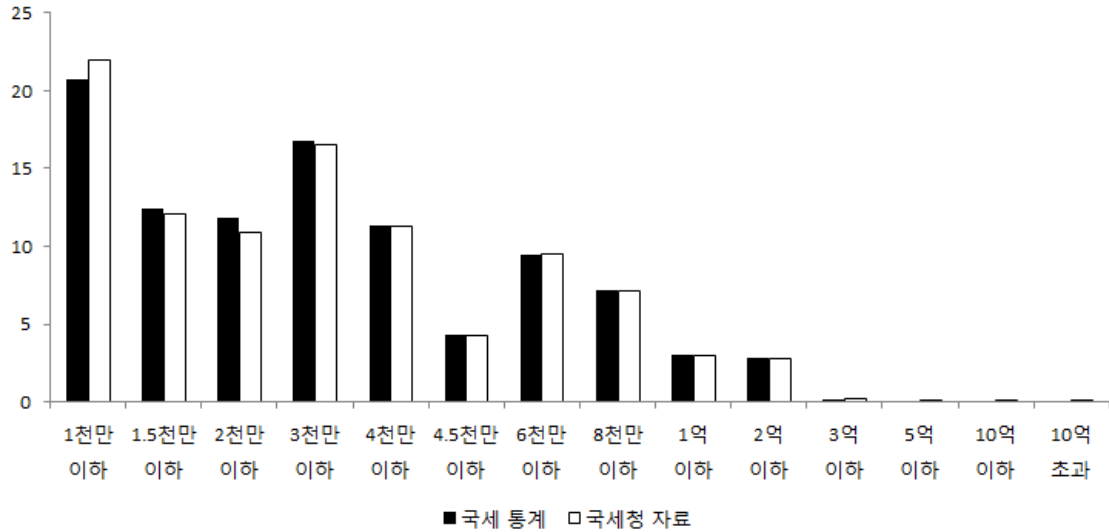
(단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1천만 이하	31.3	25.3	28.2	24.3	23.7	24.0	22.9	22.9	20.7	22.0
1.5천만 이하	13.0	13.9	13.2	13.7	14.0	13.3	13.4	12.6	12.4	12.1
2천만 이하	9.9	10.7	10.2	10.7	10.9	10.7	11.1	11.0	11.8	10.9
3천만 이하	14.5	15.8	15.0	15.9	15.7	15.9	15.9	15.9	16.8	16.5
4천만 이하	9.8	10.7	10.3	10.9	10.7	10.9	10.9	11.0	11.3	11.3
4.5천만 이하	3.9	4.2	4.0	4.2	4.1	4.1	4.2	4.2	4.3	4.3
6천만 이하	8.1	8.8	8.4	8.9	8.9	9.0	9.1	9.3	9.5	9.5
8천만 이하	5.4	5.9	6.0	6.4	6.6	6.6	6.9	7.1	7.2	7.1
1억 이하	2.3	2.5	2.5	2.6	2.7	2.7	2.9	2.9	3.0	3.0
2억 이하	1.6	1.8	2.1	2.2	2.4	2.4	2.6	2.7	2.8	2.8
3억 이하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5억 이하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0억 이하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4	0.03	0.03
10억 초과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IV-8] 총급여액 구간별 인원분포(2014년)

(단위: %)



<표 IV-10>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자 수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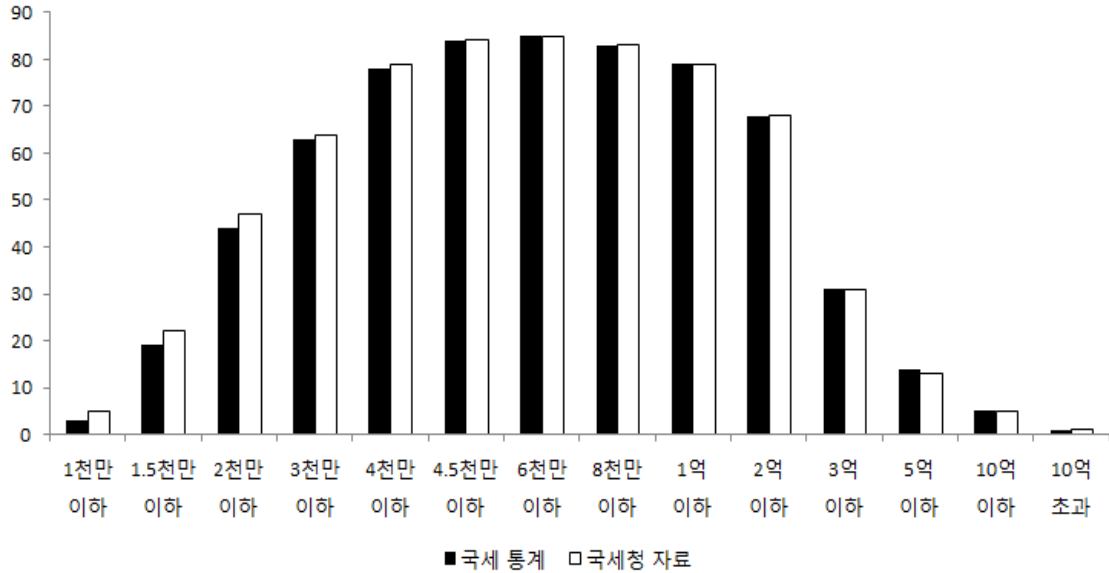
(단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국세 통계	국세청 자료
1천만 이하	1	3	1	3	1	3	1	2	3	5
1.5천만 이하	22	25	21	24	20	24	20	23	19	22
2천만 이하	43	46	42	45	41	44	41	43	44	47
3천만 이하	64	66	63	65	63	64	62	63	63	64
4천만 이하	79	80	79	80	79	80	79	79	78	79
4.5천만 이하	83	84	83	84	84	84	84	84	84	84
6천만 이하	84	84	85	85	85	85	85	85	85	85
8천만 이하	81	80	82	82	83	82	83	83	83	83
1억 이하	76	76	78	78	78	78	78	78	79	79
2억 이하	64	65	66	67	68	67	68	67	68	68
3억 이하	28	26	29	30	30	30	30	31	31	31
5억 이하	12	10	13	14	14	12	14	14	14	13
10억 이하	4	5	5	7	5	5	4	5	5	5
10억 초과	1	0	1	1	1	0	1	3	1	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IV-9]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자 수 대비 신용카드 수혜자 분포(2014년)

(단위: %)



-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자를 대상으로 2010년~ 2014년까지의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이 증가하였고, 최근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2014년의 공제한도 초과자 비율은 최소 19%에서 최대 68%로, 총급여 4,5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절반 이상의 납세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12년에는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도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제한도 초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은 감소하여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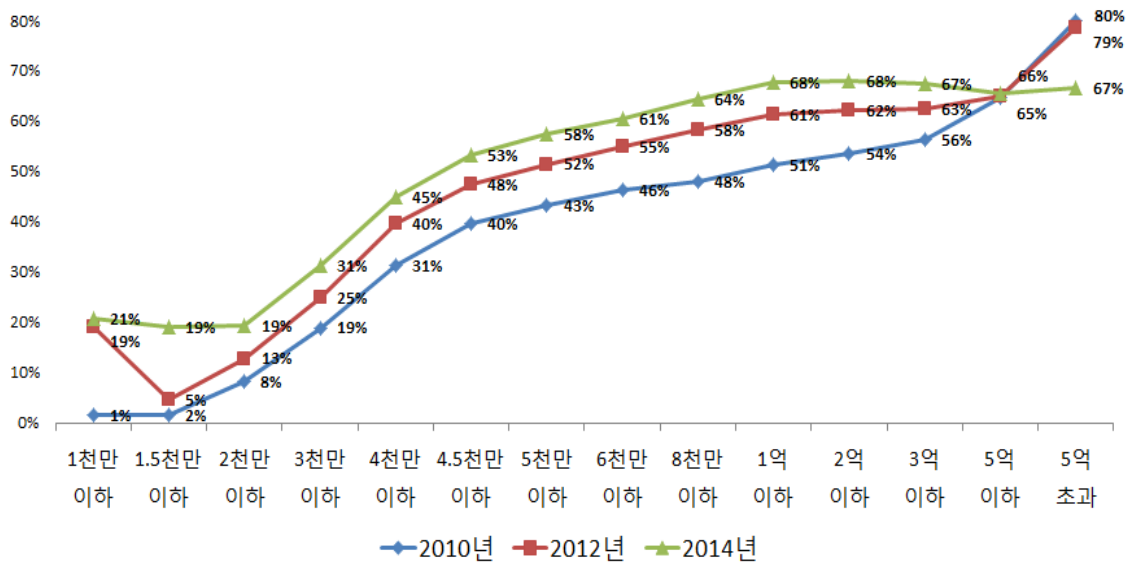
<표 IV-11>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단위: %)

총급여액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1천만 이하	1	2	19	21	21
1.5천만 이하	2	2	5	4	19
2천만 이하	8	9	13	12	19
3천만 이하	19	21	25	26	31
4천만 이하	31	34	40	41	45
4.5천만 이하	40	43	48	50	53
5천만 이하	43	46	52	54	58
6천만 이하	46	50	55	58	61
8천만 이하	48	52	58	62	64
1억 이하	51	55	61	65	68
2억 이하	54	55	62	66	68
3억 이하	56	58	63	66	67
5억 이하	65	62	65	70	66
5억 초과	80	72	79	79	67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IV-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의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초과자 비중 추이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5.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추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함
 - 1999년 9월~ 2004년 11월에는 총급여액의 10%, 2014년 12월~2007년에는 총급여액의 15%, 2008~2009년에는 총급여액의 20%,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제한도 초과자 분석 시 사용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각 소득별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최저사용금액 미달자의 비율, 즉 소득별로 동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을 파악하고자 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비중을 파악한 결과, 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소득 1천만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에서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 중 약 90~95%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소득 4.5~6천만원구간에서 최저사용금액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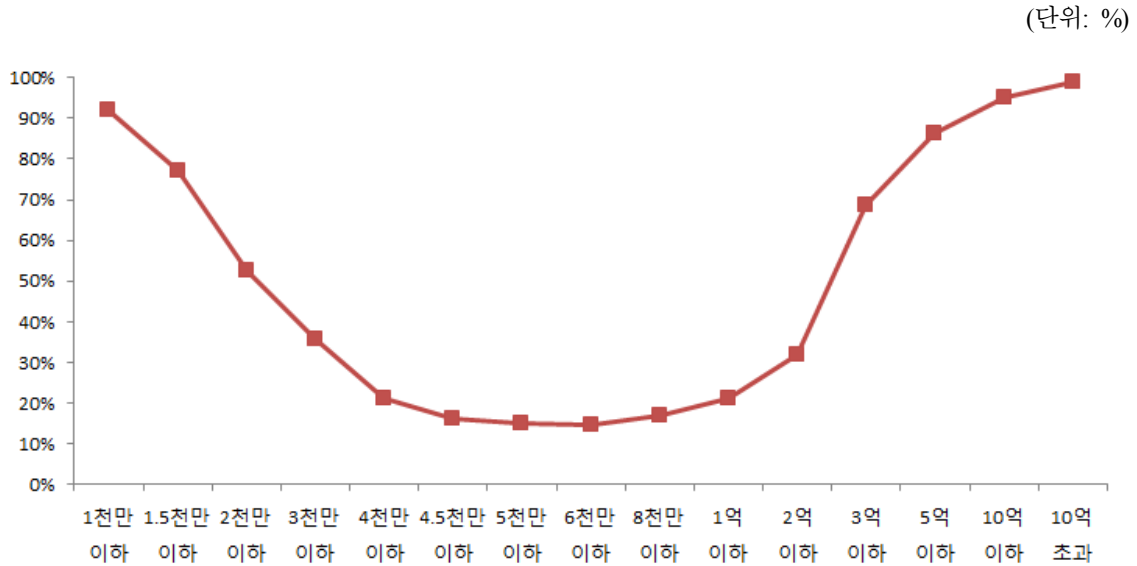
〈표 IV-12〉 연도별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비율

(단위: %)

총급여액	2010	2011	2012	2013	2014
1천만 이하	90.6	91.2	91.4	91.6	92.0
1.5천만 이하	67.9	69.5	69.8	69.8	77.2
2천만 이하	46.1	48.2	49.6	50.5	52.6
3천만 이하	28.9	30.6	31.8	33.3	35.8
4천만 이하	18.0	18.1	18.6	19.5	21.2
4.5천만 이하	15.6	15.4	15.3	15.5	16.2
5천만 이하	15.5	14.3	14.8	14.7	15.2
6천만 이하	15.9	15.0	15.5	15.1	14.8
8천만 이하	19.3	17.6	17.6	17.3	17.1
1억 이하	23.7	22.1	22.3	22.4	21.4
2억 이하	35.3	33.0	32.9	32.6	32.0
3억 이하	74.1	70.2	69.8	68.9	68.5
5억 이하	89.7	85.8	87.7	85.7	86.5
5억 초과	95.5	92.9	94.8	94.6	95.2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IV-11] 2014년 최저사용금액 미달자 비율



6. 제도 변경 시 공제항목 사용금액 변동 추이

- 제도 도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 사용분에 국한되었으나, 그 후 세법개정 시 공제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됨
 - 2000년대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이 새로 공제항목에 추가되었고, 이 중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은 2013년에 공제항목에서 제외됨
 - 2012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공제항목에 추가되었고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됨
 -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공제항목에 포함되었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됨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공제율 변동이 있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공제제도 관련 금액을 파악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 시 전체 공제항목 사용금액 대비 각 공제항목 사용금액의 비율 변동을 파악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13년 20%에서 15%로 감소하였고,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12년 25%에서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13년 20%에서 30%로 증가함

<표 IV-13> 연도별 공제율 변동

(단위: %)

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11년	20	25	20
2012년	20	30	20
2013년	15	30	30

- 이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용금액의 비중을 파악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과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비중은 공제율 변화와 비례하게 비중이 변화한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표 IV-14> 2012~2013년 소득수준별 공제항목별 사용금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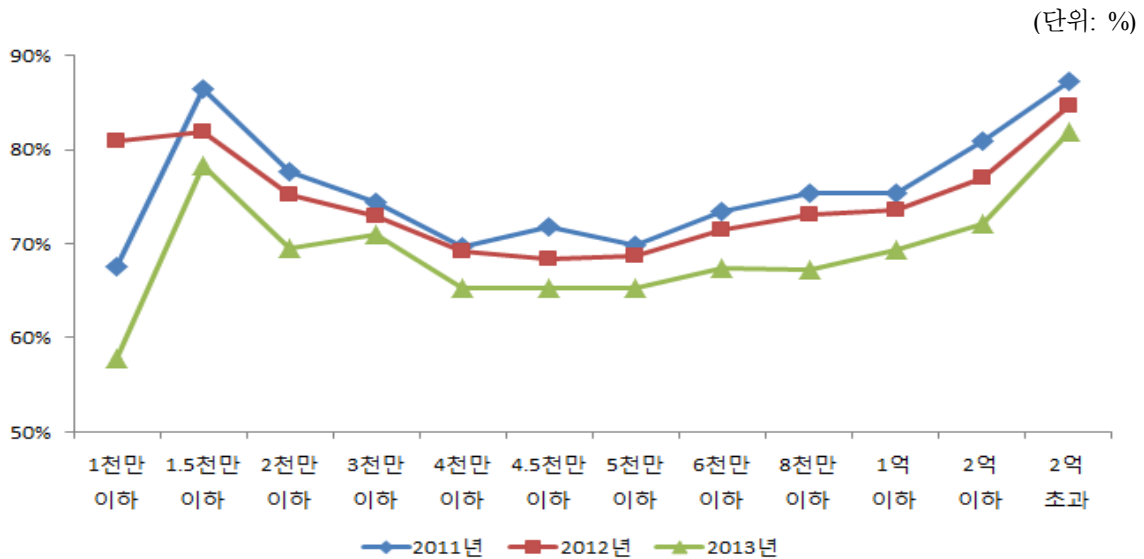
총급여액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천만 이하	68	81	58	14	7	21	19	12	17
1.5천만 이하	86	82	78	7	7	10	7	10	9
2천만 이하	78	75	70	8	12	15	14	11	11
3천만 이하	74	73	71	10	11	12	16	15	14
4천만 이하	70	69	65	10	12	16	20	17	16
4.5천만 이하	72	68	65	9	11	14	19	19	17
5천만 이하	70	69	65	11	12	14	19	18	18
6천만 이하	73	72	67	8	11	14	19	17	16
8천만 이하	75	73	67	8	10	14	17	16	15
1억 이하	75	74	69	8	10	13	17	16	15
2억 이하	81	77	72	6	9	13	13	13	13
2억 초과	87	85	82	7	6	7	5	9	9

주: 각 사용금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의 합에서 각 공제항목 당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자료의 특성상 전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 1천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여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가 신용카드 사용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총급여 1천만원 이하에서는 2012년에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50%대로 떨어져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이 가장 낮음
 - 2011년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이 최소 70%에서 80%대에 머물렀으나, 2013년에는 60%에서 70% 사이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IV-12] 신용카드사용액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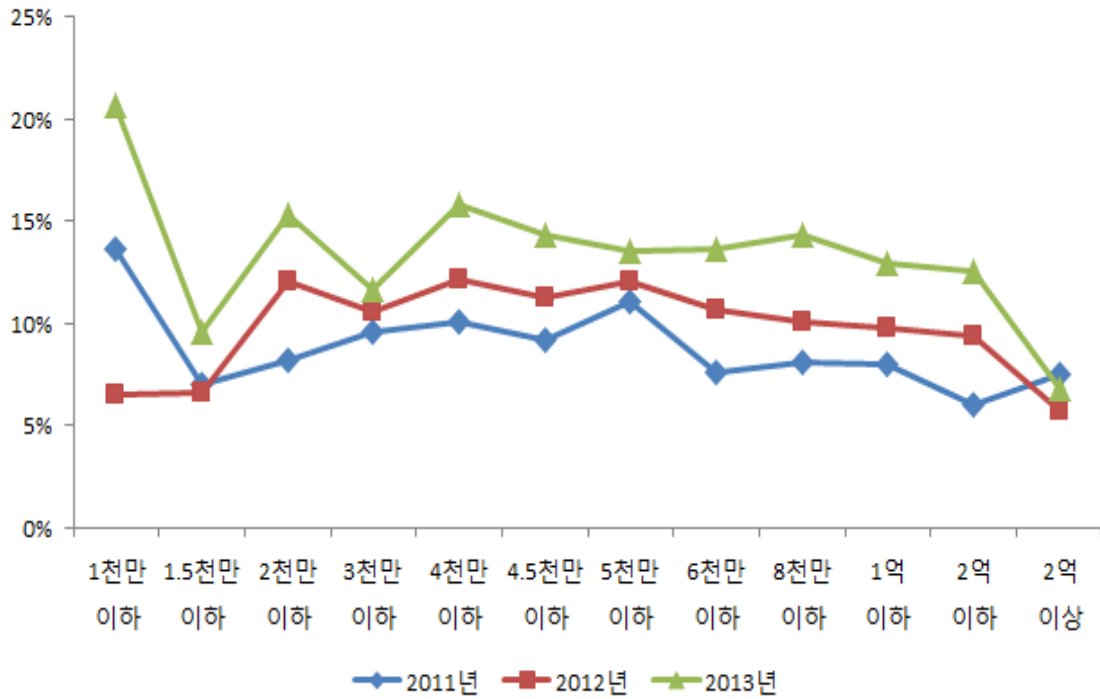
주: 각 사용금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의 합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자료의 특성상 전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비중은 총급여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매년 최대 5%p 증가하였고, 2013년에 전반적으로 전체 공제항목 사용금액 대비 10%대의 비중을 차지하여 공제율 변화가 직불카드 사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2011년의 직불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대체로 10% 내외였으나, 2013년에는 직불카드 사용액의 비중이 대체로 10% 이상을 차지함
 -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비중은 매년 최대 4%p씩 증가하여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가 직불카드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그림 IV-13] 직불카드등 사용액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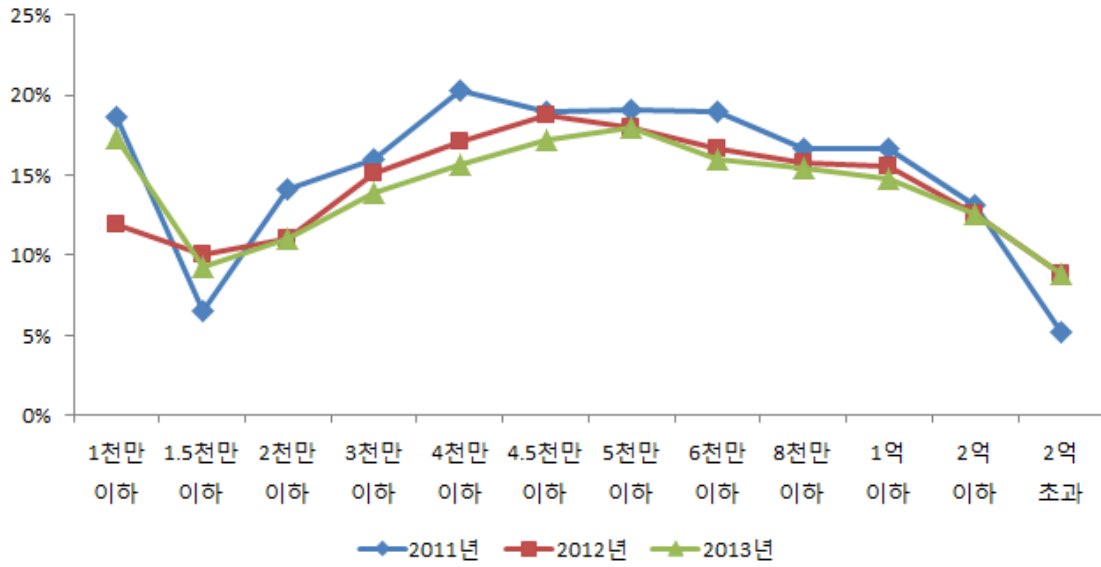
주: 각 사용금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의 합에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자료의 특성상 전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비중은 예상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로 감소하여, 공제율 변동에 따른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파악됨
 - 2012년에는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으로 인하여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13년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대체로 2012년에는 예상과 같이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2012년의 공제금액 비중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함

[그림 IV-14] 현금영수증사용액 비중 변화

(단위: %)



주: 각 사용금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의 합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자료의 특성상 전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V. 타당성 평가



V. 타당성 평가

1. 정부역할의 적절성

가. 지원의 필요성

-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그 분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1999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여 세원의 투명화를 달성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왔음(「조특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8,163억원으로 당해 연도말 일몰 도래하는 전체 조세지출의 62.9%에 달함
 - 201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88%가 넘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액의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37.1%에 이르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표 V-1>과 같음
 - 국세수입실적이 2000년 93조원에서 2014년에는 205.5조원으로 2.2배 증가한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은 2000년 346억원에서 2015년에는 1.8조원으로 52.5배 증가
 -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증가율이 각각 485.8%, 207.0%를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표 V-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금액	증가액	전년대비 증가율
1999	0	-	-
2000	350	350	-
2001	2,027	1,677	479.1
2002	6,233	4,206	207.5
2003	8,308	2,075	33.3
2004	8,966	658	7.9
2005	9,812	846	9.4
2006	10,465	653	6.7
2007	12,506	2,041	19.5
2008	15,171	2,665	21.3
2009	18,934	3,763	24.8
2010	18,405	-529	-2.8
2011	11,729	-6,676	-36.3
2012	11,697	-32	-0.3
2013	13,721	2,024	17.3
2014	15,708	1,987	14.5
2015	18,163	2,455	15.6
합계	182,195		

주: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되어, 조세지출 비용은 2000년부터 발생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199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²¹⁾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됨
 - 이후 2000년 1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의 수취를 장려함

2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한 금액을 말함

- 그동안 동 제도는 일몰을 맞이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 2016년 말 또다시 일몰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 여부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급연기수단이며, 결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금대체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금대체지급수단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제3자인 카드회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세원의 투명화를 제고하여 직접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 및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합리적인 근거과세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등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²²⁾
 -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됨
- 또한 신용카드는 지불수단과 판매신용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이므로, 신용카드산업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함
- 신용카드 이용의 확대는 부가가치망(VAN) 서비스, 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단말기 제조 및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함
 - 더욱이 신용카드 이용 확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신서비스산업 및 신용평가산업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신용카드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됨
-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원 양성화는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남(<표 VI-3> 참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이 1999년에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134만명에서 2014년 505만명으로 276.9% 증가

22)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59.htm

- 물론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익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확충되고,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무기장가산세의 인상 등 과세당국의 기장확대 노력의 결과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임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기장신고인원은 1999년 57만명에서 2014년에는 277만명으로 385.9% 증가
 - 이에 따라 근거과세 신고비율이 1999년 42.7%에서 2009년 54.9%로 향상
 - 추계신고인원은 1999년 75만명에서 2014년에는 182만명으로 142.7% 증가하였으나 추계신고인원비중은 1999년 55.8%에서 2014년에는 36.0%로 19.8%p 하락
- 이러한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신고납부가 정착된 것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원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자 대상 현금수입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소득과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고율이 제고되었기 때문
 -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조세지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특정 계층이나 분야를 지원한다기 보다는 세원 양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임

2.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가. 조세지원 대상의 적절성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한선이 폐지되는 등 규제완화 조치들이 있었으며, 부진한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전환에 따라 소비자신용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자산확대 경쟁이 본격화됨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 말 기준 552조원으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37.1%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큰 편임²³⁾

-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세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세수 증가율은 2007~2010년 기간중 연평균 1.2%에 불과하여 전체 조세 증가율 3.2%보다 낮음
 - 이는 이미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신용카드의 추가적인 이용에 따른 세원노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표 V-2>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인원과 총공제금액, 1인당 평균 공제액을 보여줌
 - 소득계층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인원과 총공제금액은 근로소득 2천만원~4천만원, 4천만원~6천만원 구간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공제 인원과 총공제금액은 중하위구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조세감면제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감

- 조세지원 대상의 적절성을 논함에 있어서 동 제도는 특정 계층이나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님
 -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려는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지원 대상의 선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소득계층별 혜택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몰 연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만일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3) 정훈(2015), p.13

나.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조세 지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특정 분야나 계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따라서 이에 상응하거나 비교대상이 되는 재정지원은 찾기 어려우며²⁴⁾,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24)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여기서는 「조특법」 제126조의 2에서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대상을 찾기는 어려움

〈표 V-2〉 과세대상 소득규모별 공제인원과 소득공제금액

(단위: 명, 만원)

근로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천만원 이하	806,073	855,860 (106.2)	789,415	860,647 (109.0)	783,373	903,982 (115.4)	795,547	1,014,621 (127.5)	830,675	1,063,108 (128.0)
2천~4천만원	2,401,162	4,914,966 (204.7)	2,404,440	4,345,661 (180.7)	2,536,552	4,717,722 (186.0)	2,703,503	5,427,548 (200.8)	2,821,458	5,887,623 (208.7)
4천~6천만원	1,475,573	4,163,045 (282.1)	1,503,931	3,303,600 (219.7)	1,597,723	3,594,586 (225.0)	1,711,106	4,097,860 (239.5)	1,813,160	4,617,639 (254.7)
6천~8천만원	651,887	1,966,192 (301.6)	660,711	1,487,720 (225.2)	765,759	1,773,708 (231.6)	859,341	2,136,373 (248.6)	931,263	2,505,217 (269.0)
8천~1억원	223,480	710,460 (317.9)	265,806	602,961 (226.8)	300,638	703,862 (234.1)	334,814	845,058 (252.4)	367,783	1,012,198 (275.2)
1억~2억원	121,797	400,762 (329.0)	156,676	357,142 (227.9)	213,701	495,776 (232.0)	250,158	627,489 (250.8)	284,992	784,539 (275.3)
2억~3억원	5,550	18,621 (335.5)	5,506	12,650 (229.8)	6,880	16,133 (234.5)	8,326	20,768 (249.4)	9,171	25,091 (273.6)
3억~5억원	1,212	4,344 (358.4)	1,045	2,497 (238.9)	1,397	3,385 (242.3)	1,609	4,174 (259.4)	1,814	5,009 (276.1)
5억 초과	225	900 (400.1)	154	417 (270.7)	224	593 (264.8)	251	700 (278.9)	250	731 (292.3)

주: 1. 과세미달자 제외

2. () 안은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정책적 시사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보면 크게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들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분야별 맞춤형정책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2012년부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2013년부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 맞춤형정책을 도입한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어, 일반 납세자는 물론 소위 조세전문가들도 스스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정
 - 이는 한 가지 정책수단에 의거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재정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바람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는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의 두 가지 차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양성화효과가 있었는가를 정량적으로 확정짓기는 어려움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현금 사용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지원의 필요성을 논한다면, 동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것은 제Ⅷ장의 효율성 평가에서도 보듯이 과표양성화 효과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크게 나타났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금액이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최근 화폐 발행이 줄어들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의 편리성 등에 따른 전자결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표양성화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²⁵⁾
- 그러나 그동안 동 제도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어 왔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세부담 경감이 유효수요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기를 맞아 소비심리의 회복과 유효수요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임
 - 또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위 소득계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 따라서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지만, 공제인원과 총공제금액은 중하위계층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들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 V-3>에서 보면 2007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1분위~3분위까지의 저소득층 가구는 항상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7분위까지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였음
 -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어 유효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해진 현행 제도를 고쳐서 공제대상 최소 지출요건, 공제한도 등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25) 현금거래의 경우에도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가맹점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V-3>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과 지출액 추이

(단위: 만원)

	분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 소득	1분위	291.2	345.4	370.9	469.8	466.6	445.0	452.9	486.6
	2분위	851.5	827.3	948.7	1,036.2	1,030.0	947.3	978.9	1,017.8
	3분위	1,363.8	1,319.7	1,484.8	1,609.7	1,583.2	1,551.7	1,548.2	1,605.0
	4분위	1,891.8	1,888.6	2,015.9	2,188.2	2,157.8	2,153.9	2,156.7	2,237.9
	5분위	2,395.9	2,425.3	2,595.0	2,813.9	2,752.3	2,741.3	2,786.3	2,964.5
	6분위	2,922.1	2,999.9	3,224.7	3,493.8	3,477.0	3,431.4	3,588.4	3,718.0
	7분위	3,627.8	3,705.8	3,876.4	4,225.0	4,228.0	4,305.4	4,499.7	4,615.4
	8분위	4,604.5	4,565.3	4,752.6	5,217.4	5,181.2	5,400.3	5,569.7	5,715.0
	9분위	5,799.2	5,890.8	6,097.9	6,636.8	6,733.4	6,920.4	7,053.2	7,303.1
	10분위	9,490.9	9,931.8	10,086.2	11,149.0	11,160.3	12,070.9	11,907.1	12,536.9
소비 지출	1분위	759.7	961.9	1,137.6	1,082.8	1,024.9	993.8	1,044.1	1,044.1
	2분위	970.0	1,280.5	1,411.4	1,402.1	1,383.4	1,444.4	1,318.5	1,350.7
	3분위	1,404.0	1,551.3	1,820.3	1,894.6	1,805.4	1,922.1	1,926.6	1,968.2
	4분위	1,837.0	2,033.0	2,204.8	2,434.8	2,250.8	2,442.8	2,299.5	2,328.8
	5분위	2,152.1	2,521.3	2,716.0	2,878.3	2,670.4	2,900.0	2,951.1	2,901.1
	6분위	2,600.4	2,955.7	3,321.2	3,435.9	3,336.8	3,471.4	3,543.6	3,635.2
	7분위	2,973.8	3,503.2	3,724.0	3,921.4	3,804.9	4,321.7	4,305.1	4,396.7
	8분위	3,627.3	3,967.2	4,342.5	4,418.7	4,560.8	4,713.6	5,005.3	4,871.7
	9분위	4,058.2	4,794.4	5,106.9	5,579.1	5,365.1	5,955.8	5,912.9	5,928.4
	10분위	5,736.2	6,420.2	7,208.3	7,830.0	7,475.0	8,226.1	8,751.5	8,662.3

주: 1. 연도별로 회색으로 표시된 분위까지 소비지출이 경상소득보다 많은 것을 나타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자료

VI. 효과성 평가



VI. 효과성 평가

1.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

가.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및 세수 증가

1)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증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 소득과약률을 높이는 데 그 정책적 목표가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임
- 본 절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 제도 도입 전후 납세인원 및 세수의 변화를 살펴봄
 -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신고자료 및 B2C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수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세통계자료만으로는 이들을 분리해내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자료 입수상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B2B거래가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해 동 공제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함
 - 만약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금액에 비사업소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세 세수증대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B2B거래는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세금계산서 상호대사를 통해 세원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B2B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수를 포함해 분석

할 경우, 동 공제제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증대효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기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1999년 대비 각각 247%와 80%가 증가함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1999년 132만명에서 2014년에는 459만명으로 무려 2.47배가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 역시 1999년 277만명에서 2014년 497만명으로 80%가 증가함

- 카드대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납세인원 수가 소폭 감소한 2004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임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두 자릿 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짐
 - 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개인사업자 수는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표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신고인원

(단위: 천명, %)

연도	종합소득세 ¹⁾		부가가치세 ²⁾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1999	1,322	8.96	2,767	4.1
2000	1,535	16.11	3,112	12.5
2001	1,741	13.42	3,388	8.9
2002	1,942	11.55	3,618	6.8
2003	2,031	4.58	3,636	0.5
2004	2,133	5.02	3,570	-1.8
2005	2,195	2.91	3,723	4.3
2006	2,616	19.18	3,841	3.2
2007	2,900	10.86	4,146	7.9
2008	3,393	17.00	4,412	6.4
2009	3,336	-1.68	4,605	4.4
2010	3,529	5.79	4,703	2.1
2011	3,703	4.93	4,798	2.0
2012	3,903	5.40	4,793	-0.1
2013	4,106	5.20	4,988	4.1
2014	4,589	11.76	4,970	-0.4

주: 1) 해당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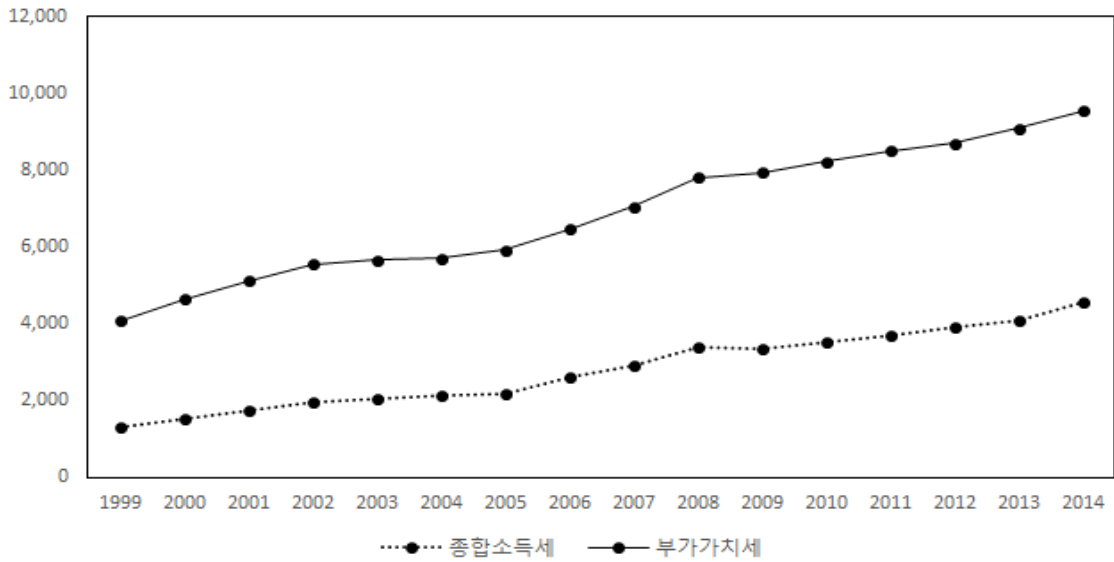
2) 해당연도 2기 확정신고자 수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신고인원 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증가율이 다른 기간보다 월등히 높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개인사업자의 납세인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숫자는 전년 대비 각각 16.11%와 12.5%가 증가함

[그림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신고인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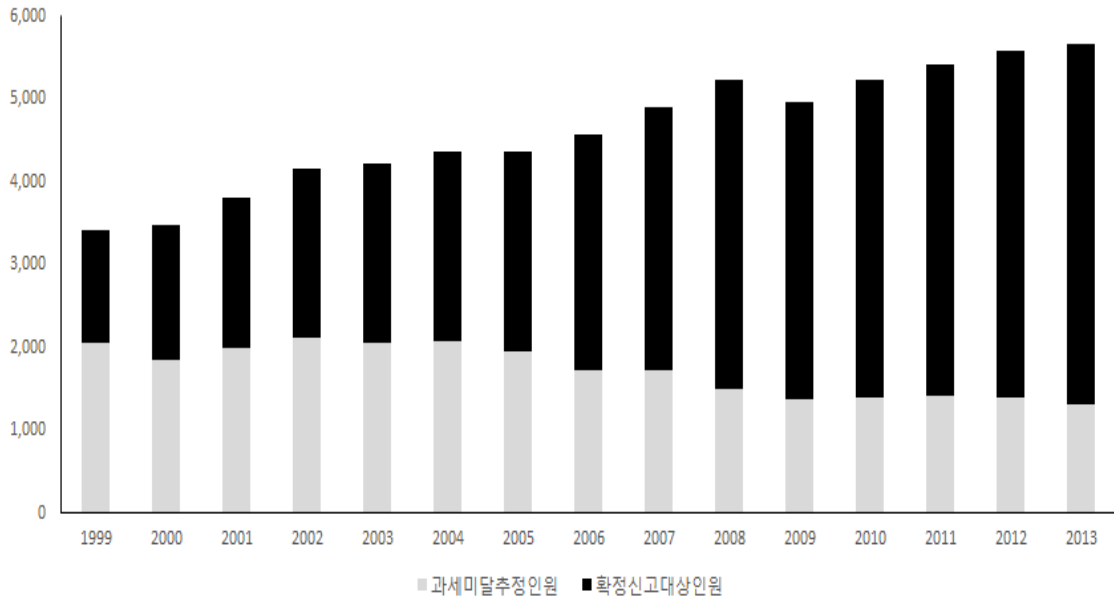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신고인원 숫자뿐만아니라 과세납세인원비율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 크게 증가함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확정신고 시 과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과세납세인원 비율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직후인 2000년에 19.9%,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직후인 2006년에 18.5%가 증가해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표 VI-4> 참조)
 - 부가가치세 역시 전체적인 신고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납부의무면제자 숫자는 꾸준히 감소해, 납부인원비율이 2002년 61%에서 2014년에는 78%로 증가함
 -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로, 과세미달 납세인원 숫자가 줄면서 과세납세인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VI-2]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납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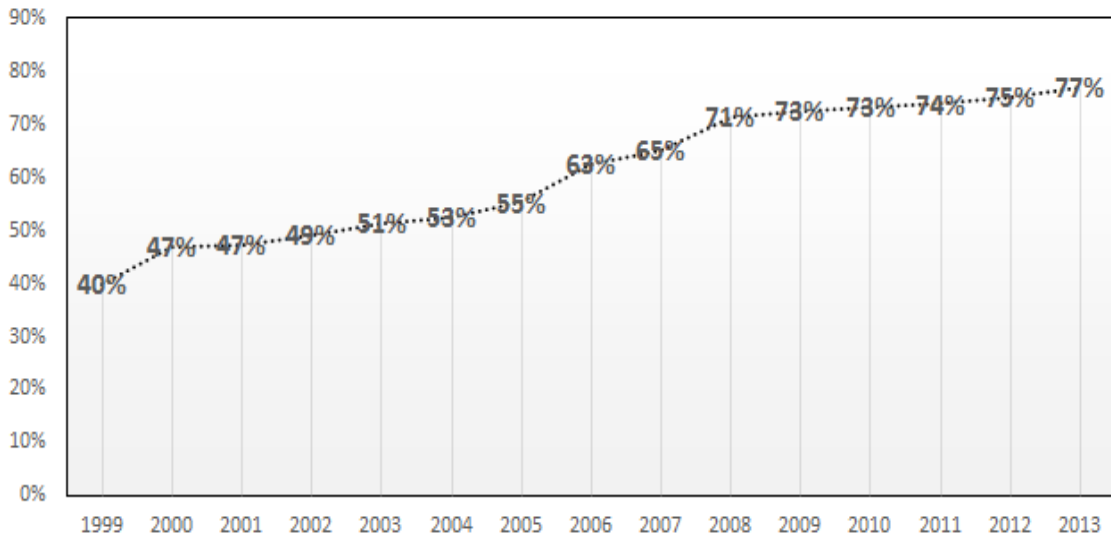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3]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납세인원비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2>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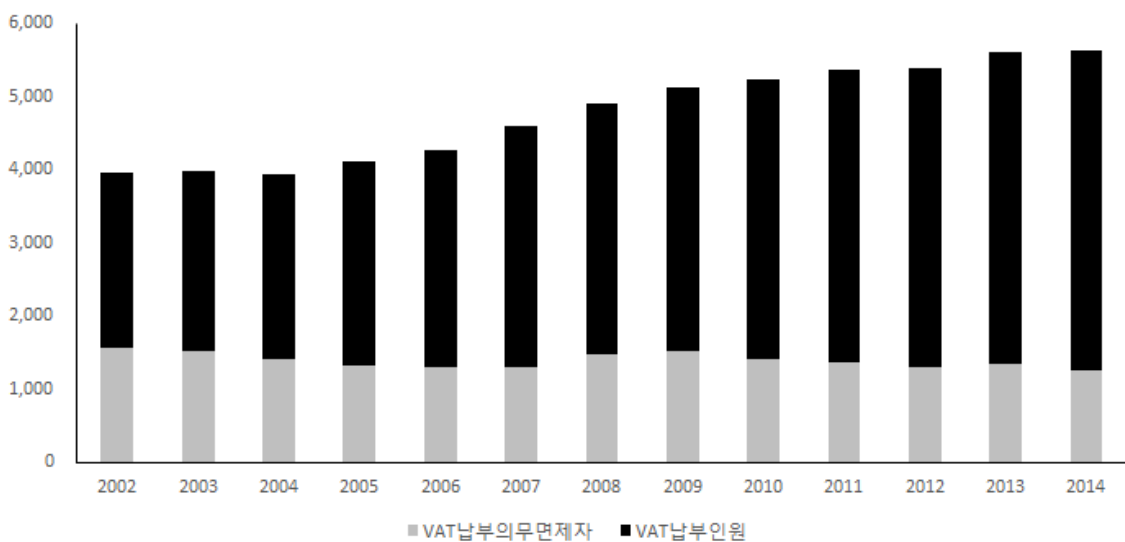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A)	납부의무면제자 (B)	납부인원 (C=A-B)	납부인원비율 (D=C/A)
2002	3,963	1,558	2,405	61
2003	3,995	1,530	2,464	62
2004	3,942	1,424	2,519	64
2005	4,123	1,329	2,794	68
2006	4,261	1,295	2,965	70
2007	4,602	1,307	3,295	72
2008	4,902	1,478	3,424	70
2009	5,124	1,525	3,600	70
2010	5,239	1,425	3,814	73
2011	5,361	1,370	3,991	74
2012	5,385	1,297	4,088	76
2013	5,609	1,345	4,265	76
2014	5,624	1,261	4,363	78

주: 1. 연도별 인원은 각 연도 제2기 확정신고 인원임
 2. 납부인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에서 납부의무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납부인원임
 3. 납부의무면제자 수에 대한 통계는 2002년부터 생산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4]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인원 및 납부면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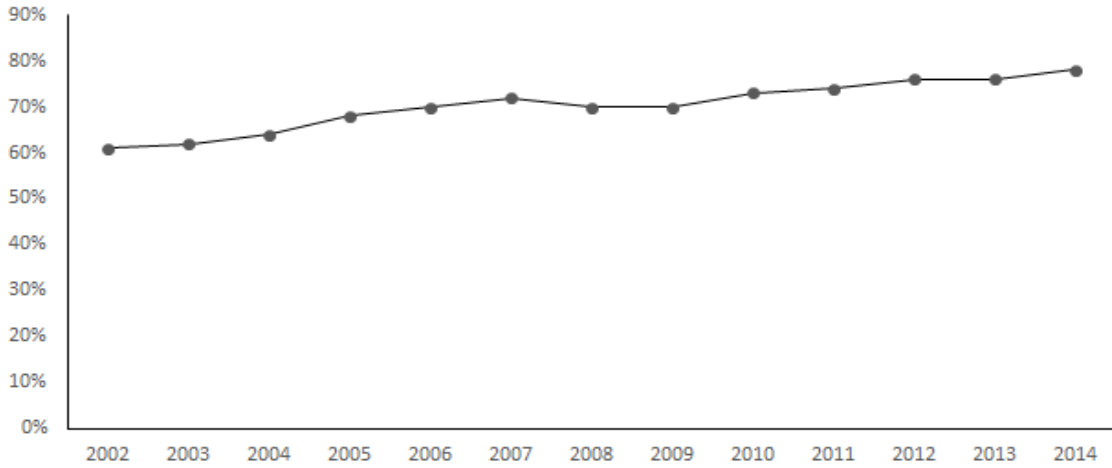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5]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인원비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

- 다음으로 동 제도 도입 전후 세수 실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결정세액 기준) 및 부가가치세 세수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으로 1999년 대비 각각 411%와 290%가 증가함
 -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세수(결정세액 기준)는 1999년 3조 3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16조 9천억원으로, 무려 4.11배가 증가함
 -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1999년 4조 2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16조 5천억원으로, 2.9배가 증가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 직후인 1999년과 2000년,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직후인 2006년의 세수 증가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동 제도 시행 직후인 2000년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전년 대비 27.9%가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22.1%가 증가함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 역시 전년 대비 종합소득세 세수 22.2%, 부가가치세 세수 15.3%가 증가함
 - 세원노출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위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로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신용카드 거래금액보다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개인사업자 관련 세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경영실적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증가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낮음
- 반면에 2011년은 경기 호조로 종합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음

<표 VI-3>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십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¹⁾		부가가치세 ²⁾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9	3,314	16.0	4,216	22.8
2000	4,237	27.9	5,149	22.1
2001	4,975	17.4	5,093	-1.1
2002	4,382	-11.9	5,558	9.1
2003	5,467	24.8	6,047	8.8
2004	5,934	8.5	7,273	20.3
2005	6,365	7.3	8,288	14.0
2006	7,777	22.2	9,552	15.3
2007	9,180	18.0	10,853	13.6
2008	9,757	6.3	12,128	11.7
2009	9,593	-1.7	12,348	1.8
2010	10,697	11.5	13,680	10.8
2011	12,484	16.7	14,799	8.2
2012	13,447	7.7	15,146	2.3
2013	14,712	9.4	15,946	5.3
2014	16,937	15.1	16,48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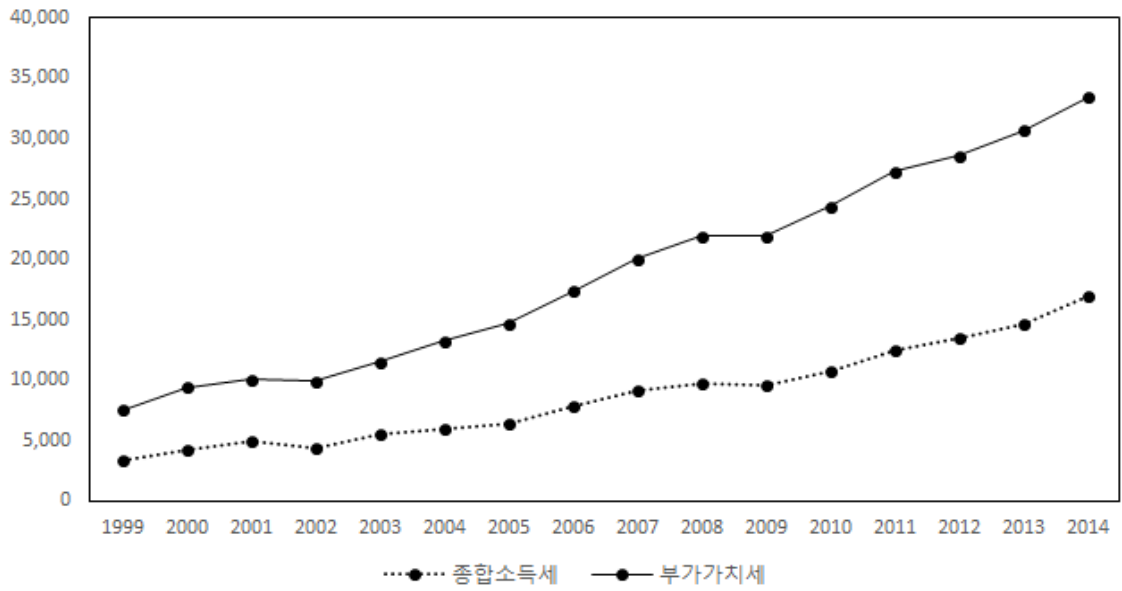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임

2) 해당연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과세특례자)의 실세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6]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4〉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천명, %)

연도	납세인원 ¹⁾	과세미달 추정인원 ²⁾	확정신고 대상인원 ³⁾		과세납세 인원비율	확정신고인원 ⁴⁾			근거과세 인원비율	비사업자	
			인원 수	전기 대비 증감률		합계	기장 신고인원				
							인원 수	전기 대비 증감률			추계신고 인원
1999	3,408	2,047	1,360	8.9	39.9	1,342	573	15.8	749	43.3	20
2000	3,480	1,850	1,631	19.9	46.9	1,616	680	18.7	856	44.3	81
2001	3,808	2,002	1,807	10.8	47.4	1,782	790	16.2	951	45.4	41
2002	4,161	2,115	2,046	13.2	49.2	2,010	919	16.3	1,023	47.3	68
2003	4,227	2,059	2,168	6.0	51.3	2,115	1,018	10.8	1,013	50.1	84
2004	4,363	2,071	2,292	5.7	52.5	2,236	1,144	12.4	989	53.6	103
2005	4,370	1,955	2,415	5.4	55.3	2,279	1,230	7.5	966	56.0	84
2006	4,580	1,718	2,862	18.5	62.5	2,736	1,395	13.4	1,221	53.3	120
2007	4,913	1,719	3,194	11.6	65.0	3,074	1,585	13.6	1,315	54.7	174
2008	5,227	1,494	3,733	16.9	71.4	3,584	1,865	17.7	1,528	55.0	191
2009	4,971	1,369	3,602	-3.5	72.5	3,571	1,983	6.3	1,353	59.4	235
2010	5,230	1,400	3,830	6.3	73.2	3,785	2,146	8.2	1,383	60.8	256
2011	5,419	1,421	3,998	4.4	73.8	3,957	2,308	7.5	1,394	62.3	254
2012	5,585	1,388	4,197	5.0	75.1	4,353	2,450	6.2	1,454	62.8	450
2013	5,674	1,313	4,361	3.9	76.9	4,565	2,621	7.0	1,484	63.8	459
2014	5,846	**5)	**5)	**5)	**5)	5,053	2,773	5.8	1,816	60.4	464

주: 1) 사업자(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비사업자는 제외함.

2) 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추정되는 인원임

3) 납세인원 중에서 확정신고시 과세되는 인원의 비율임

4)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정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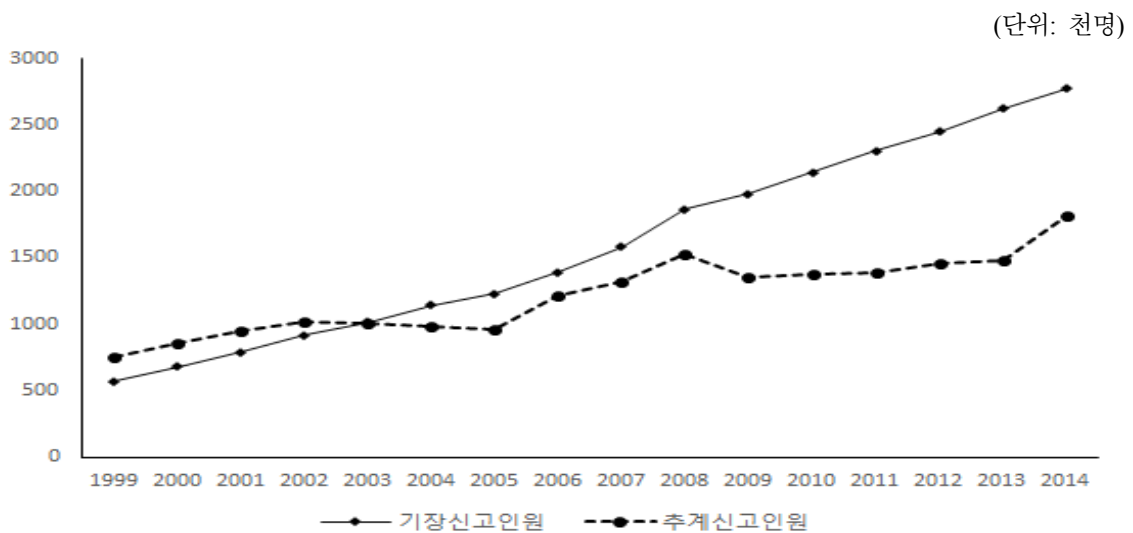
5) 과세미달추정인원 및 확정신고대상인원은 추정치로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2014년 귀속부터 집계 제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기장신고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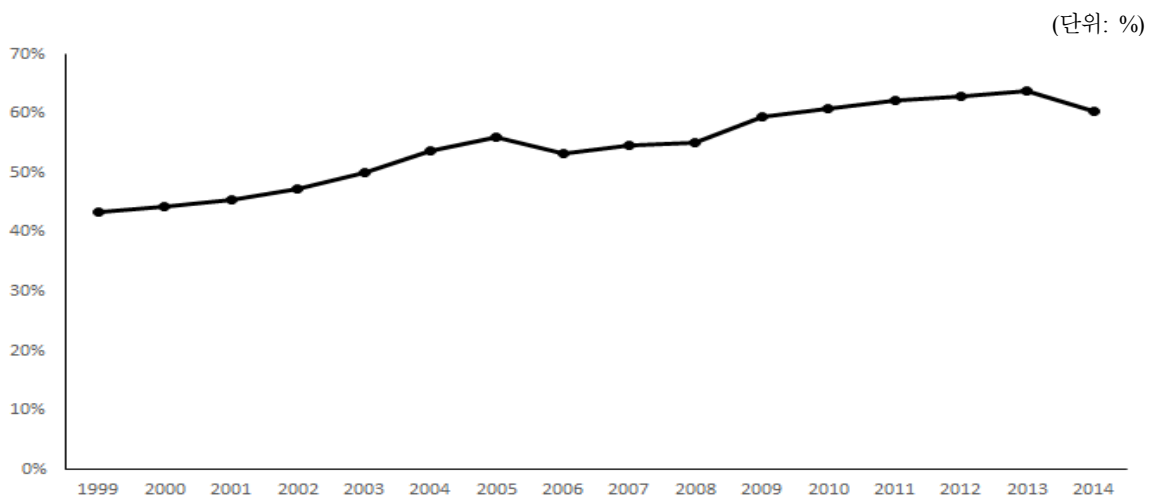
- 기장신고비율은 동 공제제도 시행 직후인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매해 15% 이상 고공성장을 거듭해, 전체 분석대상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기장신고비율은 1999년에는 40.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60.4%로 상승함
- 그러나 2009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됨

[그림 VI-7] 연도별 개인사업자 기장신고인원 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8] 연도별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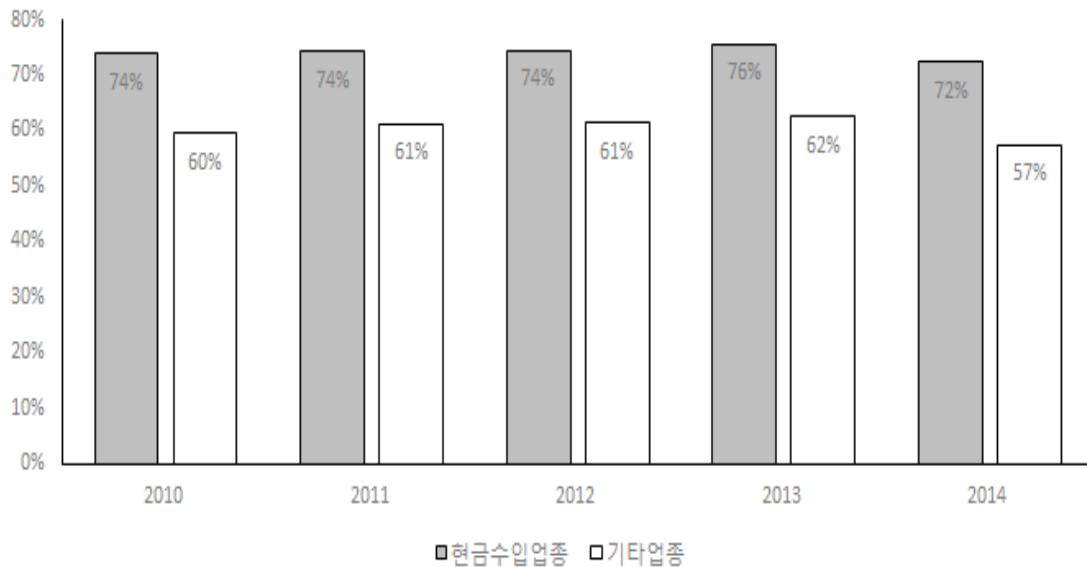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해 장부기장비율을 비교한 결과, 현금수입업종이 기타업종에 비해 장부기장비율이 높고, 이러한 추세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소득누락이 용이한 현금수입업종에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가 보편화된 것으로 판단됨²⁶⁾
 - 2014년 기준으로 현금수입업종은 복식부기신고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간편장부신고(30%)로 장부기장비율이 무려 72%에 달함
 - 반면 기타업종은 간편장부신고가 3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단순경비율신고(30%)로, 장부기장비율이 57%에 불과함
 - 현금수입업종의 장부기장비율이 70%를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누락이 용이한 현금수입업종에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가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함

[그림 VI-9]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장부기장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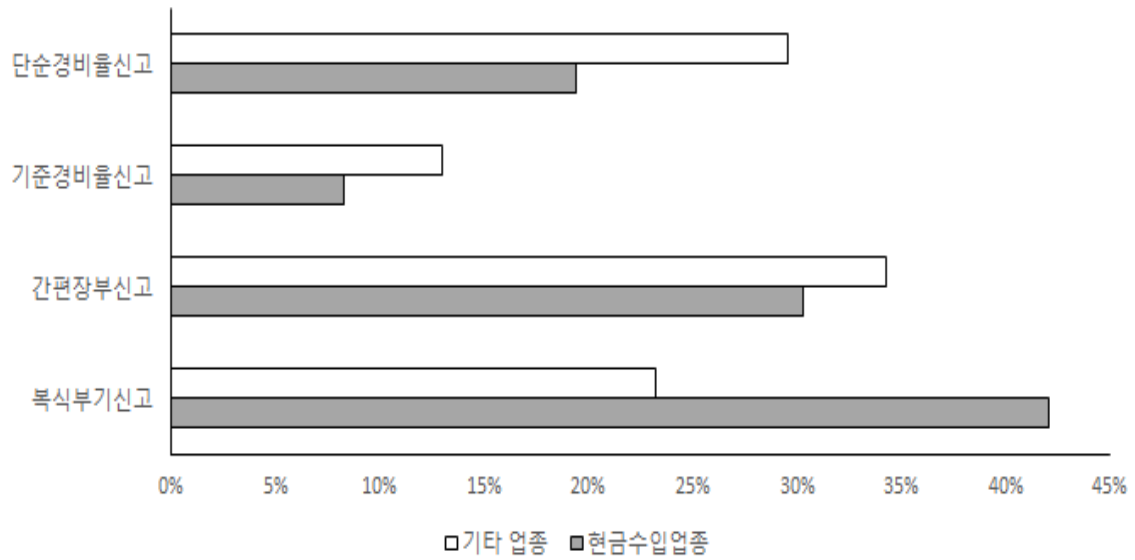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6) 업종별 장부기장비율은 2010년부터 관련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어 동 공제제도 도입 전후 장부기장비율 비교가 불가능했음

[그림 VI-10]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 비교(2014년 기준)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5〉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자료

(단위: 천명, 십억원)

연도	업종 구분 ¹⁾	복식부기신고			간편장부신고			기준경비율신고			단순경비율신고		
		인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인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인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인원	수입 금액	소득 금액
2010	현금업종	140	55,097	11,116	97	7,374	664	29	1,558	290	55	1,310	374
	기타업종	707	436,787	26,043	1,215	119,853	8,632	403	32,849	4,856	900	27,382	5,885
	소계	847	491,884	37,159	1,312	127,227	9,296	432	34,407	5,146	955	28,692	6,259
2011	현금업종	147	59,373	12,266	104	7,754	710	27	1,476	244	60	1,444	415
	기타업종	784	495,706	31,375	1,283	124,769	9,561	409	33,571	5,049	904	24,896	5,669
	소계	931	555,079	43,641	1,387	132,523	10,271	436	35,047	5,293	964	26,340	6,084
2012	현금업종	153	62,448	12,619	104	7,695	703	29	1,530	249	59	1,414	383
	기타업종	856	499,906	32,726	1,344	124,826	10,053	432	34,337	5,301	954	23,645	5,814
	소계	1,009	562,354	45,345	1,448	132,521	10,756	461	35,867	5,550	1,013	25,059	6,197
2013	현금업종	157	66,199	13,529	112	8,377	802	27	1,550	244	60	1,520	399
	기타업종	891	505,094	34,834	1,468	131,290	11,088	420	33,919	5,350	996	24,260	6,048
	소계	1,048	571,293	48,363	1,580	139,667	11,890	447	35,469	5,594	1,056	25,780	6,447
2014	현금업종	189	75,226	15,597	136	9,633	1,040	37	1,844	313	87	2,087	541
	기타업종	1,272	584,631	45,678	1,879	147,704	14,148	712	40,593	7,078	1,618	33,980	7,690
	소계	1,461	659,857	61,275	2,015	157,337	15,188	749	42,437	7,391	1,705	36,067	8,231

주: 1) 현금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4) 간이과세자 감소와 부가가치세 탈루율 감소

-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신고인원 수를 살펴본 결과,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신고인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전체 신고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감소함
 - 2014년 기준 법인사업자는 1999년 23만명에서 181%가 증가한 65만명이고, 일반(개인)사업자는 1999년 106만명에서 211%가 증가한 330만명임
 - 반면 간이과세자는 1999년 171만명에서 2014년 167만명으로 2%가 감소함
 - 전체 신고인원에서 일반(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59%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57%에서 30%로 감소함

-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간이과세자 비중이 57%에서 49%로, 무려 8%p나 하락함

〈표 VI-6〉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신고인원

(단위: 명, %)

연도	전체 신고인원	법인사업자		일반(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인원(수)	비중 ¹⁾	인원(수)	비중 ¹⁾	인원(수)	비중 ¹⁾
1999	2,998,956	232,474	8	1,059,109	35	1,707,373	57
2000	3,390,772	278,657	8	1,442,987	43	1,669,128	49
2001	3,709,035	321,204	9	1,573,217	42	1,814,614	49
2002	3,963,454	345,292	9	1,774,268	45	1,843,894	47
2003	3,994,665	359,154	9	1,861,707	47	1,773,804	44
2004	3,942,247	372,041	9	1,924,877	49	1,645,329	42
2005	4,123,306	400,476	10	2,119,167	51	1,603,663	39
2006	4,260,946	420,154	10	2,216,802	52	1,623,990	38
2007	4,601,534	456,019	10	2,385,687	52	1,759,828	38
2008	4,901,772	489,997	10	2,573,515	53	1,838,260	38
2009	5,124,077	519,455	10	2,741,195	53	1,863,427	36
2010	5,239,103	536,232	10	2,874,770	55	1,828,101	35
2011	5,360,511	562,716	10	3,035,446	57	1,762,349	33
2012	5,385,132	591,701	11	3,112,775	58	1,680,656	31
2013	5,609,470	621,260	11	3,209,199	57	1,779,011	32
2014	5,623,792	654,013	12	3,297,704	59	1,672,075	30

주: 1) 전체 신고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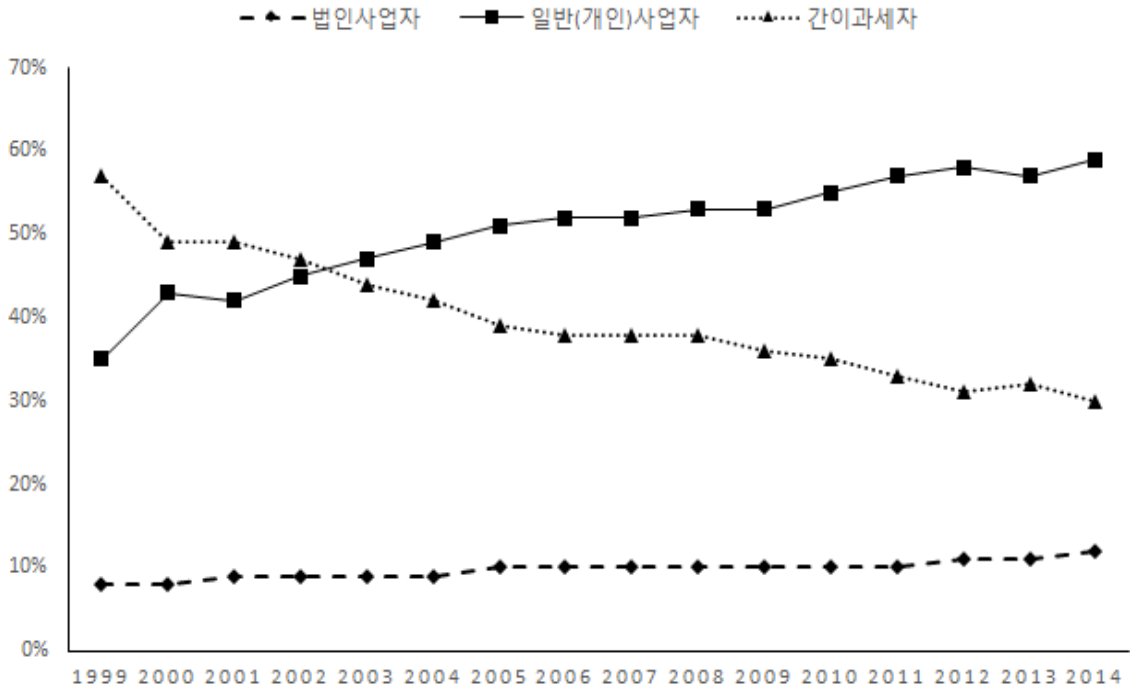
1. 2000년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에 과세특례사업자의 실적이 포함됨

2.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수는 제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11]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신고인원 비중

(단위: 명,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과세표준을 살펴본 결과,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신고자 수 감소로 소폭 감소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직후인 2000년에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18%와 21%가 증가함
 - 반면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오히려 전년 대비 4%가 줄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 신고인원이 1999년 171만명에서 2000년 167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VI-7> 부가가치세 연도별·사업자별 과세표준

(단위: 십억원, %)

연도	전체 과세표준		법인사업자		일반(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1999	1,171,785	11	959,888	9	182,161	18	29,736	14
2000	1,385,652	18	1,136,977	18	220,033	21	28,643	-4
2001	1,515,389	9	1,243,373	9	245,403	12	26,613	-7
2002	1,725,502	14	1,415,955	14	282,437	15	27,110	2
2003	1,882,725	9	1,556,524	10	300,868	7	25,333	-7
2004	2,128,086	13	1,781,275	14	322,827	7	23,983	-5
2005	2,227,658	5	1,857,582	4	345,937	7	24,140	1
2006	2,420,720	9	2,014,508	8	380,009	10	26,204	9
2007	2,679,866	11	2,231,780	11	418,522	10	29,564	13
2008	3,160,739	18	2,661,962	19	468,529	12	30,248	2
2009	3,198,265	1	2,692,814	1	475,989	2	29,463	-3
2010	3,687,028	15	3,117,937	16	540,071	13	29,020	-2
2011	4,122,743	12	3,498,087	12	595,816	10	28,840	-1
2012	4,271,929	4	3,645,990	4	597,997	0	27,941	-3
2013	4,326,000	1	3,691,913	1	607,117	2	26,970	-3
2014	4,357,485	1	3,711,734	1	615,102	1	30,649	1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현금수입업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해 간이과세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4년 기준 현금수입업종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46%로 기타업종(2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VI-8〉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자료

(단위: 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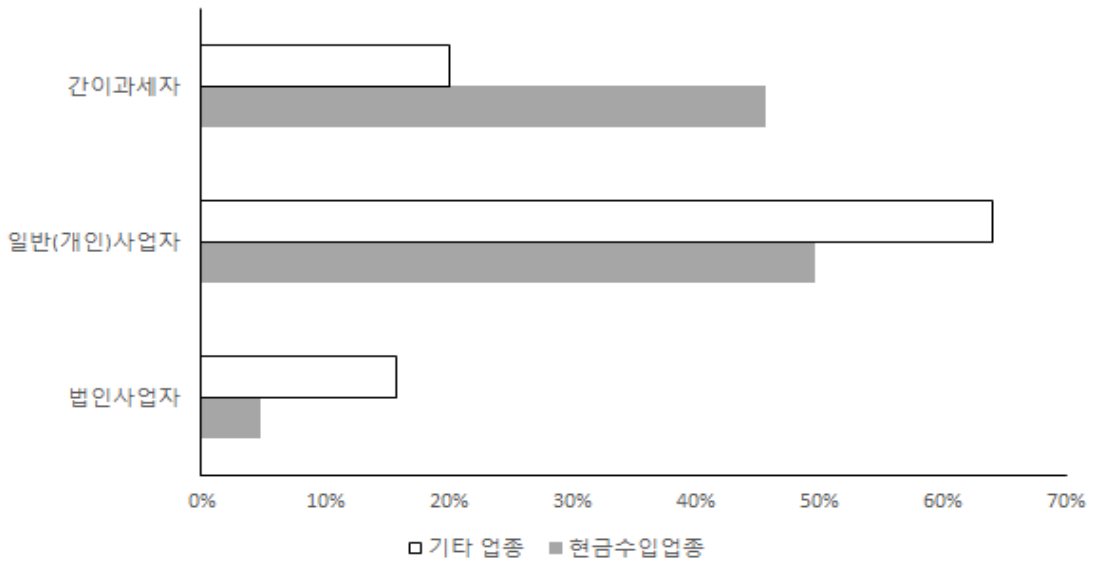
연도	업종 구분 ¹⁾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²⁾
2010	현금업종	73,911	1,790,345	41,202	910,025	1,648,577	26,565	1,039,492	215,661	1,429
	기타업종	462,321	29,389,029	-57,301	1,962,170	3,752,130	110,439	788,609	74,539	2,390
	소계	536,232	31,179,374	-16,099	2,872,195	5,400,707	137,004	1,828,101	290,200	3,819
2011	현금업종	79,532	1,996,561	45,222	974,239	1,849,237	29,404	1,001,898	214,638	1,378
	기타업종	483,184	32,984,312	-120,868	2,061,207	4,108,919	118,859	760,451	73,759	2,355
	소계	562,716	34,980,873	-75,646	3,035,446	5,958,156	148,263	1,762,349	288,397	3,733
2012	현금업종	85,680	2,154,140	45,952	1,011,383	1,957,531	32,061	936,047	204,783	1,260
	기타업종	506,021	34,305,763	-128,000	2,101,392	4,022,442	119,708	744,609	74,628	2,358
	소계	591,701	36,459,903	-82,048	3,112,775	5,979,973	151,769	1,680,656	279,411	3,618
2013	현금업종	92,996	2,301,197	49,805	1,045,923	2,049,173	36,032	1,019,303	194,711	900
	기타업종	528,264	34,617,936	-92,827	2,163,276	4,021,999	123,332	759,708	74,985	1,864
	소계	621,260	36,919,133	-43,022	3,209,199	6,071,172	159,364	1,779,011	269,696	2,764
2014	현금업종	99,935	2,438,493	52,091	1,049,992	2,114,676	41,258	965,671	233,229	882
	기타업종	554,078	34,678,847	-49,731	2,247,712	4,036,342	124,091	706,404	73,260	1,736
	소계	654,013	37,117,340	2,360	3,297,704	6,151,018	165,349	1,672,075	306,489	2,618

주: 1) 현금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납부의무면제자 제외 전 세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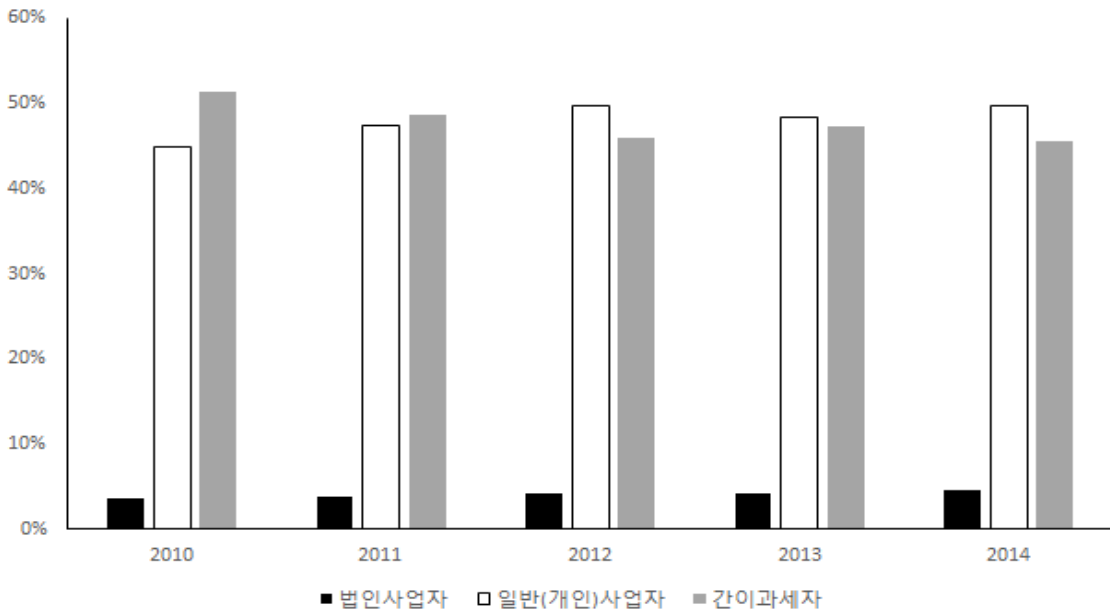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12] 업태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비중(2014년 기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13] 현금수입업종의 연도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비중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김재진·홍범교(2012)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VAT Gap 비율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직후인 2000년에 28.0%에서 2005년 17.6%로 약 10%가량 감소함
- 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로, VAT 탈루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이용됨
- 김재진·홍범교(201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VAT Gap은 2000년 약 9조원에서 2005년에는 7조 7천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8조 6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함
- 이러한 추정결과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현금수입업종의 세원 노출이 가속화돼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가 줄고, 이것이 세수증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표 VI-9〉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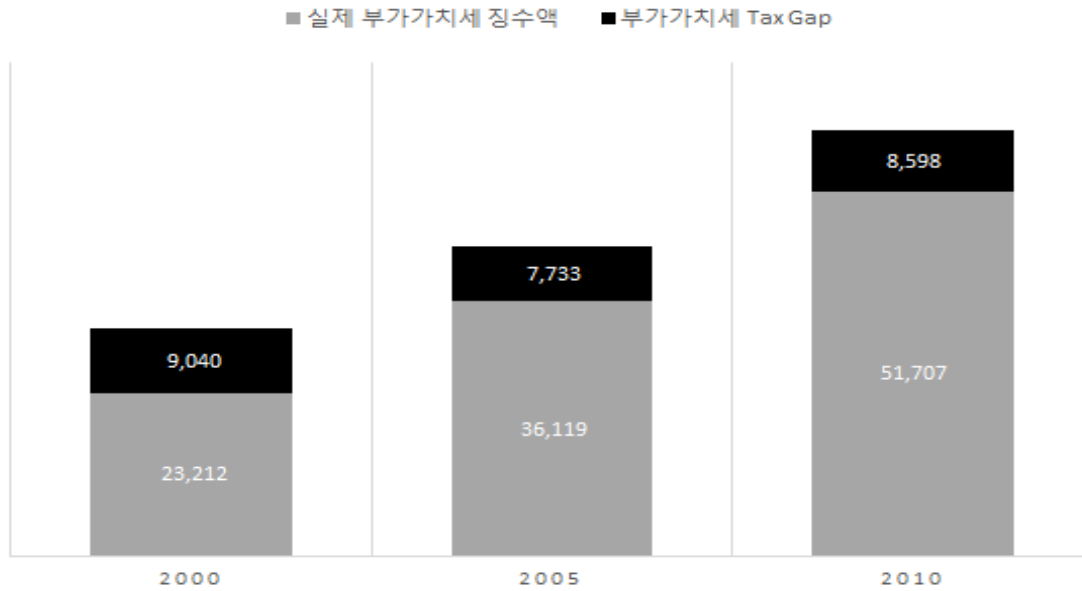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과세베이스 추정액	344,460,366	466,819,071	642,162,457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31,314,579	42,438,097	58,378,405
(±)추가조정	937,659	1,413,886	1,926,055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32,252,238	43,851,984	60,304,461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23,212,000	36,118,600	51,706,800
부가가치세 Tax Gap (B)	9,040,238	7,733,384	8,597,661
Tax Gap 비율(B/A)	28.0%	17.6%	14.3%

자료: 김재진·홍범교(2012) p. 202 재인용

[그림 VI-14] 부가가치세 Tax Gap 측정결과(생산자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자료: 김재진·홍범교(2012) p. 202 재인용

나. 신용카드 등 사용 활성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자에게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금영수증 수취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과세포착률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본 절에서는 사용자에게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가 실제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증가와 현금영수증 수취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는지 평가함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

-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199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1999년 3,900만매에서 3년 만에 1억매를 돌파하였으나, 2002년 이후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8,400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16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평가됨

<표 VI-10> 신용카드 발급실적

(단위: 만명, 만매, 매)

구 분	경제활동인구	전체 신용카드 발급장수 ¹⁾	개인 신용카드 발급장수 ¹⁾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²⁾
1999	2,167	3,899	** ³⁾	** ³⁾
2000	2,213	5,788	**	**
2001	2,247	8,933	**	**
2002	2,292	10,488	10,252	4.47
2003	2,296	9,392	9,157	3.99
2004	2,342	8,600	8,348	3.56
2005	2,374	8,647	8,371	3.53
2006	2,398	9,247	8,947	3.73
2007	2,422	8,877	8,540	3.53
2008	2,435	9,624	9,194	3.78
2009	2,439	10,699	10,225	4.19
2010	2,475	11,659	11,103	4.49
2011	2,510	12,214	11,595	4.62
2012	2,550	11,623	10,964	4.3
2013	2,587	10,202	9,515	3.68
2014	2,654	9,232	8,538	3.22
2015	2,691	9,310	8,494	3.16

주: 1) 개인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2002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1999년부터 2001년은 여신금융협회 자료이고, 2002년 이후는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임.

2) 개인 신용카드 발급장수=경제활동인구

3) **: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않음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2014년 9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 기준 유효 가맹점 수는 226만개에 달함

<표 VI-11> 신용카드 가맹점 수

(단위: 만개, %)

연도	유효가맹점 수 ¹⁾	전년 대비 증감률
2002	148	**2)
2003	155	4.73
2004	150	-3.23
2005	153	2.00
2006	161	5.23
2007	175	8.70
2008	185	5.71
2009	187	1.08
2010	208	11.23
2011	219	5.29
2012	221	0.91
2013	226	2.26
2014	234	3.54

주: 1) 연간 매출전표 매입건수가 1건 이상 발생한 가맹점 수

2) 유효가맹점 숫자는 2002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자료: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 63조원에서 2015년 612조원으로 약 9.6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75%와 1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카드대란 시기인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함
 - 분석대상기간(1998~2015년) 동안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연평균 9.5%씩 성장하였는데, 동 기간 중 경제활동인구 및 민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와 4.5%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임
 - 그러나 시장 포화와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로, 최근 들어 성장 폭이 5% 내외로 둔화됨

-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시불거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현금서비스는 카드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2002년에는 일시불거래가 16%, 할부거래가 14%, 현금서비스가 70%였으나, 2015년에는 일시불거래가 66%, 할부거래가 20%, 현금서비스가 13%로 일시불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현금서비스 리빙빙 신규 취급 금지 등 카드대출을 억제하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임

<표 VI-12>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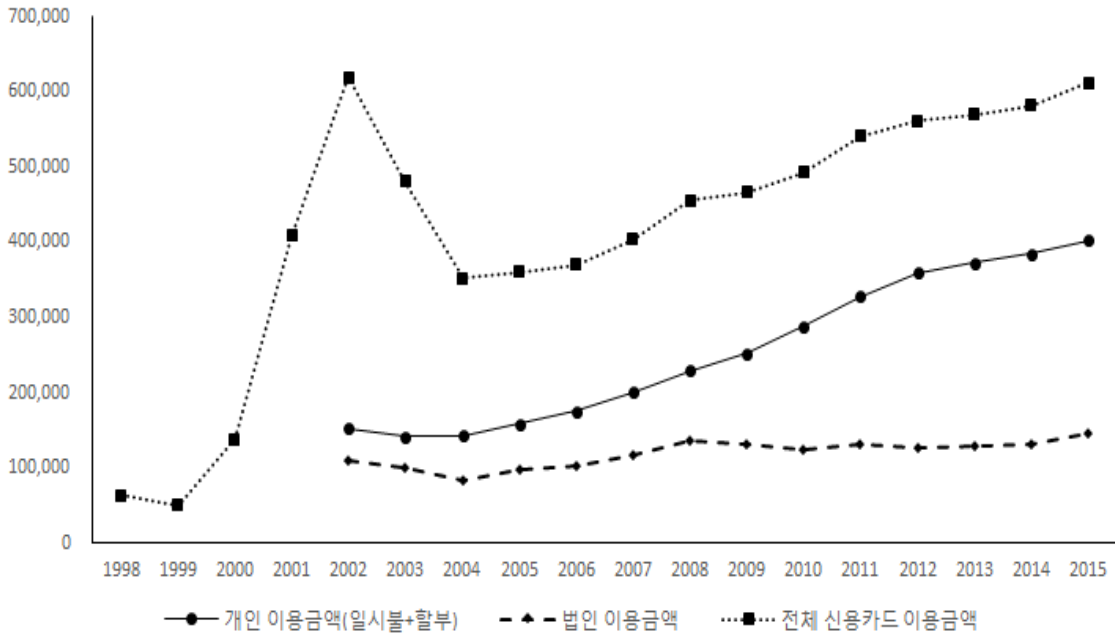
연도	개인 이용금액 ¹⁾				법인 이용금액	전체 이용금액 ²⁾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소계		
1998	** ¹⁾	**	**	**	**	63,556
1999	**	**	**	**	**	50,007
2000	**	**	**	**	**	137,749
2001	**	**	**	**	**	409,185
2002	79,051	72,835	357,465	509,351	109,807	619,158
2003	91,858	49,854	239,526	381,238	100,217	481,455
2004	102,032	40,558	126,574	269,164	83,342	352,506
2005	114,362	44,244	105,223	263,829	96,871	360,700
2006	124,848	50,988	91,949	267,785	103,173	370,958
2007	142,682	58,155	85,985	286,822	116,810	403,632
2008	164,199	65,888	88,982	319,069	137,352	456,421
2009	185,681	66,728	81,807	334,216	132,142	466,358
2010	211,346	76,715	81,642	369,703	124,033	493,736
2011	241,748	86,010	82,813	410,571	130,223	540,794
2012	268,360	91,310	75,913	435,583	126,274	561,857
2013	289,143	83,697	69,665	442,505	128,138	570,643
2014	297,790	87,407	65,273	450,470	131,495	581,965
2015	309,114	94,346	62,333	465,793	146,788	612,581

주: 1)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2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2) 1999년부터 2001년은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2002년 이후는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함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2014년 9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1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2014년 9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15년 52%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50% 내외의 안정적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이전에는 개인카드 이용실적이 민간소비지출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개인카드 이용실적이 민간소비지출에 근접한 양상을 보임

<표 VI-13>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단위: 십억원, %)

구 분	전체 이용금액 ¹⁾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이용금액(A) ²⁾	민간소비지출 (B) ³⁾	A/B
2002	509,351	151,886	423,157	36
2003	381,238	141,712	434,864	33
2004	269,164	142,590	449,981	32
2005	263,829	158,606	480,170	33
2006	267,785	175,836	509,907	34
2007	286,822	200,837	546,429	37
2008	319,069	230,087	579,053	40
2009	334,216	252,409	594,883	42
2010	369,703	288,061	636,713	45
2011	410,571	327,758	679,142	48
2012	435,583	359,670	707,614	51
2013	442,505	372,840	727,800	51
2014	450,470	385,197	748,201	51
2015	465,793	403,460	771,212	52

주: 1) 전체 이용금액 =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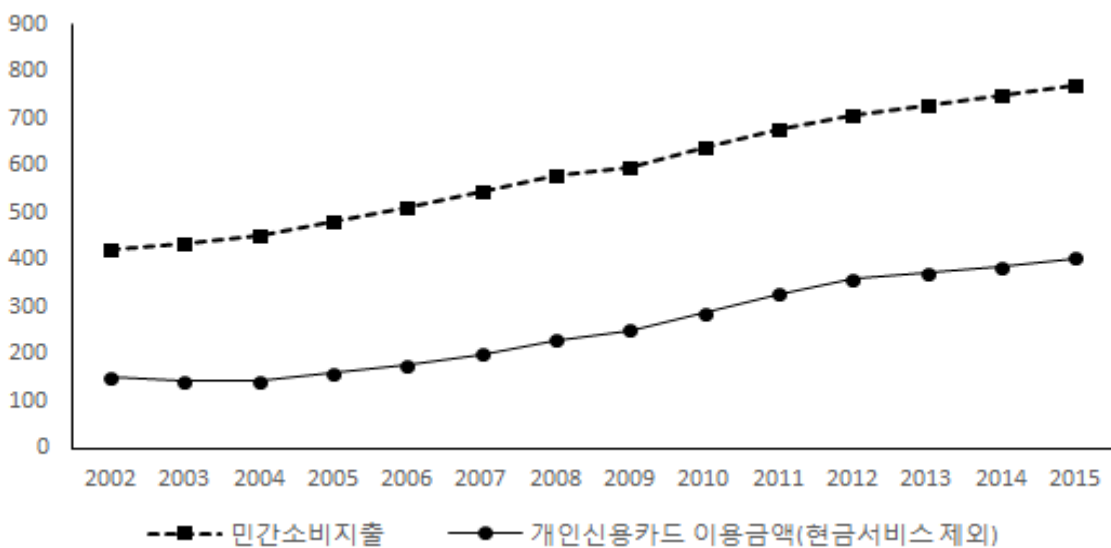
2) 이용금액(A)=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 이용금액

3) 민간소비지출은 국민계정 상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말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16] 민간소비지출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변화추이

(단위: 조원)



주: 개인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일시불거래와 할부거래 합산금액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17] 민간소비지출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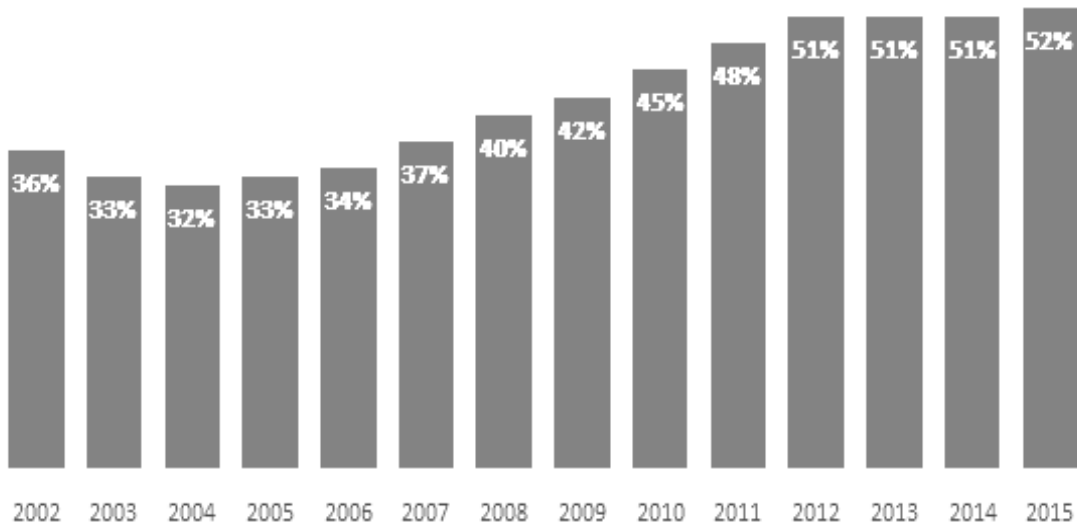
(단위: %)



주: 개인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일시불거래와 할부거래 합산금액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18]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

(단위: %)



주: 개인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일시불거래와 할부거래 합산금액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개인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002년 약 21억건에서 2015년 약 90억건으로 14년간 4.3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시불거래 건수 증가가 두드러짐
 - 일시불거래 건수는 2002년 14억건에서 2015년 86억 건으로 6.22배가 증가함
 - 반면 현금서비스 건수는 2015년 기준 약 1억건으로, 2002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표 VI-14>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건수

(단위: 백만건)

연도	개인 이용건수				법인 이용건수	전체 이용건수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소계		
2002	1,383	235	481	2,099	481	2,580
2003	1,570	177	314	2,062	314	2,376
2004	1,744	163	204	2,111	204	2,314
2005	2,104	209	175	2,488	175	2,662
2006	2,476	280	160	2,915	160	3,075
2007	2,759	306	155	3,220	155	3,376
2008	3,370	307	167	3,844	167	4,010
2009	4,079	282	146	4,507	146	4,652
2010	4,938	315	139	5,392	139	5,531
2011	5,621	344	138	6,103	138	6,241
2012	6,428	366	131	6,924	131	7,056
2013	7,093	321	119	7,534	119	7,653
2014	7,736	329	109	8,173	109	8,282
2015	8,599	340	99	9,038	99	9,13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일시불거래에서 개인의 신용카드 건당 이용금액은 2002년 57,167원에서 2015년 35,948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반대로 법인카드는 건당 이용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02년 22만 8천원에서 2015년에는 148만원으로 6.5배가량 증가함

<표 VI-15> 연도별 건당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원)

연도	개인의 건당 이용실적				법인의 건당 이용실적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평균 건당 이용실적	
2002	57,167	310,200	742,553	242,664	228,099
2003	58,493	281,502	762,094	184,905	318,858
2004	58,495	248,670	621,985	127,511	409,543
2005	54,355	211,998	601,962	106,062	554,182
2006	50,429	182,035	576,483	91,855	646,853
2007	51,719	189,801	554,027	89,064	752,642
2008	48,727	214,689	533,465	83,015	823,453
2009	45,518	236,960	561,476	74,161	906,946
2010	42,799	243,231	588,199	68,561	893,610
2011	43,008	249,739	600,094	67,269	943,645
2012	41,751	249,822	578,165	62,906	961,721
2013	40,765	260,495	583,459	58,737	1,073,183
2014	38,496	265,917	599,385	55,115	1,207,484
2015	35,948	277,815	629,626	51,539	1,482,70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가별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은 2014년 기준 46.3%로, 조사대상 국가 평균인 17.6%보다 월등히 높음
 - 반면 직불 기능을 가진 카드에 의한 지급비율은 23.3%로 조사대상 국가 평균인 35.9%에 못 미침

〈표 VI-16〉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용 국가 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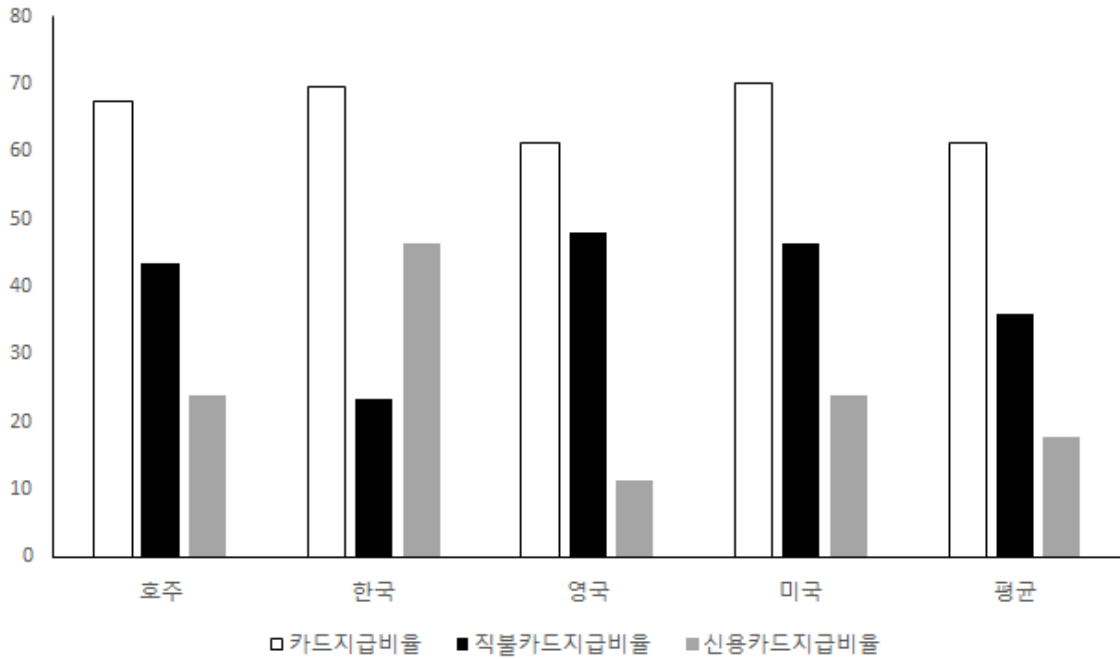
국가	카드지급금액(e머니 제외)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지급금액				신용카드지급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60.8	62.6	64.7	65.9	67.4	35.9	38.2	40.6	42.0	43.6	25.0	24.4	24.1	23.8	23.8
벨기에	44.7	46.1	48.9	49.3	43.9	39.6	40.8	43.3	43.3	39.3	n.a.	n.a.	n.a.	n.a.	0.1
브라질	32.8	34.3	36.9	38.5	38.7	15.2	16.2	17.5	18.8	19.6	17.5	18.1	19.4	19.7	19.1
캐나다	72.8	73.6	73.9	74.9	76.3	42.2	42.2	43.0	41.8	42.5	30.6	31.4	30.9	33.1	33.8
중국	71.7	76.1	80.4	83.7	86.3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프랑스	43.6	45.4	47.2	49.8	49.9	n.a.	n.a.	n.a.	n.a.	26.0	n.a.	n.a.	n.a.	n.a.	0.5
독일	15.5	16.6	17.5	18.5	18.5	12.7	13.5	14.2	14.7	14.3	0.2	0.2	0.2	0.3	0.5
인도	71.9	74.8	75.0	74.4	74.8	67.7	70.4	70.1	68.9	69.2	4.0	4.2	4.7	5.3	5.4
이탈리아	40.0	40.5	41.1	43.2	45.1	24.4	25.3	27.6	29.2	30.8	15.6	15.1	13.6	14.0	14.3
일본	60.7	61.3	60.7	n.a.	n.a.	0.2	0.1	0.1	n.a.	n.a.	60.5	61.2	60.6	n.a.	n.a.
한국	58.7	62	64.9	67.4	69.6	11.7	14.2	16.7	20.2	23.3	47	47.8	48.2	47.2	46.3
멕시코	43.5	47.1	51.3	54.5	57.0	25.8	28.3	31.3	34.6	37.4	17.7	18.8	20.0	19.9	19.5
네덜란드	42.4	43.6	45.7	45.4	49.1	40.5	41.6	43.8	43.5	47.1	n.a.	n.a.	n.a.	n.a.	n.a.
러시아	26.3	36.4	48.8	56.8	63.4	24.9	34.1	45.0	51.4	56.7	1.4	2.3	3.8	5.4	6.6
사우디아라비아	99.0	99.1	99.1	99.1	99.2	96.3	96.4	95.9	95.2	95.7	2.7	2.7	3.3	3.9	3.4
싱가포르	7.9	6.8	6.9	13.5	14.9	7.9	6.8	6.9	6.9	7.6	n.a.	n.a.	n.a.	6.7	7.4
남아프리카	46.5	47.5	49.3	52.5	56.4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스웨덴	65.1	63.9	65.4	66.5	67.2	52.3	52.5	54.1	55.1	55.6	11.3	10.0	10.1	10.2	10.4
스위스	40.5	42.2	39.8	41.0	43.3	27.9	28.6	26.6	27.0	28.3	12.5	13.6	13.2	14.1	15.0
터키	99.2	99.3	98.8	92.9	92.4	10.0	12.3	15.1	16.6	19.2	89.1	87.0	83.8	76.3	73.2
영국	53.2	55.6	57.0	58.9	61.2	39.9	42.8	44.1	45.8	48.1	11.2	10.8	10.9	11.1	11.3
미국	60.9	64.4	66.3	68.4	70.2	40.9	43.0	44.0	45.5	46.4	20.0	21.3	22.3	22.9	23.8
평균	53.3	56.0	58.1	59.2	61.4	29.9	31.4	32.2	33.8	35.9	18.0	18.7	19.3	17.6	17.6

주: 1. n.a.는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 - Figures for 2014

[그림 VI-19] 주요국의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 비교

(단위: %)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 - Figures for 2014

- 업종별 개인카드 승인실적을 살펴본 결과, 일반음식점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상거래,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의 순서로 나타남
 -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 걸쳐 카드 승인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편의점(41%)과 가구업체(34%), 유류판매업종(30%)에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높았음
 - 상위 10대 업종 중 주유소(-17%), 할인점(1%), 백화점(2%)의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상위 10대 업종 중 할인점과 백화점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만,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과는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표 VI-17>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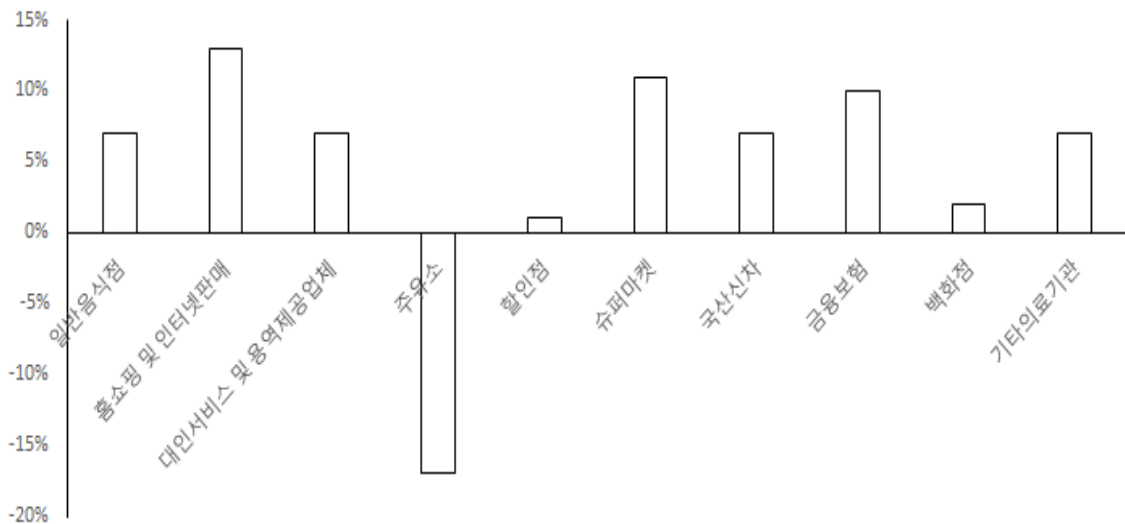
업종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일반음식점	37,889	4	39,932	5	42,664	7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34,037	5	36,701	8	41,332	13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28,777	7	27,429	-5	29,441	7
주유소	34,558	-4	32,149	-7	26,733	-17
할인점	25,986	-3	24,839	-4	25,123	1
기타	17,891	14	20,218	13	22,302	10
슈퍼마켓	14,336	9	15,239	6	16,976	11
국산신차	14,146	7	15,272	8	16,349	7
금융보험	12,512	1	13,051	4	14,315	10
백화점	13,638	-4	13,951	2	14,197	2
기타의료기관	10,818	-5	11,046	2	11,860	7
전자통신제품판매	10,347	19	10,351	0	11,066	7
일반병원	9,237	9	9,675	5	10,457	8
학원	9,212	-8	9,178	0	9,546	4
의류 및 직물업체	9,156	-1	8,899	-3	8,619	-3
레저시설 레저용품	7,912	3	7,756	-2	7,835	1
종합병원	7,235	0	7,245	0	7,284	1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6,243	1	6,311	1	6,846	8
농축수산물	5,501	8	6,017	9	6,604	10
유통업체	5,737	11	5,417	-6	5,626	4
대중교통	3,711	12	4,508	21	5,363	19
편의점	2,513	20	2,893	15	4,082	41
상품권	3,412	19	3,412	0	3,534	4
화장품	3,299	0	3,336	1	3,403	2
항공사	3,052	5	3,211	5	3,358	5
유흥 및 사치업	3,493	-5	3,250	-7	3,202	-1
숙박	2,612	-3	2,617	0	2,649	1
이·미용실	2,228	10	2,365	6	2,608	10
골프장	2,142	-1	2,082	-3	2,128	2
제과점	1,713	3	1,750	2	1,971	13
가구업체	1,087	8	1,304	20	1,744	34

업종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이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서점	1,878	-1	1,754	-7	1,686	-4
안경점	1,422	0	1,455	2	1,606	10
사무·문구업체	1,430	-4	1,487	4	1,595	7
면세점	1,464	-8	1,374	-6	1,553	13
여행사 및 렌터카	1,248	4	1,249	0	1,336	7
패션잡화	1,147	-3	1,115	-3	1,119	0
노래방	1,103	-1	1,080	-2	1,093	1
유류판매	942	8	823	-13	1,069	30
기타운송수단판매	857	8	925	8	1,037	12
교육기관	847	20	945	12	937	-1
건강식품	798	-6	789	-1	816	3
동물병원	511	10	588	15	681	16
귀금속	457	11	510	12	566	11
중고자동차	203	-5	205	1	196	-4
총계	358,737	3	365,710	2	384,506	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20] 상위 10대 업종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2015년 기준)

(단위: %)



2)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실적 증가

- 직불·체크·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정부는 그동안 직불카드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1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액은 1999년 980억원에서, 2010년에는 2010년 5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 135조원으로 1999년 대비 무려 1,377배가 증가함
 - 초기에는 직불카드 사용이 많았으나, 2004년 이후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하였으며, 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표 VI-18〉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건수

(단위: 천건, %)

연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1999	1,892	31	-	-	-	-
2000	1,786	-6	-	-	-	-
2001	1,623	-9	-	-	-	-
2002	1,171	-28	-	-	-	-
2003	905	-23	-	-	-	-
2004	1,106	22	77,632	-	6,056	-
2005	3,533	219	195,516	152	10,903	80
2006	2,465	-30	328,896	68	15,352	41
2007	1,834	-26	510,877	55	19,169	25
2008	1,335	-27	742,592	45	20,777	8
2009	1,027	-23	1,049,027	41	30,003	44
2010	950	-8	1,418,176	35	65,006	117
2011	792	-17	1,908,921	35	53,960	-17
2012	581	-27	2,544,710	33	44,766	-17
2013	408	-30	3,442,773	35	34,578	-23
2014	286	-30	4,400,236	28	30,490	-12
2015	194	-32	5,400,849	23	27,971	-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차별적 공제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체크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 2010년에 직불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였으나,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각각 42%와 83%가 증가함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격차가 커짐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액이 매년 두 자릿수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VI-19〉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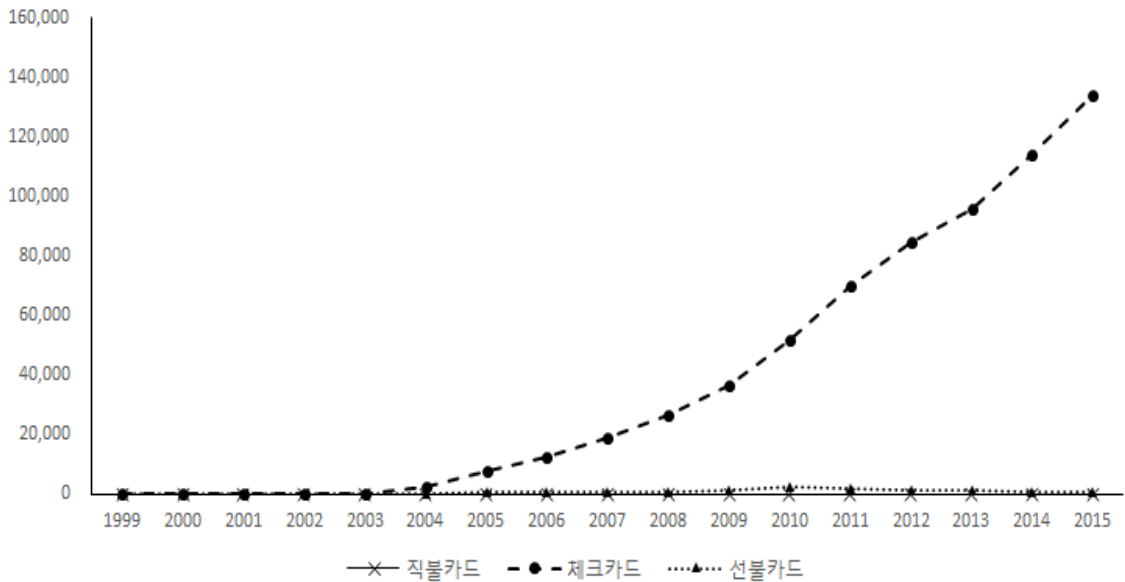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연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용금액	증감률	이용금액	증감률	이용금액	증감률
1999	98.1	54	0.0	-	0.0	-
2000	106.4	8	0.0	-	0.0	-
2001	97.6	-8	0.0	-	0.0	-
2002	75.4	-23	0.0	-	0.0	-
2003	62.1	-18	0.0	-	0.0	-
2004	70.3	13	2,636.9	-	260.5	-
2005	174.1	148	7,773.8	195	527.8	103
2006	113.1	-35	12,329.9	59	728.3	38
2007	79.2	-30	18,826.8	53	923.0	27
2008	57.4	-28	26,802.0	42	1,019.5	10
2009	44.8	-22	36,461.6	36	1,290.6	27
2010	39.3	-12	51,840.4	42	2,359.0	83
2011	33.7	-14	69,824.0	35	2,006.9	-15
2012	23.0	-32	84,792.8	21	1,589.6	-21
2013	15.9	-31	96,105.0	13	1,198.4	-25
2014	11.1	-30	113,804.9	18	987.9	-18
2015	7.6	-32	134,213.7	18	831.8	-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21] 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이용금액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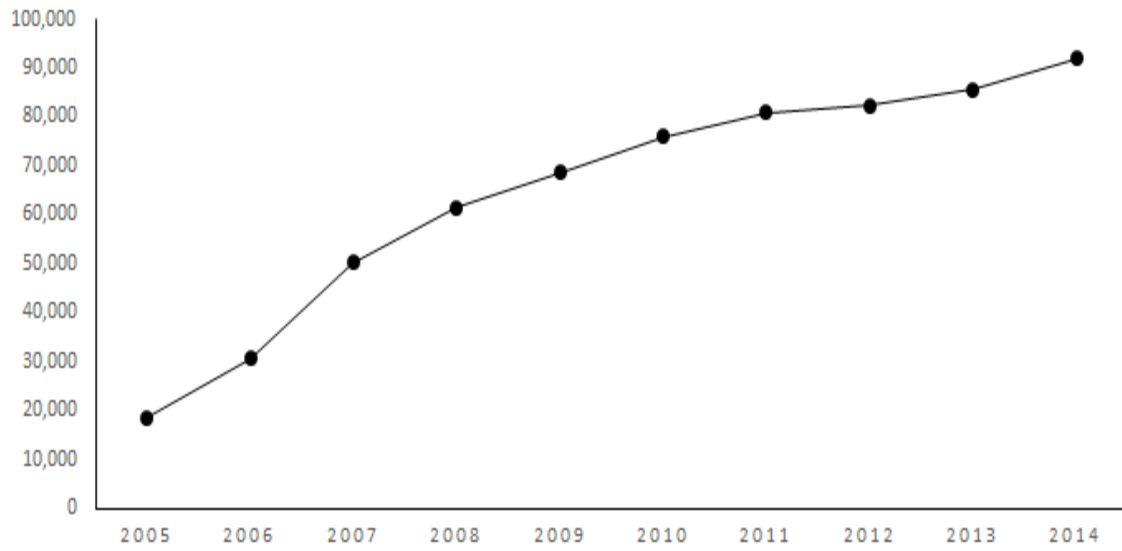


3)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증가

- 20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정체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소액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2005년 114만개에서 2014년에는 283만개로 2.47배가 증가함
 - 전체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를 나타내는 가입률 역시 1999년 76.4%에서 2014년 98.8%로 상승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약 100%의 가입률을 나타냄
- 현금영수증 발급액 역시 2005년 18조원에서 2014년에는 92조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함
 - 도입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에 6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됨

[그림 VI-22]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단위: 십억원)



〈표 VI-20〉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단위: 천개, %)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음식·숙박업	404 (82.4)	454 (93.2)	509 (99.7)	543 (99.4)						
서비스업	207 (72)	322 (81)	393 (98.2)	448 (96.3)	257 (95.9)	270 (97.4)	276 (97.3)	299 (97.3)	389 (97.1)	413 (98)
소매업	318 (73.1)	390 (80.4)	496 (98.5)	538 (97.7)	572 (97.9)	608 (98.5)	631 (98.5)	657 (98.7)	782 (98.7)	806 (98.9)
음식업					546 (99.5)	567 (99.7)	584 (99.6)	599 (99.6)	633 (99.5)	663 (99.8)
숙박업					25 (99.1)	26 (99.5)	27 (99.5)	29 (99.2)	38 (99.3)	41 (98.1)
병의원					58 (99.5)	59 (99.4)	61 (99.7)	62 (99.4)	65 (99.5)	67 (99.7)
학원					97 (99.4)	103 (99.5)	107 (99.6)	110 (99.6)	127 (99.7)	130 (98.6)
전문직					29 (93.2)	32 (94.5)	37 (96.3)	36 (96.7)	43 (97.4)	66 (99)
기타	216 (49.4)	235 (54)	327 (97.3)	389 (93.8)	535 (92.1)	625 (96)	675 (95.9)	673 (95.4)	626 (97.1)	642 (95.3)
소계	1,144 (76.4)	1,401 (84.2)	1,725 (98.7)	1,919 (97.8)	2,119 (98)	2,290 (98.7)	2,398 (98.7)	2,465 (98.5)	2,703 (98.6)	2,827 (98.8)

주: 1. 해당연도 12월 31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전체 사업자 수임(계속사업자 기준)

2. () 안은 가입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21〉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단위: 천건)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음식·숙박업	51,958	117,533	192,660	295,434						
서비스업	65,373	95,234	235,477	339,510						
소매업	217,740	361,489	754,625	1,691,183	2,721,183	2,996,318	3,296,880	3,370,678	3,318,184	3,262,998
음식업					420,125	439,501	439,724	415,701	395,050	397,562
숙박업					12,448	10,992	19,855	20,015	19,500	16,299
병의원					123,232	211,866	140,602	130,243	118,438	114,683
학원					7,338	8,429	6,831	6,461	6,284	7,778
전문직					4,104	4,347	4,502	4,762	4,324	5,459
기타	113,865	163,492	306,511	563,798	1,046,005	1,180,146	1,162,137	1,197,129	1,256,158	1,283,306
소계	448,936	737,748	1,489,273	2,889,925	4,441,966	4,951,522	5,187,350	5,257,101	5,227,216	5,192,92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22〉 연도별·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액수

(단위: 십억원)

업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음식·숙박업	1,561	3,663	5,290	6,644						
서비스업	3,261	5,436	9,904	13,630	2,878	3,861	4,968	5,073	5,450	6,178
소매업	8,168	13,608	20,150	25,345	28,376	30,082	32,360	32,457	32,220	32,896
음식업					7,365	7,528	7,598	7,537	7,264	7,557
숙박업					468	472	716	716	743	917
병의원					3,480	5,195	4,948	5,096	5,616	6,184
학원					1,679	1,674	1,759	1,923	2,002	2,157
전문직					2,029	2,153	2,510	2,598	2,629	2,716
기타	5,569	7,919	14,912	15,938	22,423	24,992	26,031	26,990	29,591	33,342
소계	18,560	30,627	50,256	61,556	68,698	75,957	80,890	82,389	85,515	9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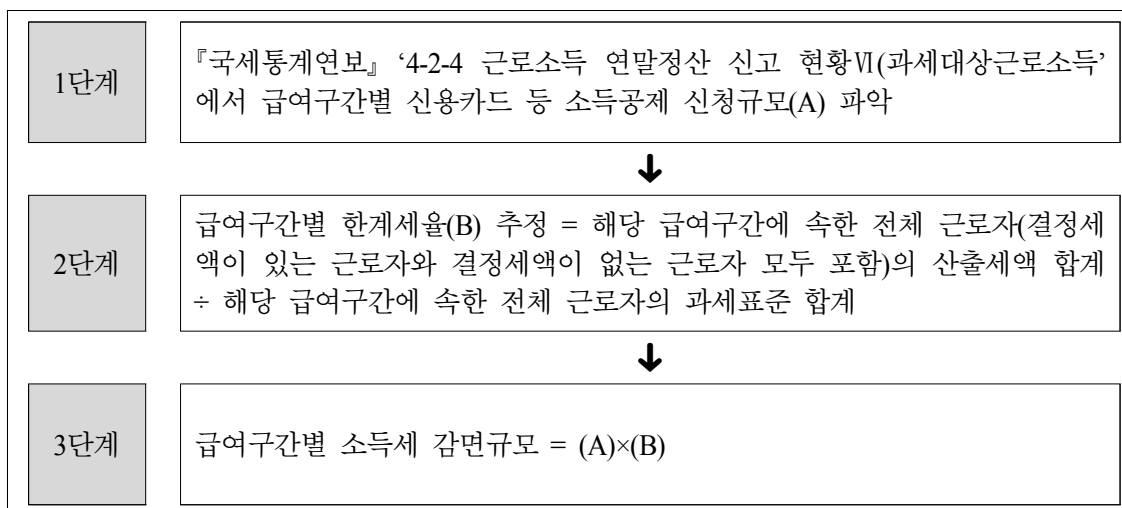
자료: 국제정,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2. 형평성 측면

가. 소득분위별 공제 혜택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세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공제문턱), 소득공제액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공제한도)
 - 그러나 저소득층은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카드 사용액이 적을 뿐 아니라 한계세율 또한 낮아 동 공제제도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층에 동 공제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본 절에서는 동 공제제도의 주된 수혜계층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자료에 기초해, 급여구간별 소득세 감면규모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계함

[그림 VI-23] 급여구간별 소득세 감면규모 추정



-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층별 공제 혜택을 추정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계층에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에 해당하는 1,887억원이 귀착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전체의 약 1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향유하는 실질적 조세감면 혜택은 전체 조세지출의 4.7%에 해당하는 8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1.5천만원 이하 구간의 과세미달자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6%에 불과하여 다른 소득구간과의 비교가 어려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 구간이 가장 크나, 실제 감면받은 세금 규모는 총급여 6천만~8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총급여 2천만~3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3조 6천억원으로 전체 신청금액의 18.9%에 해당하나, 실제 감면받은 세금은 전체 감면액의 12.3%에 불과한 2,300억원임
 - 반면에 총급여 6천만~8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2조 8천억원으로 전체 신청금액의 12.1%에 해당하나, 실제 감면받은 세금은 전체 감면액의 18.5%에 해당하는 3,500억원임
 - 총급여 6천만~8천만원 구간의 소득공제 신청금액이 총급여 2천만~3천만원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면액이 더 큰 이유는 이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한계세율(13%)이 총급여 2천만~3천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한계세율(6%)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임

〈표 VI-23〉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201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과세대상 총급여액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정액 ²⁾	
	인원수 ¹⁾	비중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소 계	16,629,769	100.0	8,252,634	100.0	19,194,109	100.0	1,894,847	100.0
1천만 이하	3,434,784	20.7	117,163	1.4	96,141	0.5	5,769	0.3
1.5천만 이하	2,054,004	12.4	389,424	4.7	563,860	2.9	33,832	1.8
2천만 이하	1,954,610	11.8	857,942	10.4	1,479,446	7.7	88,772	4.7
3천만 이하	2,798,469	16.8	1,758,728	21.3	3,636,878	18.9	232,213	12.3
4천만 이하	1,873,935	11.3	1,466,253	17.8	3,492,016	18.2	285,652	15.1
4.5천만 이하	717,321	4.3	601,203	7.3	1,527,630	8.0	147,017	7.8
5천만 이하	600,497	3.6	510,102	6.2	1,333,318	6.9	139,024	7.3
6천만 이하	971,995	5.8	826,712	10.0	2,226,870	11.6	252,471	13.3
8천만 이하	1,197,670	7.2	997,517	12.1	2,770,385	14.4	350,902	18.5
1억 이하	500,078	3.0	393,686	4.8	1,117,550	5.8	170,449	9.0
2억 이하	470,623	2.8	321,299	3.9	914,472	4.8	178,733	9.4
3억 이하	33,429	0.2	10,272	0.1	28,916	0.2	7,976	0.4
5억 이하	14,921	0.1	2,042	0.0	5,752	0.0	1,745	0.1
10억 이하	5,565	0.0	267	0.0	798	0.0	264	0.0
10억 초과	1,868	0.0	24	0.0	77	0.0	2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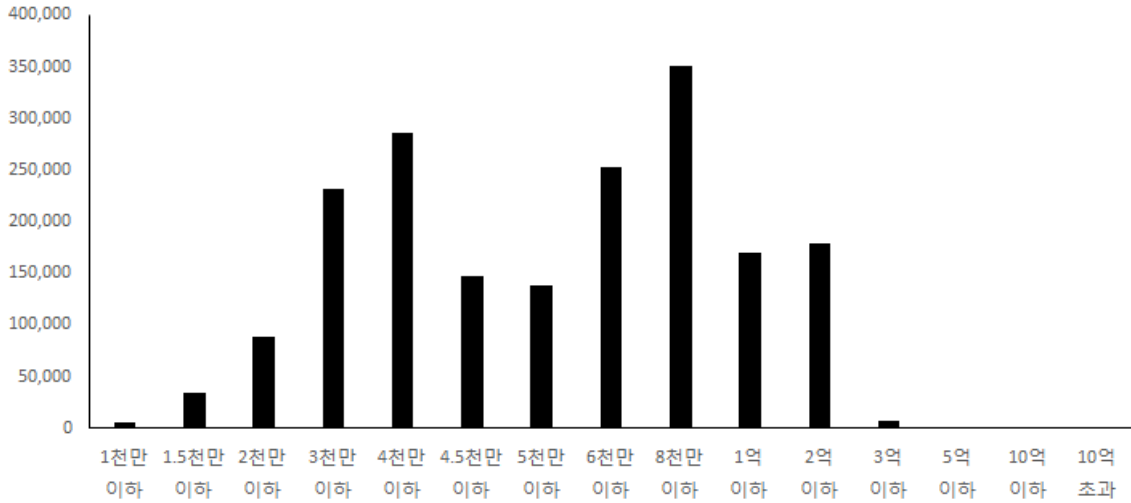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합산한 숫자임

2) 조세지출추정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한계세율(연말정산을 실시한 전체 근로자의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정)을 곱해 계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그림 VI-24] 급여구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 추정액(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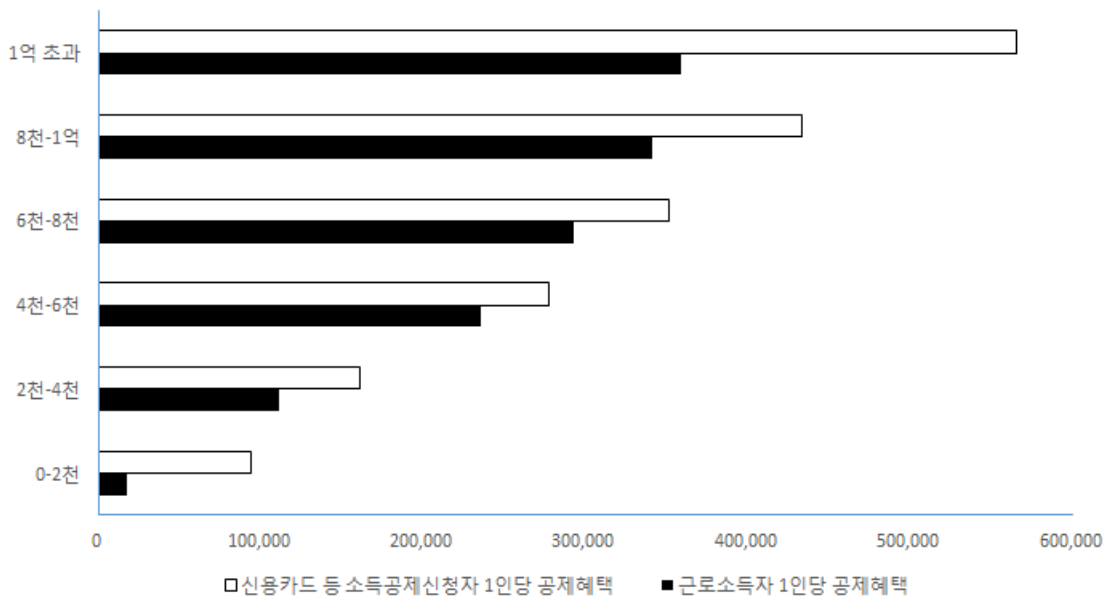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자 1인당 공제 혜택은 약 36만원인 데 반해 총급여 2천만~4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1인당 공제 혜택은 약 11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자 1인당 공제 혜택은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서 57만원, 총급여 2천만~4천만원 구간에서 16만원으로 약 3.5배 차이를 보임

[그림 VI-25] 1인당 공제 혜택 비교 (2014년 기준)

(단위: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이처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급여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과세비율이 낮고,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인 340만명의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는 52명에 불과하고,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역시 2만 8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임
 - 반면 총급여 6천만원~2억원 구간은 과세비율이 100%이고,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역시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규모가 클 수밖에 없음

〈표 VI-24〉 급여구간별 과세비율 및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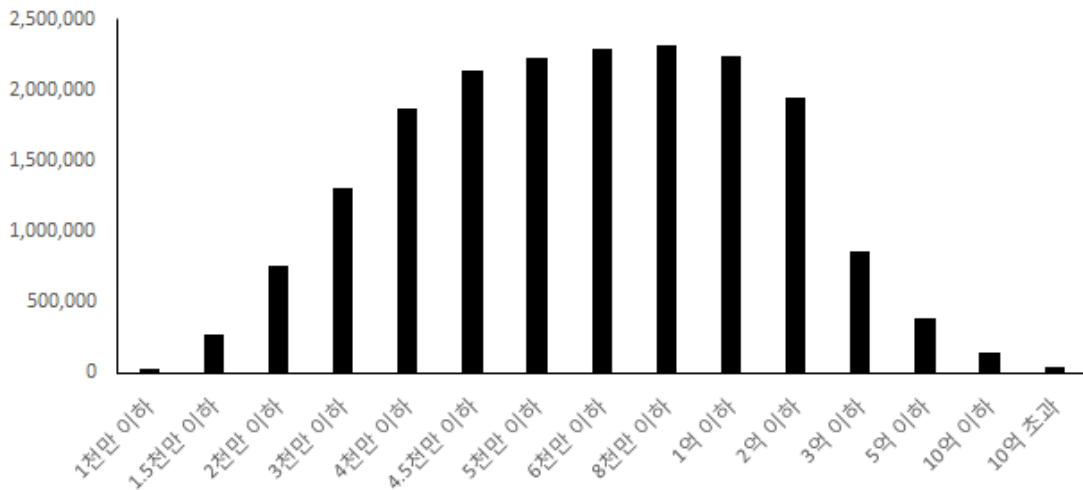
(단위: 명, %, 원)

과세대상 총급여액	총근로자 수(A) ¹⁾	결정세액이 있는 자(B)	과세비율 (C=B/A)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1천만 이하	3,434,784	52	0	27,990
1.5천만 이하	2,054,004	266,103	13	274,517
2천만 이하	1,954,610	1,161,038	59	756,901
3천만 이하	2,798,469	1,775,183	63	1,299,596
4천만 이하	1,873,935	1,258,446	67	1,863,467
4.5천만 이하	717,321	566,176	79	2,129,632
5천만 이하	600,497	516,498	86	2,220,357
6천만 이하	971,995	912,296	94	2,291,030
8천만 이하	1,197,670	1,183,494	99	2,313,146
1억 이하	500,078	498,992	100	2,234,751
2억 이하	470,623	469,182	100	1,943,109
3억 이하	33,429	33,429	100	864,997
5억 이하	14,921	14,921	100	385,497
10억 이하	5,565	5,565	100	143,396
10억 초과	1,868	1,868	100	41,221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합산한 숫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그림 VI-26] 급여구간별 1인당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2014년 기준)

(단위: 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나. 공제문턱, 공제율, 공제한도 조정 시 공제 혜택

- 본절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4년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표본 자료를 기초로 공제문턱,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조정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함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전체 근로자(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통산)의 연말정산 자료 중 5%를 무작위 추출한 것이므로 표본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표본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해당 급여구간에 속한 표본의 개수로 나눈 후, 그 급여구간에 속한 전체 근로자 숫자를 곱해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을 추정함
- 공제문턱, 공제율, 공제한도 등을 조정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행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조세지출규모의 변화를 추정함
 - 따라서 공제문턱이나 공제율, 공제한도의 변화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추정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작위 추출 표본과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무작위 추출 표본과 모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총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는 343만명으로, 연말정산 대상 전체 근로자 1,663만명 중 21%를 구성함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작위 추출표본의 개수는 전체 근로자 1,663만명의 5%에 해당하는 83만개임
- 83만개의 표본 중 총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는 18만개로, 전체 표본 83만개 중 약 22%를 차지해 모집단과 유사한 구성비를 나타냄

<표 VI-25>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비교 (2014년 기준)

(단위: 명, %)

총급여액	모집단 ¹⁾		표본 ²⁾		배수 (A/B)	한계세율 ³⁾
	근로자 수(A)	비중	근로자 수(B)	비중		
1천만 이하	3,434,784	21	183,366	22	18.7	6
1.5천만 이하	2,054,004	12	100,781	12	20.4	6
2천만 이하	1,954,610	12	91,361	11	21.4	6
3천만 이하	2,798,469	17	138,023	17	20.3	6
4천만 이하	1,873,935	11	94,486	11	19.8	8
4.5천만 이하	717,321	4	36,167	4	19.8	10
5천만 이하	600,497	4	30,379	4	19.8	11
6천만 이하	971,995	6	48,952	6	19.9	11
8천만 이하	1,197,670	7	59,558	7	20.1	13
1억 이하	500,078	3	25,011	3	20.0	15
2억 이하	470,623	3	23,461	3	20.1	20
3억 이하	33,429	0	1,680	0	19.9	28
5억 이하	14,921	0	756	0	19.7	30
10억 이하	5,565	0	291	0	19.1	33
10억 초과	1,868	0	82	0	22.8	36
합계	16,629,769	100	834,354			

주: 1) 『국세통계연보』상 2014년도 연말정산 대상 전체 근로자 수

2)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총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의 연말정산 자료

3) 『국세통계연보』상 201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급여수준별 한계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1) 공제문턱 조정 시 효과 추정

- 공제문턱을 총급여의 3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12%가 줄어들고, 총급여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면 23%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공제문턱을 총급여의 25% 수준으로 높이면 총급여 1,500만~6천만원 구간의 공제 혜택은 7~10%가량 감소하나,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 공제 혜택은 20~42%가량 감소함
- 현재의 문턱기준(총급여의 20%)하에서는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이 10% 수준이나, 공제문턱을 총급여의 25%와 30% 수준으로 높이면 각각 9%와 4% 수준으로 낮아짐
- 공제문턱 인상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집단은 총급여 3억원~10억원 구간임

<표 VI-26> 공제문턱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총급여의 30% 적용			총급여의 35%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1천만 이하	269,395	16,169	-4	258,459	15,513	-8
1.5천만 이하	688,496	41,314	-7	640,032	38,406	-13
2천만 이하	1,486,125	89,174	-9	1,353,147	81,195	-17
3천만 이하	3,330,545	215,132	-9	2,995,061	193,461	-18
4천만 이하	3,134,630	263,447	-10	2,798,104	235,164	-19
4.5천만 이하	1,369,867	134,042	-10	1,217,190	119,103	-20
5천만 이하	1,197,278	126,079	-10	1,060,609	111,687	-20
6천만 이하	1,983,138	225,655	-10	1,737,578	197,713	-22
8천만 이하	2,408,380	305,230	-12	2,049,015	259,685	-25
1억 이하	953,933	145,494	-15	780,508	119,043	-30
2억 이하	731,949	143,111	-20	553,495	108,220	-39
3억 이하	19,737	5,444	-33	12,920	3,564	-56
5억 이하	3,164	960	-42	2,150	652	-61
10억 이하	481	159	-31	263	87	-62
10억 초과	69	25	-0	52	19	-24
합계	17,577,187	1,711,435	-12	15,458,583	1,483,5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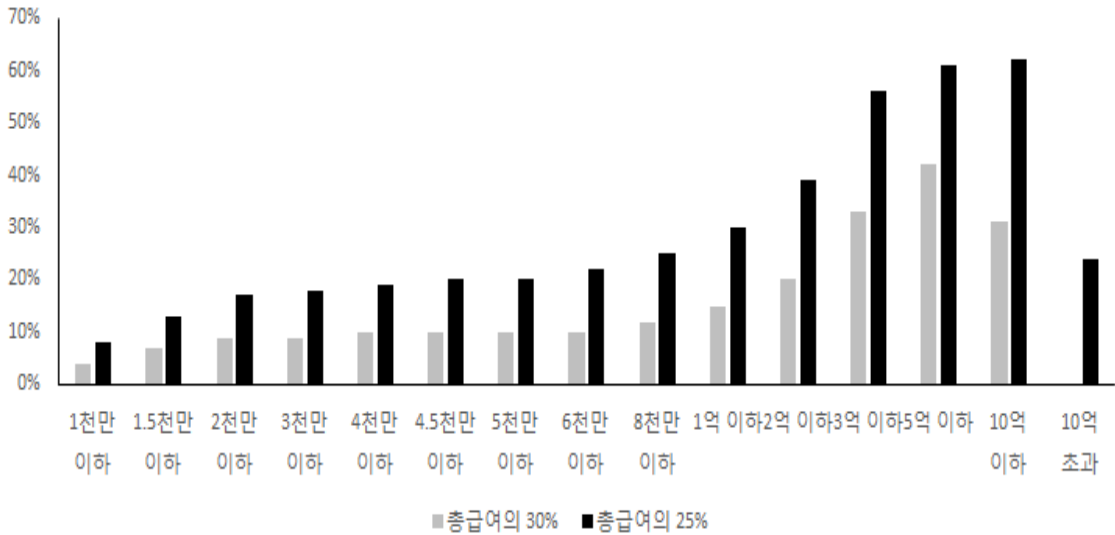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

2) (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27] 공제문턱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¹⁾

(단위: %)



주: 1) 감소율={ (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 }×(-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2) 공제한도 조정 시 효과 추정

-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낮출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10%가 감소하고, 200만원으로 낮추면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낮추면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모든 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8~12%가량 감소함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낮추면 10%로 현재와 변화가 없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면 현재보다 5%p 줄어든 5% 수준으로 떨어짐

<표 VI-27> 공제한도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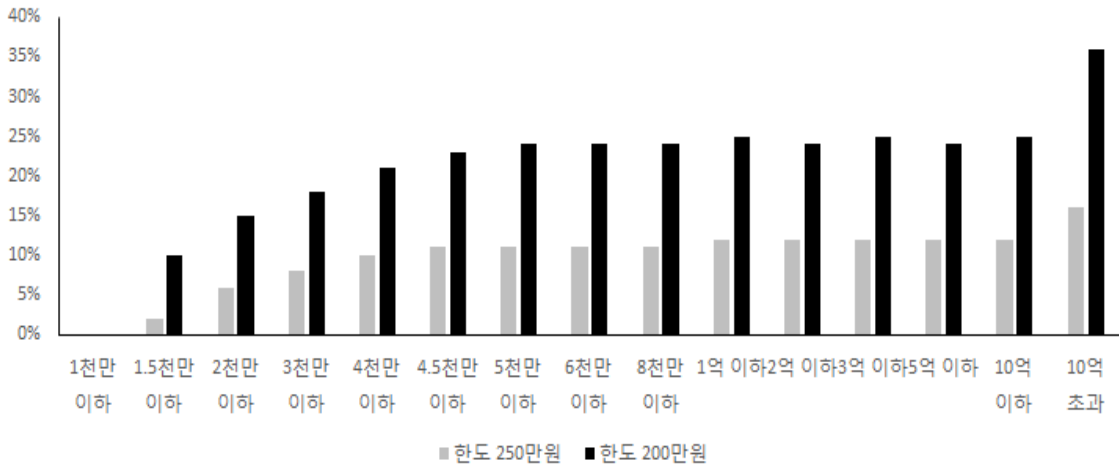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50만원 이하(한도 250만원)			100만원 이하(한도 2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1천만 이하	280,473	16,834	-0	280,473	16,834	-0
1.5천만 이하	721,517	43,295	-2	667,370	40,046	-10
2천만 이하	1,522,661	91,366	-6	1,382,635	82,964	-15
3천만 이하	3,386,237	218,729	-8	3,011,726	194,538	-18
4천만 이하	3,133,984	263,392	-10	2,727,880	229,262	-21
4.5천만 이하	1,356,453	132,730	-11	1,167,269	114,218	-23
5천만 이하	1,181,239	124,390	-11	1,012,596	106,631	-24
6천만 이하	1,964,884	223,578	-11	1,680,062	191,169	-24
8천만 이하	2,428,103	307,729	-11	2,075,017	262,980	-24
1억 이하	986,893	150,521	-12	842,551	128,506	-25
2억 이하	807,626	157,908	-12	691,119	135,128	-24
3억 이하	25,897	7,144	-12	22,158	6,112	-25
5억 이하	4,810	1,459	-12	4,133	1,254	-24
10억 이하	606	201	-12	517	171	-25
10억 초과	58	21	-16	46	16	-36
합계	17,801,441	1,739,297	-10	15,565,552	1,509,829	-22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
 2) (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28] 공제한도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¹⁾

(단위: %)



주: 1) 감소율={(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3) 소득공제율 조정 시 효과 추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재보다 5%p와 10%p 인하할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11%와 2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공제율을 현재보다 10%p 낮출 경우(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5%,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20%의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도출됨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은 소득공제율을 현재보다 5%p 낮추면 10%로 현재와 변화가 없고, 공제율을 10%p 낮추면 11%로 오히려 개정 전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
- 소득공제율을 낮추었을 때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집단은 총급여 1천만~2천만원 구간임

<표 VI-28> 공제율 조정 시 공제 혜택 추정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신용카드공제율: 10% 직불카드 등 ³⁾ 공제율: 25%			신용카드 공제율: 5% 직불카드 등 ³⁾ 공제율: 2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1천만 이하	249,010	14,946	-11	202,795	12,172	-28
1.5천만 이하	618,177	37,094	-16	462,769	27,769	-37
2천만 이하	1,350,027	81,008	-17	1,008,391	60,508	-38
3천만 이하	3,135,528	202,535	-15	2,421,667	156,424	-34
4천만 이하	3,047,432	256,118	-12	2,432,467	204,434	-30
4.5천만 이하	1,356,424	132,727	-11	1,105,918	108,215	-27
5천만 이하	1,196,673	126,015	-10	984,589	103,682	-26
6천만 이하	2,008,648	228,558	-9	1,669,016	189,912	-25
8천만 이하	2,506,954	317,723	-9	2,112,455	267,725	-23
1억 이하	1,028,073	156,802	-8	875,626	133,551	-22
2억 이하	843,302	164,883	-8	722,921	141,346	-21
3억 이하	27,262	7,520	-7	23,729	6,545	-19
5억 이하	5,083	1,542	-7	4,447	1,349	-18
10억 이하	658	218	-5	609	202	-12
10억 초과	69	25	-0	69	25	-0
합계	17,373,320	1,727,714	-11	14,027,468	1,413,859	-27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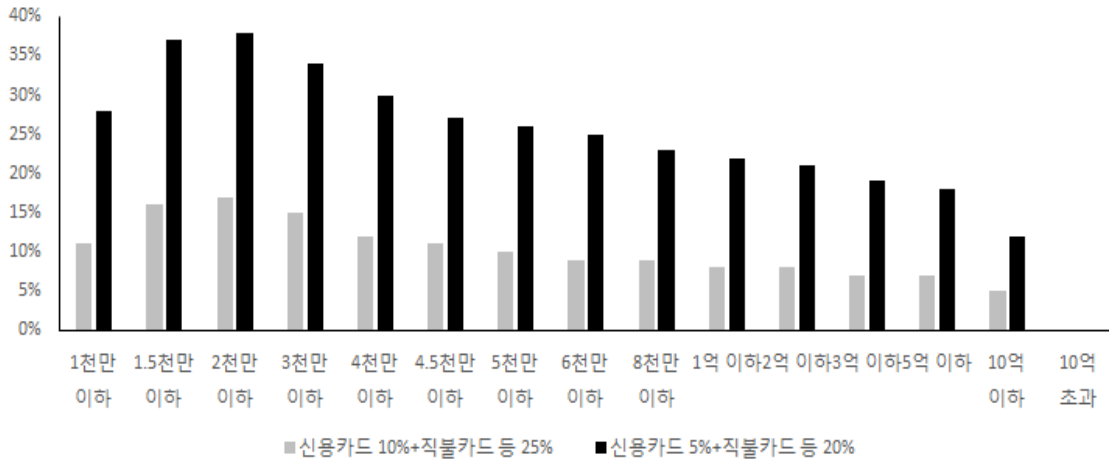
2) (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

3)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29] 소득공제율 조정 시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¹⁾

(단위: %)



주: 1) 감소율=((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다. 세액공제로 변동 시의 공제 혜택

- 고소득층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이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편안을 가정함
 - 신용카드에 직불카드 등보다 낮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공제한도는 50만원이고, 공제문턱은 총급여의 25%인 경우와 총급여의 30%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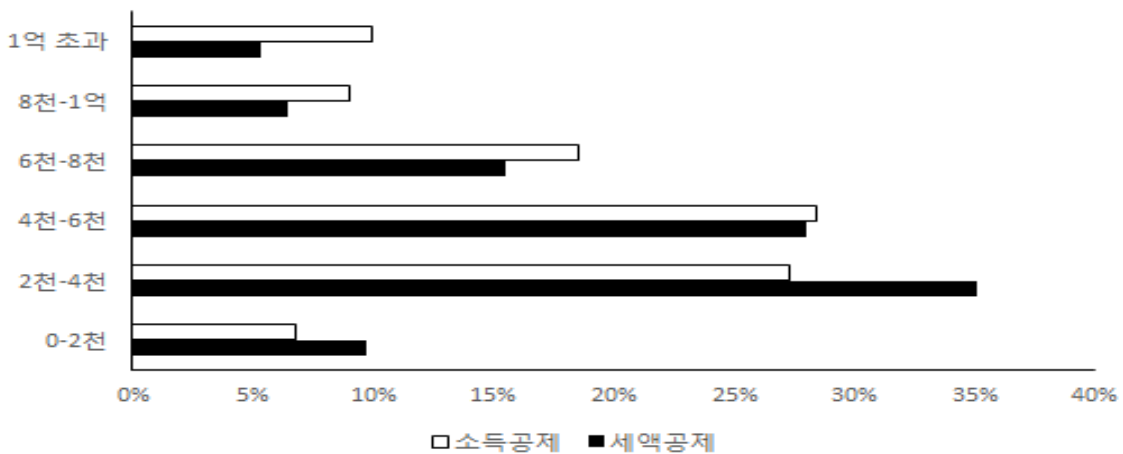
- 방안 1~4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11%, 53%, 22%, 5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VI-29> 세액공제로의 전환 방안

구분	세액공제 계산산식
공통가정	공제문턱: 총급여액× γ % 공제한도: 50만원 세액공제금액=Min(① 또는 ②, 50만원) ① 총급여액× γ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사용분)× α +(신용카드 사용분-총급여액× γ %)× β ② 총급여액× γ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총급여액× γ %)× α
방안 1	$\alpha=2\%$, $\beta=1\%$, $\gamma=25\%$
방안 2	$\alpha=1\%$, $\beta=0.05\%$, $\gamma=25\%$
방안 3	$\alpha=2\%$, $\beta=1\%$, $\gamma=30\%$
방안 4	$\alpha=1\%$, $\beta=0.05\%$, $\gamma=30\%$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10%에서 절반 수준인 5~6%로 감소함
 - 하위 20% 급여구간은 과세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한 혜택이 크지 않음
 - [방안 1]에 따른 세액공제방식 도입을 전제할 경우 총급여 1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 방식이, 총급여 5천만원~2억원 이하 구간은 소득공제 방식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30] 세액공제(방안 1)방식으로 전환 시 급여구간별 상대적 공제 혜택 비교 (단위: %)



〈표 VI-30〉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시 공제 혜택 추정

(단위: 명, %, 백만원)

총급여액	전체 근로자		[방안 1] 공제 문턱=25%, 신용카드=1%, 직불카드 등=2%		[방안 2] 공제 문턱=25%, 신용카드=0.5%, 직불카드 등=1%		[방안 3] 공제 문턱=30%, 신용카드=1%, 직불카드 등=2%		[방안 4] 공제 문턱=30%, 신용카드=0.5%, 직불카드 등=1%	
	인원 수	비중	공제 혜택	비중	공제 혜택	비중	공제 혜택	비중	공제 혜택	비중
1천만 이하	3,434,784	21	6,059	0	3,057	0	5,604	0	2,829	0
1.5천만 이하	2,054,004	12	45,633	3	23,144	3	42,074	3	21,351	3
2천만 이하	1,954,610	12	115,116	7	58,655	6	104,751	7	53,416	7
3천만 이하	2,798,469	17	296,644	17	152,611	17	267,682	18	137,781	17
4천만 이하	1,873,935	11	304,775	18	159,084	17	272,387	18	142,131	18
4.5천만 이하	717,321	4	139,856	8	73,676	8	124,122	8	65,305	8
5천만 이하	600,497	4	125,399	7	66,607	7	110,698	7	58,690	7
6천만 이하	971,995	6	213,867	12	114,336	12	186,736	12	99,553	12
8천만 이하	1,197,670	7	270,520	16	146,222	16	230,114	15	123,796	16
1억 이하	500,078	3	113,482	7	62,715	7	93,326	6	51,221	6
2억 이하	470,623	3	94,111	5	53,089	6	72,367	5	40,496	5
3억 이하	33,429	0	3,249	0	2,043	0	2,148	0	1,379	0
5억 이하	14,921	0	621	0	437	0	388	0	280	0
10억 이하	5,565	0	95	0	83	0	73	0	56	0
10억 초과	1,868	0	11	0	11	0	11	0	9	0
합계	16,629,769	100	1,729,438	100	915,770	100	1,512,481	100	798,293	100

주: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3.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측면

가. 전통시장 이용률 추이

-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 및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30% 중 적은 금액(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함
-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 수는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됨
 - 2012년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2%가 감소했으며, 2013년 역시 2010년 대비 33%가 감소함
 - 점포당 일평균 고객 수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2010년 대비 각각 9.5%와 6.5%가 감소함

〈표 VI-31〉 전통시장 경영현황

(단위: 만원, 명)

항목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787.3	5,358.0	4,980.3	4,502.4	4,271.3	4,471.8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8.3	46.4	43.1	33.5	27.4	27.5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30.9	28.1	25.4	19.3	18.3	18.7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2,587.2	2,485.7	2,684.1	2,824.4	3,388.8	3,337.6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	21.6	21.5	23.2	21.0	21.7	23.2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수	13.8	13.0	13.7	12.1	14.5	13.9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013, 2014.

- 2014년 기준 전통시장 매출 추정액은 2011년 22.1조원에서 5.4%가 감소한 20.9조 원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주어지기 시작한 2012년과 2013년에 연속해 매출액이 각각 4.5%와 1.9%가 감소함
- 반면 동 기간 동안 대형마트 매출액은 각각 5.0%와 2.0%가 성장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표 VI-32> 전통시장 매출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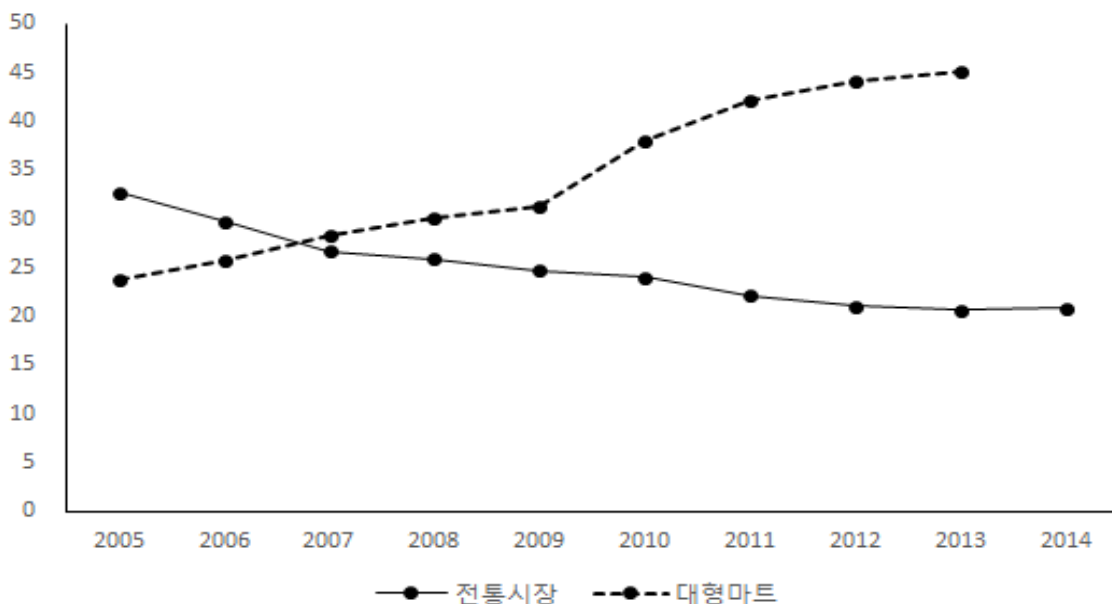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연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매출	전년대비 증감률
2005	32.7		23.7	
2006	29.8	-8.9	25.7	8.4
2007	26.7	-10.4	28.4	10.5
2008	25.9	-3.0	30.1	6.0
2009	24.7	-4.6	31.2	3.7
2010	24.0	-2.8	38.0	21.8
2011	22.1	-7.9	42.1	10.8
2012	21.1	-4.5	44.2	5.0
2013	20.7	-1.9	45.1	2.0
2014	20.9	1.0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013, 2014.

[그림 VI-3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 추이

(단위: 조원)



-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을 살펴본 결과, 현금거래가 68.1%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는 34.1%에 불과함
 - 신용카드의 매출비중은 2010년 18.8%에서 2012년 24.7%, 2013년 34.1%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30.4%로 감소함
 - 2014년 기준 신용카드 취급비율은 60.8%로 2010년 대비 10.6%p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율이 둔화됨

〈표 VI-33〉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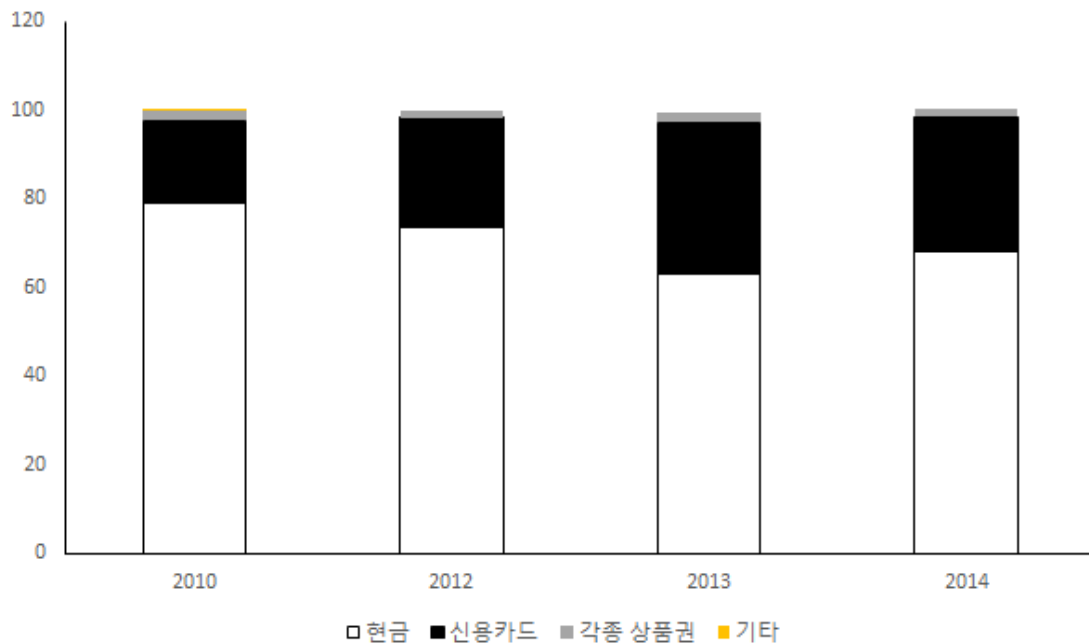
(단위: %)

항목	2010	2012	2013	2014
현금	78.9	73.6	63.1	68.1
신용카드	18.8	24.7	34.1	30.4
각종 상품권	2.2	1.7	2.2	1.6
기타	0.1	0	0	0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013, 2014.

[그림 VI-32] 전통시장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

(단위: %)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013, 2014.

〈표 VI-34〉 신용카드 취급비율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3	2014
신용카드 취급비율	46.4	50.2	57.3	60.4	60.8
현금영수증 발급비율	**1)	**1)	51.9	65.3	53.2

주: 1)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에 관한 통계는 201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함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2010, 2012, 2013, 2014.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나 고객 수에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동 조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함
 - 그러나 동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취급비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급여구간별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가 두드러짐
 -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급여구간이 2013년에는 총급여 2천만~3천만원 사이였으나, 2015년에는 총급여 5천만~6천만원 구간으로 옮겨감

〈표 VI-35〉 급여구간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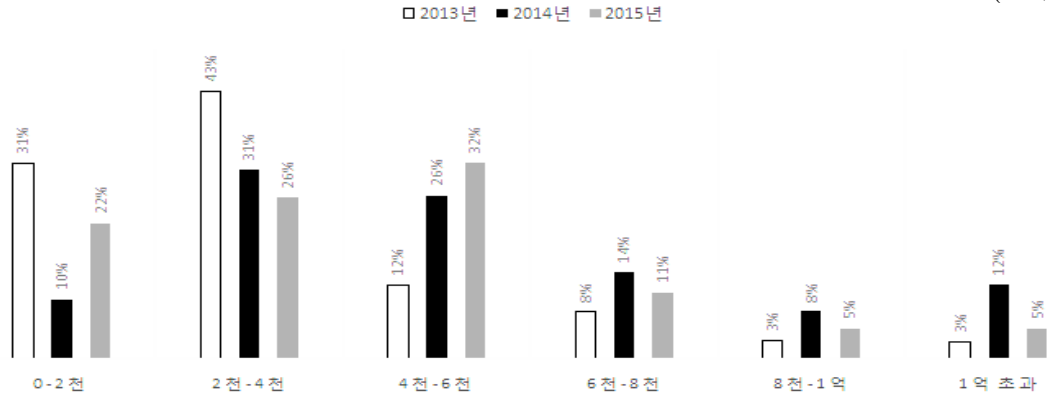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총급여액 구간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천만원 이하	164	2	52	1	49	1
1.5천만원 이하	177	2	104	3	87	2
2천만원 이하	2,440	28	225	6	983	19
3천만원 이하	3,099	35	671	17	801	16
4천만원 이하	726	8	544	14	529	10
4.5천만원 이하	296	3	253	6	238	5
5천만원 이하	304	3	253	6	218	4
6천만원 이하	455	5	542	14	1161	23
8천만원 이하	680	8	558	14	549	11
1억원 이하	256	3	306	8	253	5
2억원 이하	225	3	230	6	228	4
3억원 이하	11	0	236	6	16	0
5억원 이하	4	0	5	0	5	0
10억원 이하	1	0	2	0	2	0
10억원 초과	-	0	1	0	0	0
합계	8,838	100	3,982	100	5,119	1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33] 급여구간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비중

(단위: %)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나. 대중교통 이용률 추이

-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2012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4년의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13년 일주일간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평균 8.5회로, 2012년 9.44회에 비해 10% 가량 감소함
 - 교통카드 이용비율 역시 2013년에 2012년(92.1%)보다 낮은 85.1%를 기록함

<표 VI-36> 대중교통 이용횟수

(단위: 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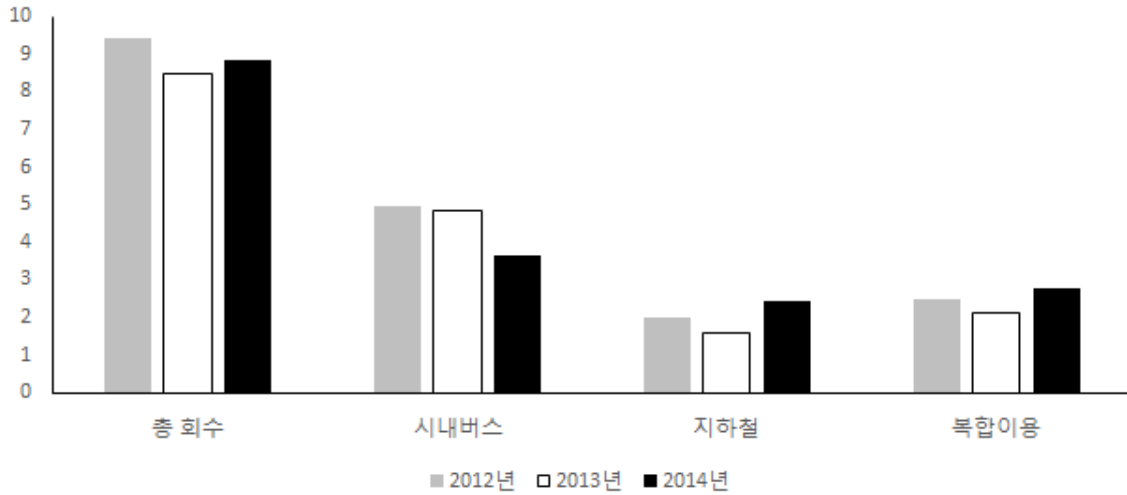
연도	대중교통 이용횟수(회) ⁴⁾				대중교통 이용요금 ⁵⁾	교통카드 이용비율
	총 횟수	시내버스	지하철	복합이용		
2012 ¹⁾	9.44	4.95	2	2.49	52,153	92.1
2013 ²⁾	8.50	4.82	1.57	2.11	51,551	85.1
2014 ³⁾	8.86	3.63	2.45	2.79	55,739	92.4

주: 1) 대중교통 이용자 69,000명(지역별 인구규모 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2.10-12)한 결과임
 2) 대중교통 이용자 75,900명(지역별 인구규모 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3.10-11)한 결과임
 3) 대중교통 이용자 83,600명(통근통학인구 역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4.9-11)한 결과임
 4) 일주일간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
 5)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된 비용

자료: 국세청, 『국토통계연보』, 2013~2015

[그림 VI-34] 대중교통 이용횟수

(단위: 회)



자료: 국세청, 『국토통계연보』, 2013~2015

- 2013년 기준 대중교통의 여객운송실적은 약 95억인 것으로, 2010년 88억인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13년 증가율(2%)이 2011년(5%)에 비해 낮고 2012년 증가율(1%)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37> 교통수단별 여객운송실적

(단위: 천인)

구분	2010	2011	2012	2013
철도	1,060,941	1,118,621	1,149,340	1,224,820
지하철	2,273,086	2,358,758	2,411,328	2,476,400
버스(전세버스 제외)	5,511,279	5,794,812	5,805,860	5,831,866
합계	8,845,306	9,272,191	9,366,528	9,533,086
전년 대비 증감률		5%	1%	2%

자료: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여객수송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대중교통 이용률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시 혜택 비교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높은 세무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함
- 동 절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했을 때, 조세지출규모의 변화와 동 제도의 폐지가 급여구간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함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로 야기되는 추가적 조세지출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32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약 7%에 해당함
 - 분석결과 총급여 6천만~3억원인 급여구간이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동 혜택이 폐지되는 경우 이들 계층의 소득공제 혜택이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은 9%로, 폐지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공제제도 폐지 시 대체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38>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시 효과 추정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전부 폐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공제 혜택 ¹⁾	현재기준 대비 ²⁾ 증감률
1천만 이하	265,826	15,955	-5	256,764	15,411	-8
1.5천만 이하	725,566	43,538	-2	714,533	42,876	-3
2천만 이하	1,599,349	95,968	-2	1,577,699	94,669	-3
3천만 이하	3,592,840	232,074	-2	3,525,380	227,717	-4
4천만 이하	3,373,482	283,521	-3	3,286,953	276,248	-5
4.5천만 이하	1,470,279	143,868	-3	1,424,898	139,427	-6
5천만 이하	1,282,889	135,094	-3	1,240,319	130,611	-7
6천만 이하	2,131,606	242,549	-4	2,054,704	233,798	-7
8천만 이하	2,613,703	331,252	-5	2,509,776	318,080	-9
1억 이하	1,057,732	161,326	-5	1,011,247	154,236	-9
2억 이하	859,050	167,962	-6	818,978	160,127	-10
3억 이하	27,818	7,673	-5	26,483	7,305	-10
5억 이하	5,266	1,597	-3	4,966	1,506	-9
10억 이하	682	226	-1	664	220	-4
10억 초과	69	25	-0	68	24	-4
합계	19,006,157	1,862,628	-4	18,453,432	1,802,25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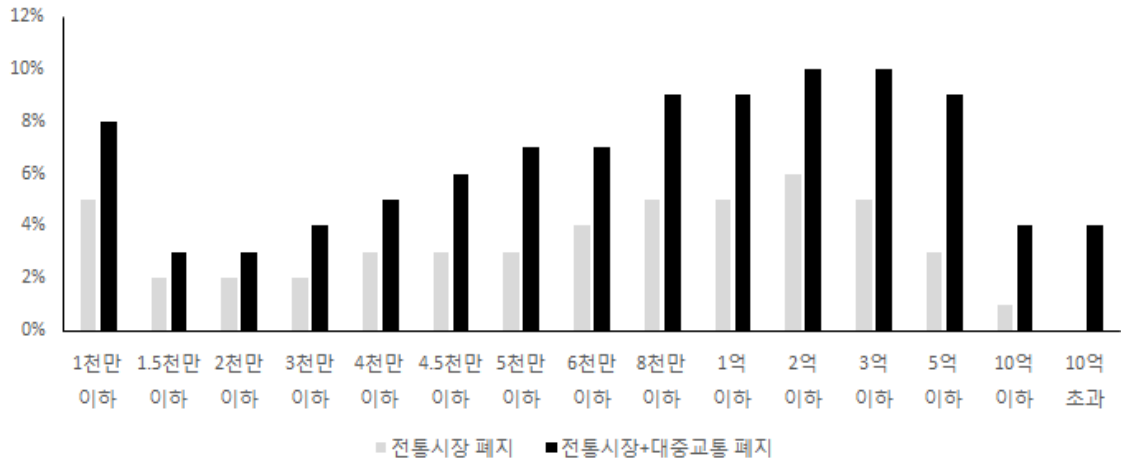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

2) (조정 후 기준을 사용한 공제 혜택-현재 기준 하의 공제 혜택)/현재 기준하의 공제 혜택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35]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급여구간별 공제 혜택 감소율

(단위: %)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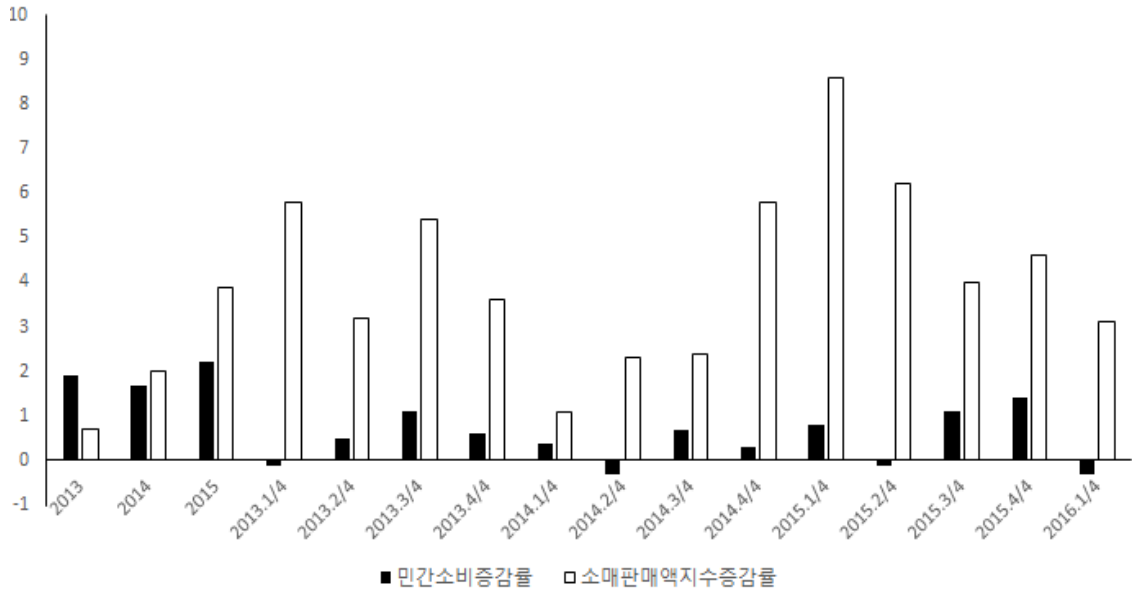
4.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추가공제조항을 통한 소비 활성화 측면

가.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공제를 통한 소비증가 추이

- 정부는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분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제외됨
- 사용증가분 공제가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도 상반기 소비동향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민간소비가 늘고 소매판매액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동 시기에 정부는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폐지·완화 등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2015년도의 소비 증가가 동 공제 제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그림 VI-36] 연도·분기별 소비동향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소비동향

<표 VI-39> 연도·분기별 소비동향

(단위: %)

시점	민간소비 증감률 (실질, 계절조정 전기대비)	소매 판매액지수	
		지표 (2010년=1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13	1.9	107.9	0.7
2014	1.7	110.1	2.0
2015	2.2	114.4	3.9
2013.1/4	-0.1	105.2	5.8
2013.2/4	0.5	113.2	3.2
2013.3/4	1.1	111.8	5.4
2013.4/4	0.6	116.6	3.6
2014.1/4	0.4	109.6	1.1
2014.2/4	-0.3	113.1	2.3
2014.3/4	0.7	110.3	2.4
2014.4/4	0.3	116.1	5.8
2015.1/4	0.8	121.3	8.6
2015.2/4	-0.1	121.8	6.2
2015.3/4	1.1	125.4	4.0
2015.4/4	1.4	112.9	4.6
2016.1/4	-0.3	108.5	3.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소비동향

- 사용증가분 공제의 또 다른 정책목표 중 하나인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도 카드 사용실적을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로 나누어 살펴봄
- 2015년 신용카드(물품 및 용역구매) 및 직불카드 등 이용액은 2014년 대비 각각 7%와 1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보다 높은 수치임
 - 2014년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물품 및 용역구매)은 2013년 대비 7%, 직불카드 등 이용금액은 16%가 증가함
 - 추가공제를 적용대상인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신용카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으며, 특히 2015년 12월에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무려 33% 이상 증가함

<표 VI-40> 2015년도 카드사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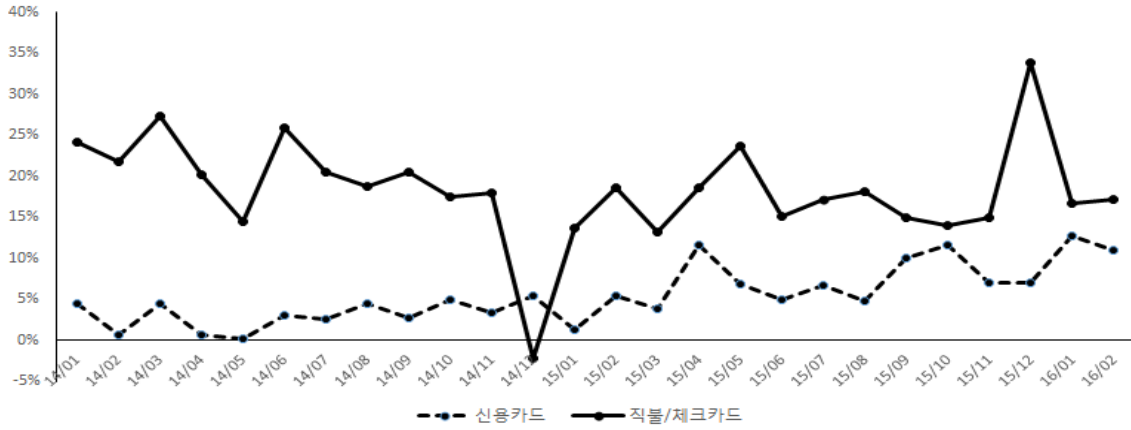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기간	신용카드(물품 및 용역 구매)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14/01	42,435	4.5	8,782	24.1
2014/02	37,664	0.7	8,133	21.7
2014/03	42,962	4.4	9,507	27.4
2014/04	41,950	0.7	9,235	20.2
2014/05	43,336	0.2	9,278	14.5
2014/06	41,938	3.0	9,428	26.0
2014/07	45,275	2.6	9,986	20.6
2014/08	43,186	4.6	9,855	18.8
2014/09	43,304	2.8	10,098	20.5
2014/10	44,326	5.0	10,223	17.4
2014/11	43,524	3.3	9,999	18.0
2014/12	46,792	5.5	9,287	-2.2
2015/01	43,007	1.3	9,982	13.7
2015/02	39,738	5.5	9,652	18.7
2015/03	44,632	3.9	10,762	13.2
2015/04	46,842	11.7	10,955	18.6
2015/05	46,292	6.8	11,473	23.7
2015/06	44,032	5.0	10,857	15.2
2015/07	48,326	6.7	11,704	17.2
2015/08	45,259	4.8	11,636	18.1
2015/09	47,642	10.0	11,615	15.0
2015/10	49,463	11.6	11,649	14.0
2015/11	46,617	7.1	11,493	14.9
2015/12	50,070	7.0	12,437	33.9
2016/01	48,463	12.7	11,649	16.7
2016/02	44,118	11.0	11,309	17.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37] 2015년도 카드사용동향

(단위: 십억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사용증가분 공제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 및 카드사용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 결과,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총급여 6천만~2억원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총급여 6천만~2억원 사이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등 사용액은 큰 폭으로 증가해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높은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을 늘린 것으로 판단됨

<표 VI-41> 2015년도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 변화

(단위: 십억원, %)

구분	전통시장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2015	2014	증가액	증가율	2015	2014	증가액	증가율
1천만원 이하	2,698	11,034	8,336	309	1,806	1,702	-104	-6
1.5천만원 이하	13,939	3,662	-10,277	-74	8,679	3,731	-4,948	-57
2천만원 이하	14,897	15,520	623	4	23,676	17,066	-6,610	-28
3천만원 이하	31,803	21,885	-9,918	-31	30,718	45,633	14,915	49
4천만원 이하	25,534	20,889	-4,645	-18	35,540	31,482	-4,058	-11
4.5천만원 이하	6,856	6,796	-60	-1	10,139	11,297	1,158	11
5천만원 이하	6,931	9,661	2,730	39	9,499	9,669	170	2
6천만원 이하	10,189	11,384	1,195	12	17,408	25,661	8,253	47
8천만원 이하	13,396	23,080	9,684	72	34,331	26,804	-7,527	-22
1억원 이하	5,936	7,251	1,315	22	12,253	13,833	1,580	13
2억원 이하	5,569	9,365	3,796	68	13,620	15,560	1,940	14
3억원 이하	548	406	-142	-26	1,155	1,312	157	14
5억원 이하	130	170	40	31	533	630	97	18
10억원 이하	50	62	12	24	231	259	28	12
10억원 초과	25	32	7	28	101	101	-	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38] 2015년도 근로자의 전통시장 등 사용액 변화

(단위: 십억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5. 정책적 시사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납세인원 및 세수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누락이 용이한 현금수입업종에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신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6.11%와 12.5%가 증가함
 -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효과로, 과세미달 납세인원의 숫자가 줄면서 과세납세인원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함
 -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결정세액 기준) 및 부가가치세 세수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으로 1999년 대비 각각 411%와 290%가 증가함
 - 1999년 40.8%에 불과하던 기장신고비율은 동 제도 시행 3년 만에 50%를 돌파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및 과세표준의 전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이 급감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이 아닌 카드에 의한 결제를 일 상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 63조원에서 2015년 612조원으로 약 9.6배가 증가하였으며, 체크/직불/선불카드 이용실적 역시 1999년 980억원에서 2015년 기준 135조원으로 무려 1,377배가 증가함
 -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15년 52%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지급비율은 2014년 기준 46.3%로, 주요국 평균(17.6%)보다 월등히 높음
 -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선불카드에 차별적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체크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체크카드 등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 사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취문화 정착에도 기여 한바,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조원에서 2014년에는 92조원으로 약 5배가 증가함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점과 백화점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만,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과는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낮거나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업종은 동 공제제 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887억원이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액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등 고소득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근로자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의 계층이 향유하는 공 제 혜택은 전체 조세지출액의 4.4%에 해당하는 888억원에 불과함

- 소득공제 신청액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 사이가 가장 크지만, 한계세율의 영향으로 실제 감면받은 소득세는 총급여 6천만~8천만원 사이 구간이 가장 많았음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표본 자료(연말정산 대상 전체 근로자의 5%)를 이용해 공제문턱, 공제한도, 소득공제율을 조정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득공제율 인하보다 공제문턱을 높이거나 공제한도를 낮추는 것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소득공제 혜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공제문턱을 총급여의 30%, 35% 수준으로 인상하면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12%, 23%가 감소하며, 공제한도를 250만원과 2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10%,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보다 5%p와 10%p 인하했을 때 조세지출액은 2014년 대비 각각 11%와 2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분산하는 효과는 공제문턱을 총급여의 35% 수준으로 높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소득공제율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면 현재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소득층에 귀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한편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 귀착되는 공제 혜택을 현행 10% 수준에서 절반인 5~6%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은 총급여 1천만~4천만원 사이 근로자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하위 20% 급여구간(예.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은 과세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증분적 혜택이 크지 않았음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총급여 5천만원~2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현재보다 높여 소득세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동 제도 시행 후 전통시장 매출 및 대중교통 이용률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이들 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일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불분명한 개념 정의로 인해 높은 세무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해당 규정을 추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 및 고객 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함
 - 대중교통 이용횟수 역시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2013년도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감소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의 주된 수혜계층은 총급여 6천만~3억원 사이 근로자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동 제도로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5년도부터 시작한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역시 소비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대상기간인 2015년 1월 이후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이러한 효과가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 때문인지 직접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사용한 다양한 정책들과 효과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움
 - 특히, 적용대상자 판정 및 공제금액 계산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추가공제조항 도입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정확히 대응시키기 어려움
 - 사용증가분 공제가 근로자의 카드사용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 결과, 총급여 1천만원 이하와 총급여 6천만~2억원 사이 구간에서 동 제도 도입 후 전통시장 등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Ⅶ. 효율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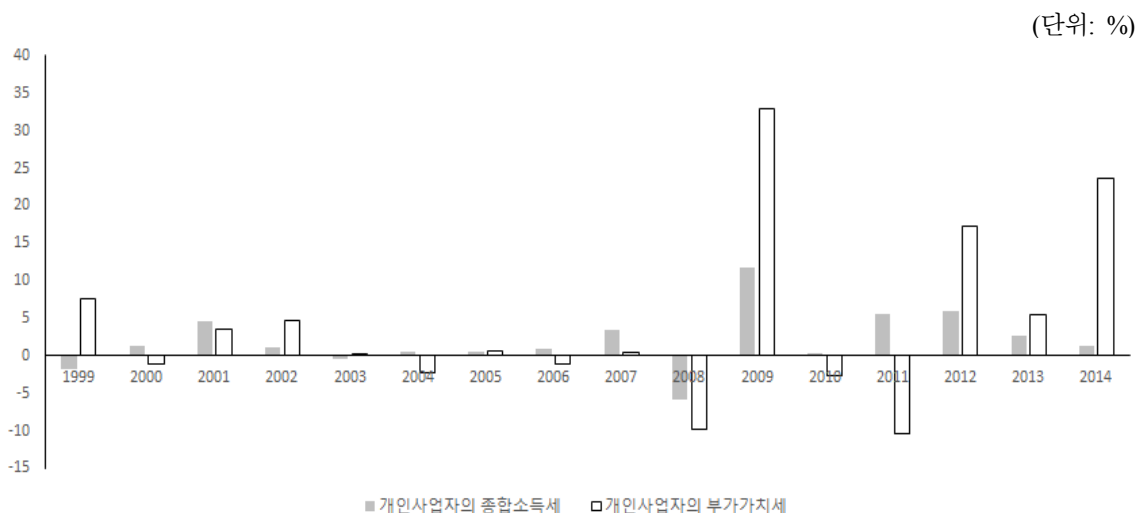
VII. 효율성 평가

1. 편익 측면

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 효과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과약이 쉽지 않은 현금수입업종의 거래규모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명목 GDP 증가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탄성치를 계산한 결과,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의 국세탄성치가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함
 - ‘국세탄성치’란 연간 국세수입 증감률을 명목GDP 증감률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장률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음을 의미함

[그림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

-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1년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탄성치가 4.56, 2001년과 2002년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탄성치가 각각 3.60과 4.76을 기록해, 개인사업자의 세수증가액이 명목GDP 증가분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

<표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단위: 십억원, %)

연도	명목GDP		국세탄성치	
	금액 (십억원)	전년대비 증감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1999	576,873	10	-1.70	7.51
2000	635,185	10	1.39	-1.09
2001	688,165	8	4.56	3.60
2002	761,939	11	1.03	4.76
2003	810,915	6	-0.47	0.16
2004	876,033	8	0.62	-2.24
2005	919,797	5	0.60	0.60
2006	966,055	5	0.99	-1.19
2007	1,043,258	8	3.38	0.50
2008	1,104,492	6	-5.79	-9.71
2009	1,151,708	4	11.70	32.98
2010	1,265,308	10	0.41	-2.64
2011	1,332,681	5	5.63	-10.33
2012	1,377,457	3	5.95	17.26
2013	1,429,445	4	2.65	5.56
2014	1,485,078	4	1.28	23.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

-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GDP 증가율에 가까운 성장을 보임

[그림 VII-2] 연도별 GDP 및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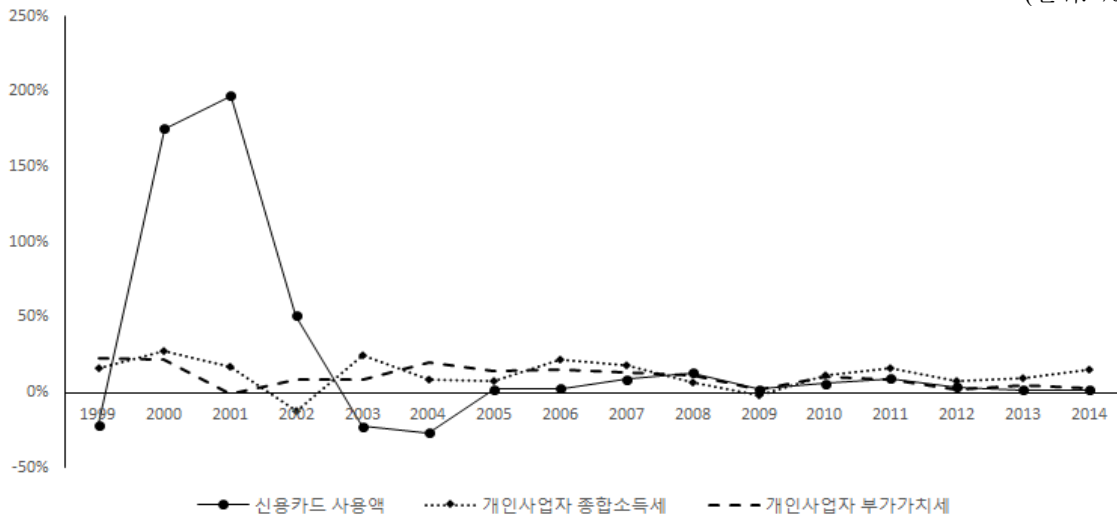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변동 추이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를 견인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시행 직후인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이후 기간에는 직접적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 최근 들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율 역시 이와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임

[그림 VII-3]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액 및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율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02년 이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상 주요 개정사항이 개인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세법개정 내용과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 간 뚜렷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음
 - 공제문턱 인상(2005), 소득공제율 인하(2006, 2013), 공제한도 축소(2010) 등과 같이 축소 개정이 있었던 해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율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사실상 세법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상 주요 개정내용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 제도가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여 과표양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표 VII-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²⁾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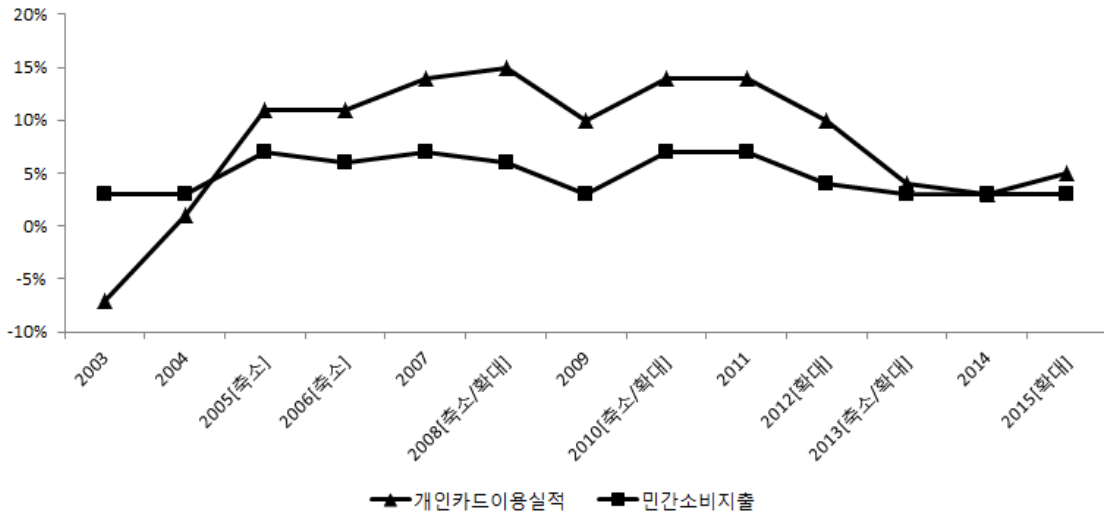
제도 시행시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¹⁾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주요 개정내용
	금액	증가율		
2003	141,712	-7	3	
2004	142,590	1	3	
2005	158,606	11	7	[축소] 공제문턱 인상(총급여액의 10%→15%)
2006	175,836	11	6	[축소] 공제율 인하(20%→15%)
2007	200,837	14	7	
2008	230,087	15	6	[축소/확대] 공제문턱 인상(총급여액의 15%→20%), 공제율 인상(15%→20%)
2009	252,409	10	3	
2010	288,061	14	7	[축소/확대] 공제한도 축소(500만원→300만원), 직불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20%→25%)
2011	327,758	14	7	
2012	359,670	10	4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직불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25%→30%)
2013	372,840	4	3	[축소/확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하(20%→15%),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2014	385,197	3	3	
2015	403,460	5	3	[확대] 증가사용분 추가공제

주: 1) 변경된 제도가 12월부터 적용되는 경우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함

2) 이용금액=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I-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02년 이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상 주요 개정사항이 개인 신용카드 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2013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는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폭발적 증가를 이끌었으나 2015년 ‘증가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 신설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됨
- 증가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한해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4%가 감소함

<표 VII-3>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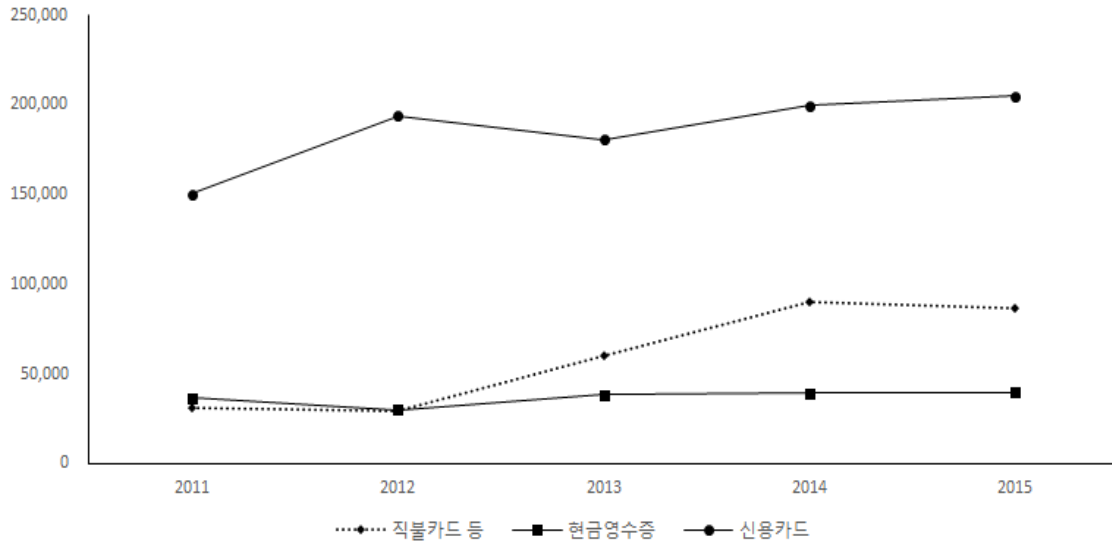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연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11	150,099		30,579		36,512	
2012	193,951	29	29,058	-5	29,760	-18
2013	180,902	-7	59,850	106	38,194	28
2014	199,689	10	90,422	51	39,240	3
2015	204,741	3	86,649	-4	39,456	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VII-5]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화추이

(단위: 십억원)



2. 비용 측면

가. 조세지출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2000년 350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 8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공제제도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총 18조 2,195억원의 조세지출비용이 발생하였음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비용은 제도 도입 직후인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479%와 207% 증가하였으나, 공제한도 축소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그러나 추가공제 규정 신설로 인해 공제한도가 사실상 확대된 2013년부터 조세지출규모는 다시 15%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이외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총계는 1999~2015년까지 무려 33조 4,231억원에 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누적 기준 18조 2,195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14조 6,543억원임
- 2012년 폐지된 「사업자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비용은 4,422억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복권제도로 인한 조세지출비용은 1,071억원임

<표 VII-4>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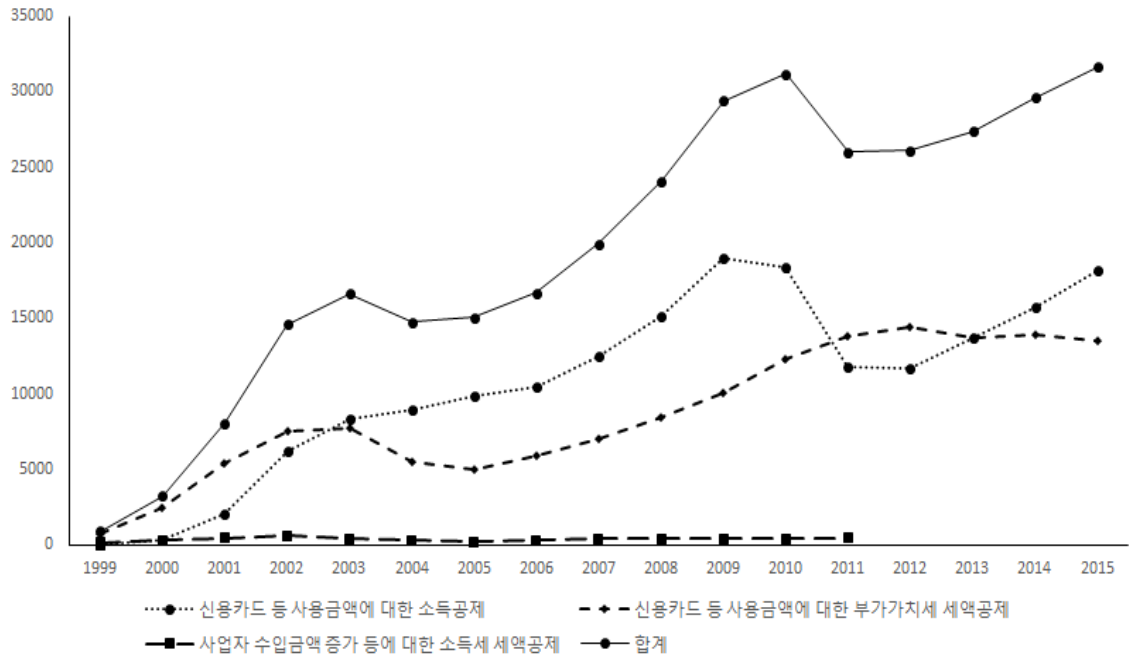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합계
1999	-	718	159	-	877
2000	350	2,426	270	176	3,222
2001	2,027	5,425	416	192	8,060
2002	6,233	7,546	595	192	14,566
2003	8,308	7,748	405	163	16,624
2004	8,966	5,435	296	61	14,758
2005	9,812	4,991	201	47	15,051
2006	10,465	5,893	278	59	16,695
2007	12,506	6,992	369	59	19,926
2008	15,171	8,451	386	48	24,056
2009	18,934	10,036	375	45	29,390
2010	18,405	12,325	412	30	31,172
2011	11,729	13,831	419	-	25,979
2012	11,697	14,405	-	-	26,102
2013	13,721	13,667	-	-	27,388
2014	15,708	13,888	-	-	29,596
2015	18,163	13,484	-	-	31,647
합계 (1999~2015)	182,195	146,543	4,422	1,071	334,231
2016(예상)	19,321	13,013	-	-	32,334

주: 1. 2015년과 2016년도 조세지출금액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예상수치임
 2.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복권제도는 2010년 폐지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그림 VII-6]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단위: 억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을 비교한 결과, 2000~2014년까지 15년간 증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총 25조 9천억원이나, 동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이 전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63%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은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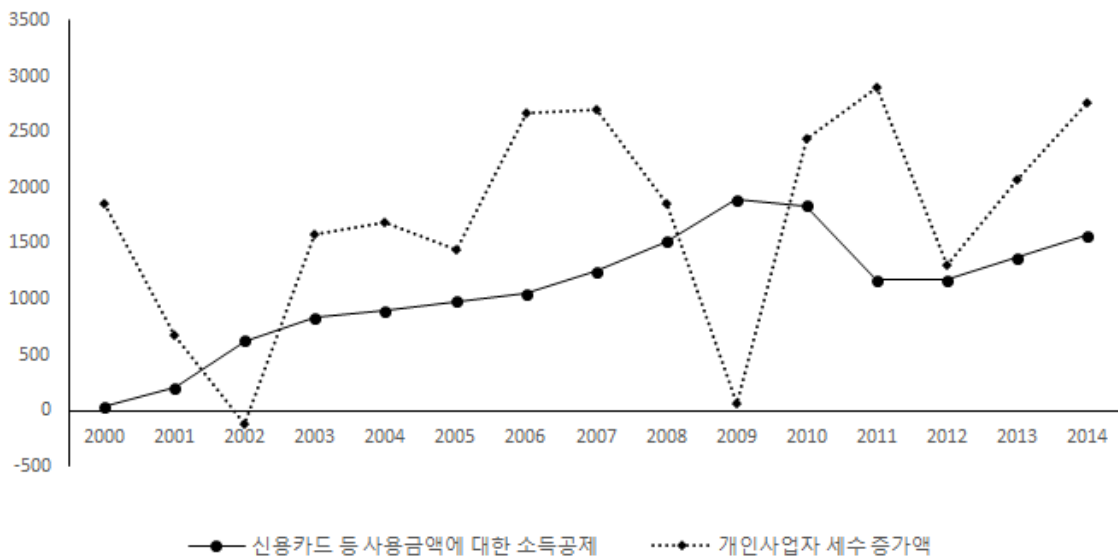
<표 VII-5>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비교

(단위: 십억원, %)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A)	개인사업자의 세수증가액			비용-효익 분석 (A/D)
		종합 소득세 (B)	부가 가치세 (C)	합계 (D=B+C)	
2000	35	923	933	1,856	2%
2001	203	738	-56	682	30%
2002	623	-593	465	-128	-487%
2003	831	1,085	489	1,574	53%
2004	897	467	1,226	1,693	53%
2005	981	431	1,015	1,446	68%
2006	1,047	1,412	1,264	2,676	39%
2007	1,251	1,403	1,301	2,704	46%
2008	1,517	577	1,275	1,852	82%
2009	1,893	-164	220	56	3,381%
2010	1,841	1,104	1,332	2,436	76%
2011	1,173	1,787	1,119	2,906	40%
2012	1,170	963	347	1,310	89%
2013	1,372	1,265	800	2,065	66%
2014	1,571	2,225	534	2,759	57%
누계	16,403	13,623	12,264	25,887	63%

[그림 VII-7]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비교

(단위: 억원)



나. 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업자 수수료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2003년 2조 1,580억원에
서 2014년에는 3.97배가 증가한 10조 7,300억원에 달함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카드대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카드사용 실적이
감소했던 2004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06년과 2007년에는 무려 66%나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²⁷⁾에
힘입어 최근에는 증가폭이 둔화됨

〈표 VII-6〉 연도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위: 십억원, %)

연도	가맹점수수료	전년 대비 증가율
2003	2,158	
2004	1,636	-24.2
2005	2,019	23.4
2006	3,361	66.4
2007	5,610	66.9
2008	5,575	-0.6
2009	6,130	9.9
2010	7,195	17.4
2011	8,569	19.1
2012	8,849	3.3
2013	9,260	4.6
2014	9,963	7.6
2015	10,730	7.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지급결제수단 중 신용카드는 그 특성상 현금이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에 비해
가맹점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거래 구조상 회원의 대금 납부에 앞서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해야 하므로 자본
조달비용이 발생함

27) 정부는 2007년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였으며, 2008년에는
서민생활 밀접업종의 수수료를 인하함. 또한 2009년에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2010
년에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고, 2011년에는 전통시장과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2015년 말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인 영
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매출액 2~3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로 이전보다 0.7%p 인하함

- 또한 회원으로부터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대손비용이 발생하고, 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회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정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카드거래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1.95%로, 체크카드(17.91%)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편임
 - 신용카드 사용비중은 2009년 92.5%에서 2015년 81.9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불/체크카드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체크카드 사용비중은 2009년 7.23%에서 2014년 17.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액비중은 낮은 편임

<표 VII-7>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 비교

(단위: 십억원)

연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IC카드	합계
	물품 및 용역 구매	현금 서비스	소계					
1998	22,772	24,248	47,020	64	-	-	-	47,020
1999	28,469	31,206	59,676	98	-	-	-	59,676
2000	48,967	86,898	135,864	106	-	-	-	135,864
2001	81,351	148,601	229,951	98	-	-	-	229,951
2002	261,693	357,465	619,158	75	-	-	-	619,158
2003	241,928	239,526	481,454	62	-	-	-	481,516
2004	225,932	126,574	352,506	70	2,637	261	-	355,473
2005	255,476	105,223	360,699	174	7,774	528	-	369,175
2006	279,009	91,949	370,959	113	12,330	728	-	384,128
2007	317,647	85,985	403,632	79	18,827	923	-	423,410
2008	367,439	88,982	456,421	57	26,802	1,020	-	484,300
2009	384,552	81,807	466,358	45	36,462	1,291	-	504,155
2010	412,094	81,642	493,736	39	51,840	2,359	-	547,975
2011	457,980	82,813	540,794	34	69,824	2,007	-	612,658
2012	485,945	75,913	561,858	23	84,793	1,590	1	648,264
2013	500,978	69,665	570,643	16	96,105	1,198	30	667,992
2014	516,692	65,273	581,964	11	113,805	988	101	696,869
2015	551,919	62,323	614,241	8	134,214	832	200	749,49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VII-8>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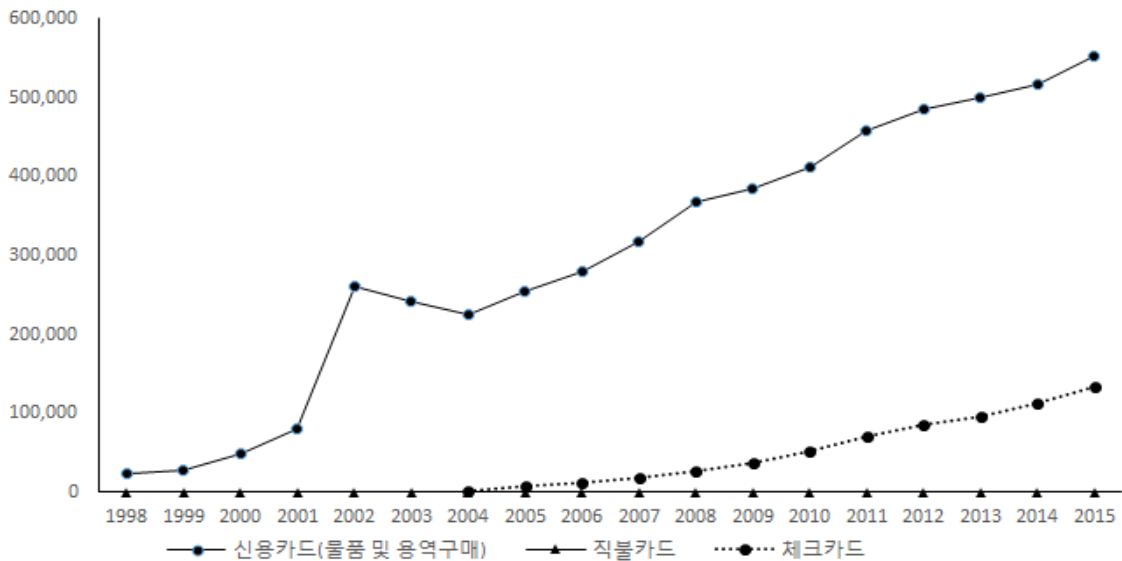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IC카드
2009	92.50	0.01	7.23	0.26	0.00
2010	90.10	0.01	9.46	0.43	0.00
2011	88.27	0.01	11.40	0.33	0.00
2012	86.67	0.00	13.08	0.25	0.00
2013	85.43	0.00	14.39	0.18	0.01
2014	83.51	0.00	16.33	0.14	0.02
2015	81.95	0.00	17.91	0.11	0.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I-8]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이용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직불 기능을 가진 카드에 의한 지급비율은 다른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은 2014년 기준 46.3%로 다른 국가들의 평균인 17.6%보다 월등히 높음
 - 반면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에 의한 지급비율은 2014년 기준 23.3%로 다른 국가들의 평균인 35.9%보다 낮음

- 높은 가맹점수수료가 결국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중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물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전액이 사회적 비용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 어느 정도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총액의 변화를 분석함

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비용

- 신용카드는 사후결제, 무이자 할부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과소비를 자극해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음
 -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수는 카드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로 2011년 76만명에서 2014년에는 65만명으로 감소함
 -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표 VII-9>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 수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카드론	243,023	242,350	155,498	179,575	191,073
신용카드대금	515,526	556,811	416,963	458,223	457,816
신용카드관련 금융질서문란자	1,196	871	804	559	444
합계	759,745	800,032	573,265	638,357	649,333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카드관련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바, 개인 워크아웃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2015년 기준 1,900억원에 달함
 - 우리나라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음
 - 카드대란 시기인 2004년과 2005년에만 28만 5천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들의 원금 및 이자감면으로 7,6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표 VII-10> 연도별 워크아웃 인원 수 및 감면금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인원	감면금액 (원금, 이자, 연체이자)	인원	감면금액 (이자, 연체이자)
2003	11,221	17,472	**1)	**
2004	142,049	365,934	**	**
2005	143,224	395,327	**	**
2006	53,231	202,069	**	**
2007	37,059	237,588	**	**
2008	37,450	267,584	**	**
2009	45,981	248,217	5,389	734
2010	33,478	235,902	5,113	700
2011	35,766	274,966	11,483	1,625
2012	39,296	247,607	15,758	1,921
2013	34,647	183,322	18,525	2,143
2014	30,733	166,279	13,544	1,487
2015	32,406	189,248	13,644	1,501
합계	676,541	3,031,515	83,456	10,111

주: 1) 프리워크아웃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3. 정책적 시사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이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여 세수 증대를 견인하는 효과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가장 뚜렷이 관찰되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효과가 둔화되고 있음
 - 최근 들어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율 역시 이와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임
 - 공제문턱 인상, 소득공제율 인하, 공제한도 축소 등과 같이 동 제도의 공제규모 축소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높여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명목GDP 증가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통제한 이후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탄성치를 계산해 살펴본 결과,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의 국세탄성치가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남
 - 동 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1년에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수 증가율은 동년도 명목GDP 증가율의 4.56배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역시 2001년과 2002년에 해당 연도의 명목GDP 증가율의 각각 3.60배와 4.76배로 나타나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액이 명목GDP 증가분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자영업자 소득 노출로 인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기간에 나타난 증분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시작된 2000년~2015년까지 기간 동안 총 18조 2,195억원의 조세지출비용이 발생함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관련 조세감면규정까지 합치면 조세지출액은 1999~2015년까지 무려 33조 4,231억원에 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신용카드 활성화 관련 조세지원정책 중 조세지출규모가 가장 큰 항목임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증가한 개인사업자 세수의 약 63%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공제제도의 조세지출비용으로 사용됨
 -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전체를 동 공제제도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63%는 상당히 높은 비율임

-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조세지출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은 점점 더 그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있는 반면, 동 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제 혜택을 현행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로만 매년 10조원(2015년 기준)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65만명(2014년 기준)의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가 양산되고 있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음
 - 신용카드 관련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2015년 기준 1,9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함

- 물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전부를 동 공제제도로 인한 비용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지만, 높은 가맹점수수료가 결국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야기된 사회적 비용의 일부임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 사용비중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는 자영업자 소득노출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적고,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대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소비를 방지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체크카드 등 사용 장려정책으로 체크카드 사용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의 20% 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Ⅷ. 설문조사 결과



VIII.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일반 근로자들의 의식과 실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경제행위 변화를 파악하고 소득공제제도 수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나. 조사 설계

- 조사 대상을 연말정산 경험이 3회 이상으로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하여 제도로 인한 실제 경제행위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 함
- 총 2,000명의 표본을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추출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VIII-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2,000)	100.0
성 별	남성	(1,158)	57.9
	여성	(842)	42.1
연령별	20대	(287)	14.4
	30대	(440)	22.0
	40대	(520)	26.0
	50세 이상	(753)	37.7

구 분		사례 수	비율
직업별	전문직	(196)	9.8
	경영/관리/사무직	(1,458)	72.9
	판매/서비스직	(143)	7.2
	생산기능직	(201)	10.1
	농림수산축산업	(2)	0.1
연말정산 경험횟수	경험적음(3~5회)	(565)	28.3
	경험보통(6~10회)	(527)	26.4
	경험많음(11회이상)	(908)	45.4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895)	44.8
	중소도시	(932)	46.6
	읍면군지역	(173)	8.7
결혼여부	기혼	(1,420)	71.0
	미혼	(580)	29.0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174)	8.7
	2,000만원~4,000만원	(822)	41.1
	4,000만원~6,000만원	(527)	26.4
	6,000만원~8,000만원	(279)	14.0
	8,000만원~1억원 미만	(120)	6.0
	1억원 이상	(66)	3.3
	모름/무응답	(12)	0.6

다. 조사 결과

1) 지불결제수단 이용 현황

- 지불결제수단 이용횟수 분석 결과 이용횟수를 10회로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가 5.1회로 지불결제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크/직불/선불 카드가 2.7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결제가 1.3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결제를 1.0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불결제수단으로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이용하는 횟수가 10회 중 7.8회로 카드 이용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결제 이용횟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현금결제 이용 횟수보다 다소 높은 것은 고무적임

<표 VIII-2> 지불결제수단 별 이용횟수(10회 가정, 평균값)

지불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횟수	5.1회	2.7회	1.3회	1.0회

- 지불결제수단 이용금액 비중 분석 결과 신용카드가 55.3%로 지불결제수단 중 이용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크/직불/선불카드가 26.5%, 영수증 발급 현금이 11.0%, 영수증 미발급 현금이 7.2% 순으로 나타남
- 지불결제수단별 이용금액 비중은 이용횟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 시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용횟수보다 이용금액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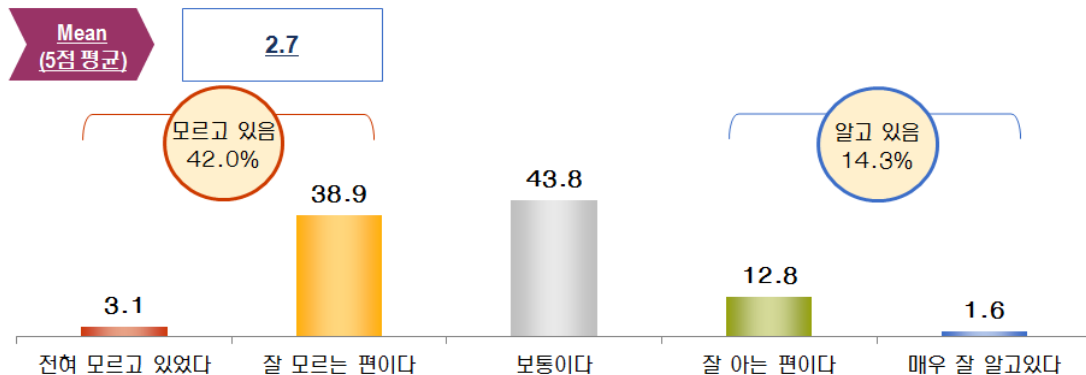
<표 VIII-3> 지불결제수단별 이용금액(100%, 평균값)

지불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이용금액비중	55.3%	26.5%	11.0%	7.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영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분석 결과 보통 43.8%, 잘 모르는 편 38.9%, 잘 아는 편 12.8%, 전혀 모르고 있음 3.1%, 매우 잘 알고 있음 1.6% 순으로 나타남
- 보통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모르고 있음(전혀 모르고 있음+잘 모르는 편)이 42.0%로 14.3%의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잘 아는 편)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VI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지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구체적인 인지도 분석 결과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50% 내외로 가장 높았음
-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의견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음’이 38.5%, ‘잘 몰랐다’ 의견이 12.0%로 나타남
-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인지도의 경우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몰랐다’가 26.6%, ‘잘 알고 있음’이 17.7%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인지도 역시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의견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몰랐다’가 29.2%, ‘잘 알고 있음’이 16.9%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지도의 경우 ‘잘 알고 있음’ 비율이 구체적 내용별 인지도 가운데 가장 낮은 16.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라는 의견이 53.6%, ‘잘 몰랐다’가 3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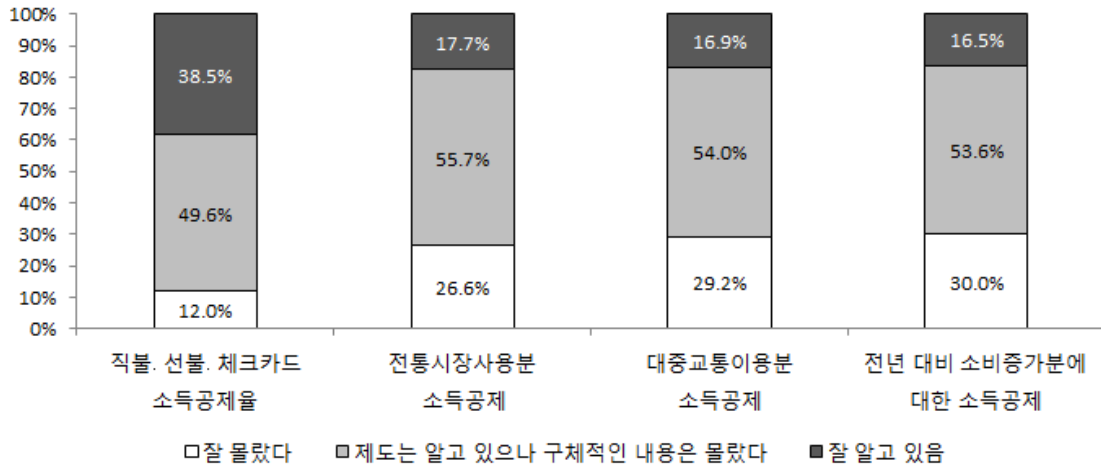
<표 VIII-4> 구체적 제도 내용별 인지도

(단위: %)

제도 내용	잘 몰랐다	제도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잘 알고 있음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	12.0	49.6	38.5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26.6	55.7	17.7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29.2	54.0	16.9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30.0	53.6	16.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소비·지출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55% 수준으로 전반적인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을 고려해볼 때 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직불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제외하고는 20%에도 미치지 않으나, 제도로 인하여 소비 및 지출을 늘리는 경우는 절반을 넘게 차지함

[그림 VIII-2] 구체적 제도 내용별 인지율



<표 V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비·지출 영향 정도

지출 변화 없음	지출 조금 늘어남	지출 많이 늘어남
45.6%	39.9%	14.6%

-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지도 결과, ‘잘 알고 있었다’가 38.5%로 ‘잘 몰랐다’(12.0%) 대비 높게 나타남
 - ‘잘 알고 있었다’의 소득 수준별 ‘1억원 이상’에서 57.6%, ‘잘 몰랐다’의 소득 수준별 ‘2,000만원 미만’에서 20.7%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인지도 결과, ‘잘 알고 있었다’가 17.7%로 ‘잘 몰랐다’(26.6%) 대비 낮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의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내용 인지율이 남성보다 더 낮게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인지도 결과, ‘잘 알고 있었다’가 16.9%로 ‘잘 몰랐다’(29.2%) 대비 낮게 나타남
 - ‘잘 알고 있었다’ 응답의 경우 소득 수준별 ‘1억원 이상’에서 3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몰랐다’ 응답의 경우 소득 수준별 ‘2,000만원 미만’에서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카드이용 추가소득공제 인지도 결과, ‘잘 알고 있었다’가 16.5%로 ‘잘 몰랐다’(30.0%) 대비 낮게 나타남
 - 카드이용 추가소득공제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10%대의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구체적인 제도별 인지도가 취약한 수준이나, 인지율이 높을수록 제도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러 제도의 인지율이 고르게 높아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만큼 제도에 의한 지출 또한 늘렸다는 의견이 60%에 다다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출을 늘렸다는 의견이 40%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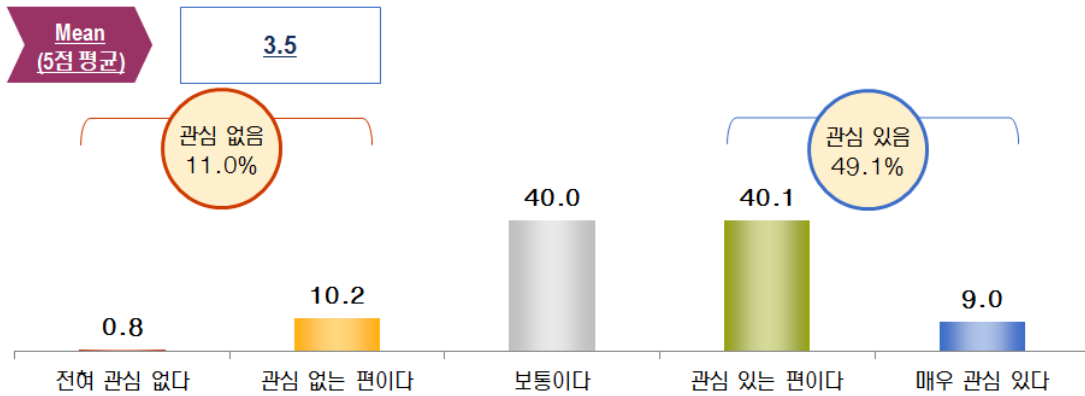
〈표 VIII-6〉 구체적 제도 내용별 소비·지출 영향도

제도 내용	지출 변화 없음	지출 조금 늘어남	지출 많이 늘어남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8%	36.8%	22.4%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66.1%	28.9%	5.0%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63.4%	26.1%	10.5%
본인의 전반적인 소비	50.0%	41.8%	8.2%

3) 제도의 관심도 및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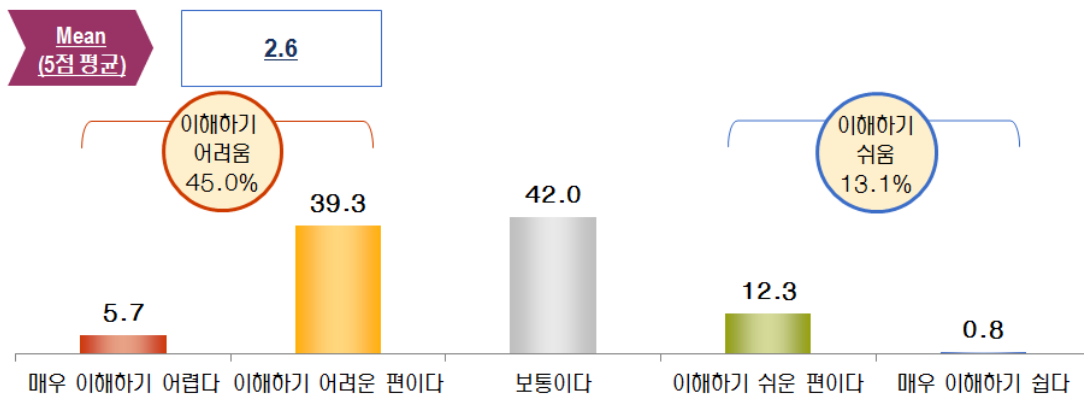
- 제도 관심도 결과, 5점 평균 3.5점으로 나타났으며 ‘관심 있는 편이다’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보통이다’가 40.0%, ‘관심 없는 편이다’ 10.2%, ‘매우 관심 있다’가 9.0%로 나타났으며 ‘전혀 관심 없다’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말정산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II-3] 제도 관심도



- 추가소득공제 혜택 조건에 대한 이해도 분석 결과, ‘이해하기 어려움’(매우 이해하기 어렵다+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이 45.0%로 ‘이해하기 쉬움’(매우 이해하기 쉽다+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20대, 여성, 연말정산 경험이 적을수록 혜택 조건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II-4] 추가소득공제 혜택 조건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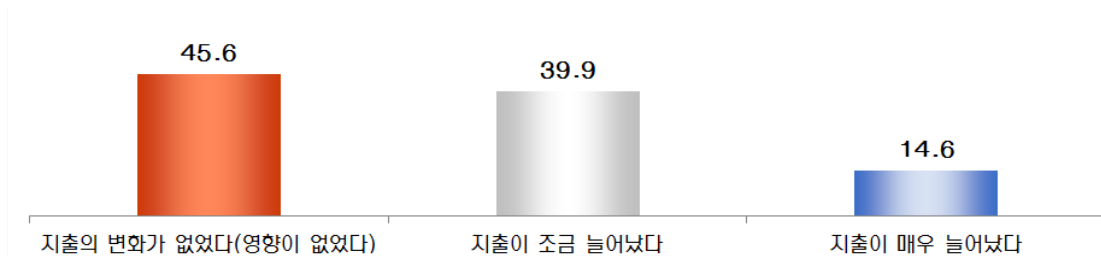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소비지출 및 카드사용 영향 정도

- 소비지출 영향 정도는 ‘지출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가 45.6%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39.9%) >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14.6%)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조금이라도 지출 변화가 있었다는 근로자가 55% 수준이며 여성, 40대 이상, 연말정산 경험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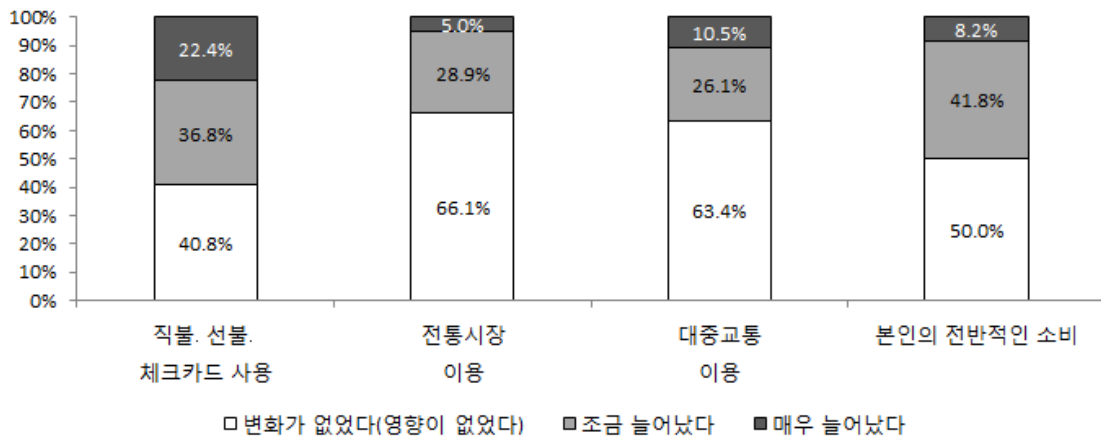
[그림 VIII-5] 전반적인 소비지출 영향 정도



- 구체적인 내용별로 소비·지출 영향 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이 매우 늘어났다는 비율이 22.4%로 4가지 세부 내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10.5%) > ‘본인 소비’(8.2%) > ‘전통시장 이용’(5.0%) 순임
 -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의 비율은 ‘전통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이 각각 66.1%와 63.4%로 높게 나타남
- 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 인지도 결과, ‘매우 늘어났다’가 22.4%로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40.8%)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미혼, 연말정산 경험이 적은 근로자와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및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근로자의 소비·지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인지도 결과,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가 66.1%로 ‘조금 늘어났다’(28.9%), ‘매우 늘어났다’(5.0%) 대비 높게 나타남
 - ‘매우 늘어났다’ 의견의 경우 가족 형태가 ‘부부+부모+자녀’인 경우 8.7%로 가장 높았고,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의 경우 가족 형태가 ‘형제’인 경우 83.3%, 1인 가구가 70%로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영향 정도 분석 결과,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가 63.4%로 ‘조금 늘어났다’(26.1%), ‘매우 늘어났다’(10.5%) 대비 높게 나타남

- ‘매우 늘어났다’ 의견의 경우 ‘20대’에서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의견의 경우 가족 형태가 ‘형제’인 경우 80.0%, 1인 가구인 경우 65%로 높게 나타남
- 소비 영향 분석 결과,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가 50.0%로 ‘조금 늘어났다’(41.8%), ‘매우 늘어났다’(8.2%) 대비 높게 나타남
 -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매우 늘어났다’ 의견의 경우 가족 형태가 ‘형제’인 경우 14.3%, ‘부부+부모+자녀’에서 9.8%로 높게 나타났고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의견의 경우 소득 수준별 ‘2,000만원 미만’에서 57.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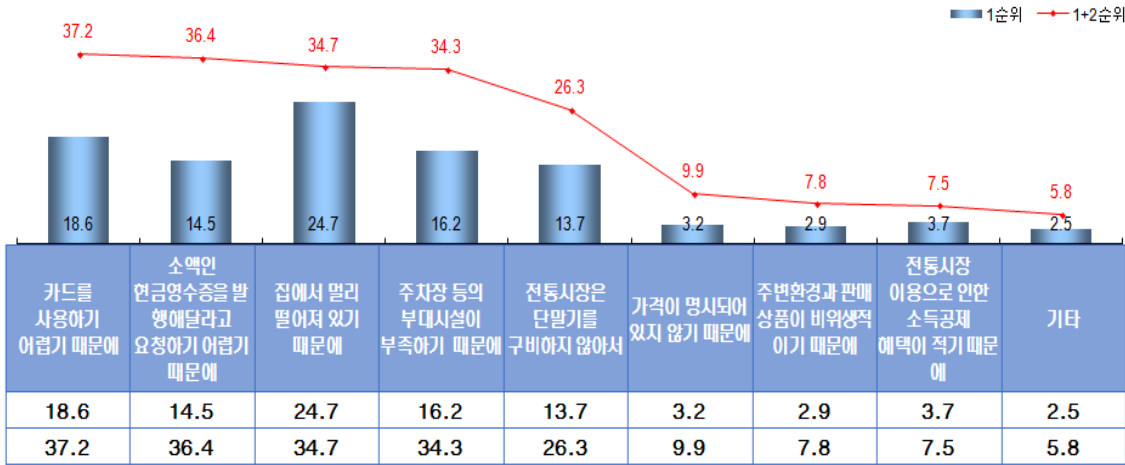
[그림 VIII-6] 각 조항별 소비지출 영향 정도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공제율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가 37.2%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소액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36.4%) >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34.7%) 등의 순으로 나타남(1+2 순위 기준)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결제수단 다양화 등의 편의성 제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I-7] 전통시장 비이용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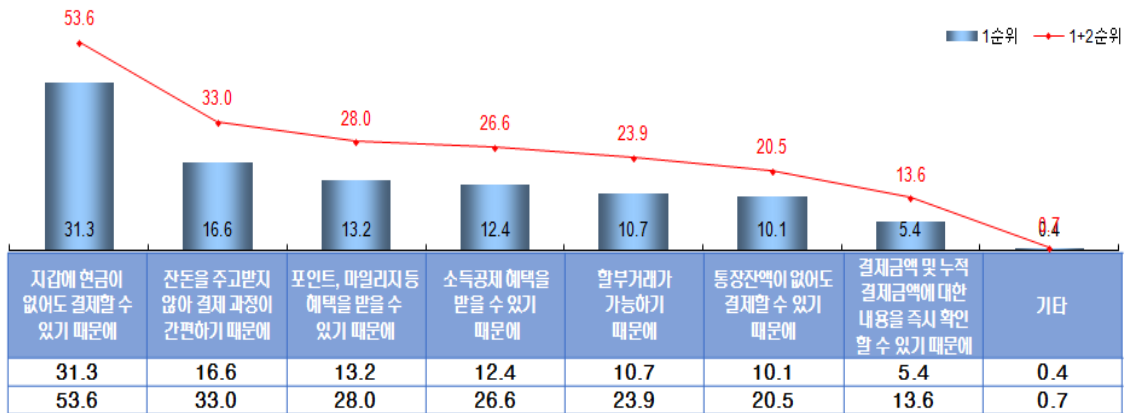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카드 사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조금 늘어났다’가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화가 없었다’(36.7%) > ‘매우 늘어났다’(24.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의견의 경우 연령별 ‘30대’가 41.1%로 가장 높은 반면, 연말정산 경험횟수가 ‘경험 보통(6~10회)’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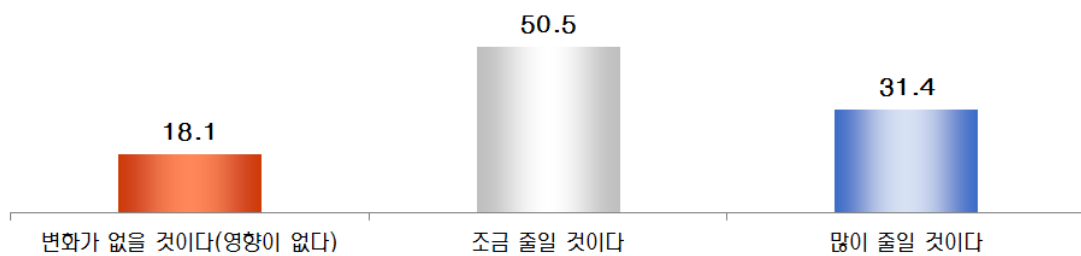
-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33.0%) >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1+2순위 기준)
-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 대부분이 소득공제제도 편익보다는 이용 편의성에 대한 측면이 매우 큼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더욱 낮추거나 타 이용결제 수단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그림 VIII-8] 신용카드 주 이용 이유



-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 시 이용 조정 여부는 ‘조금 줄일 것이다’가 50.5%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많이 줄일 것이다’(31.4%) > ‘변화가 없을 것이다(영향이 없다)’(18.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많이 줄일 것이다’의 연령별 ‘30대’가 35.6%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28.7%로 가장 낮음

[그림 VIII-9]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 시 이용 조정 여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과 현행 고소득자에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는 근로자가 각각 37.2%와 42.9%로 과반수가 넘지 않음
- 제도 인지율과 세부 내용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제도로 변경하는 의견도 유보적인 의견이 높음(보통 39.1%, 찬성 32.0%, 반대 29.0%)
- 응답자 특성별로 남자, 기혼, 고연령, 연말정산 경험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II-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조항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37.2%	62.8%
현행 고소득자 더 많은 공제 혜택 내용 인지 여부	42.9%	57.2%

- 세액공제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찬성함’(매우 찬성한다+다소 찬성한다)이 32.0%로 ‘반대함’(매우 반대한다+다소 반대한다)(29.0%) 대비 소폭 높게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이 40%에 가까우며 찬성과 반대 의견도 30% 내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제도 변경에 대해 정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

<표 VIII-8> 세액공제제도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8.7%	20.3%	39.1%	24.4%	7.6%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인지 여부는 ‘모르고 있다’가 56.1%로 ‘알고 있다’(44.0%)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46.1%), 30대(44.1%), 40대(43.8%), 연말정산 경험이 많은 근로자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지 여부는 ‘모르고 있다’가 67.5%로 ‘알고 있다’(32.5%)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35.6%), 기혼(34.4%), 50대 이상(38.0%), 연말정산 경험이 많은 근로자(37.6%)의 인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VIII-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및 조세수입 감소 내용 인지 여부

조항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규모 인지 여부	44.0%	56.0%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증가 인지 여부	32.5%	67.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높은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비용 및 제도의 복잡성 또한 문제로 선택됨
-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높음’ 의견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가맹점수수료, 신용불량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큼’(26.2%),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움’(27.9%),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지출 비용이 큼’(9.7%) 순으로 나타남

〈표 VIII-10〉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제도 내용	1순위	1+2순위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 높음	35.9%	62.4%
소득공제 혜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큼	26.2%	55.5%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움	27.9%	49.9%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지출 비용이 큼	9.7%	3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개편 선호 방안으로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함’ 의견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가맹점 수수료 높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체크·직불·선불카드와 공제율 격차 늘림’(21.2%),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동일하게 함’(13.3%),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인상함’(9.5%)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II-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편 선호 방안

제도 내용	1순위	1+2순위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함	41.2%	65.5%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非신용카드와 공제율 격차 늘림	21.2%	43.6%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동일하게 함	13.3%	29.6%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기준을 인상함	9.5%	22.2%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제한도 및 공제율 축소	7.2%	19.3%
정책목적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폐지, 추가재원 타 목적으로 사용함	6.8%	17.2%

Ⅸ. 정책방향 및 대안



IX. 정책방향 및 대안

1. 정책 방향

가. 타당성·효과성·효율성 평가의 정책 시사점

1) 타당성 평가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는 정책목표인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 혜택 편중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납세인원 및 세수가 급증했으나,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도 유지를 통한 추가적인 세원 투명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일몰 연장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효과성 평가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인원 및 세수실적이 증가하였고, 소득누락이 용이한 현금수입업종의 장부 및 증빙 신고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실적도 빠르게 증가함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이 2000년에 전년도에 비해 약 10~15% 증가하였고, 세수실적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함
-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6%에서 2015년 52%로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결제비율 또한 주요 국가보다 높음

- 그러나 최근에는 동 제도를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둔화되었고, 제도를 축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과표양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패턴이 약해짐
 - 2007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세수 증감률이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제도의 축소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소득공제제도의 특성상 공제문턱 및 공제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전체 근로자의 11%인 총급여 1.5~2천만원 구간 계층은 전체 조세지출규모의 4.4%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 근로자의 3.1%만을 차지하는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은 전체 조세지출규모의 10%의 혜택을 받음

- 2012년 이후 도입된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는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고, 고유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 및 대중교통 이용률에 유의한 변화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소비진작 정책으로 인하여 제도의 고유한 소비증가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용대상자 판정방식과 공제금액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해당 조항 도입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종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므로 제도의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소득별 공제 혜택 차이를 줄이는 방안과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폐지하여 단순화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축소, 공제문턱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소득수준별로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결정해야 함

3) 효율성 평가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0~2002년 사이에는 뚜렷이 관찰되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효과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 사용률이 공제제도 변경(공제한도,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변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이용실적을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는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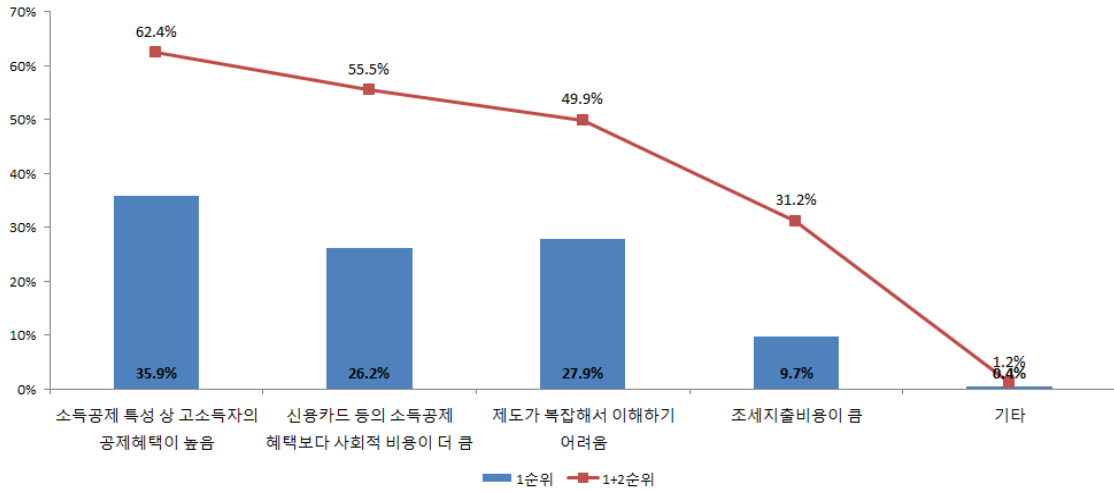
-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가맹점수수료가 낮고 채무불이행자 발생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체크카드 등의 직불형 카드 사용비중을 높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인해 2015년 한 해에만 2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 비용이 발생하였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그 밖의 채무불이행자 발생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발생함

나.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 시사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설문조사 결과,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득공제의 특성상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35.9%를 차지하였고, 2순위까지 고려해도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제도의 혜택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견이 26%,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7%이고, 1+2순위를 모두 고려하면 각각 55.5%, 49.9%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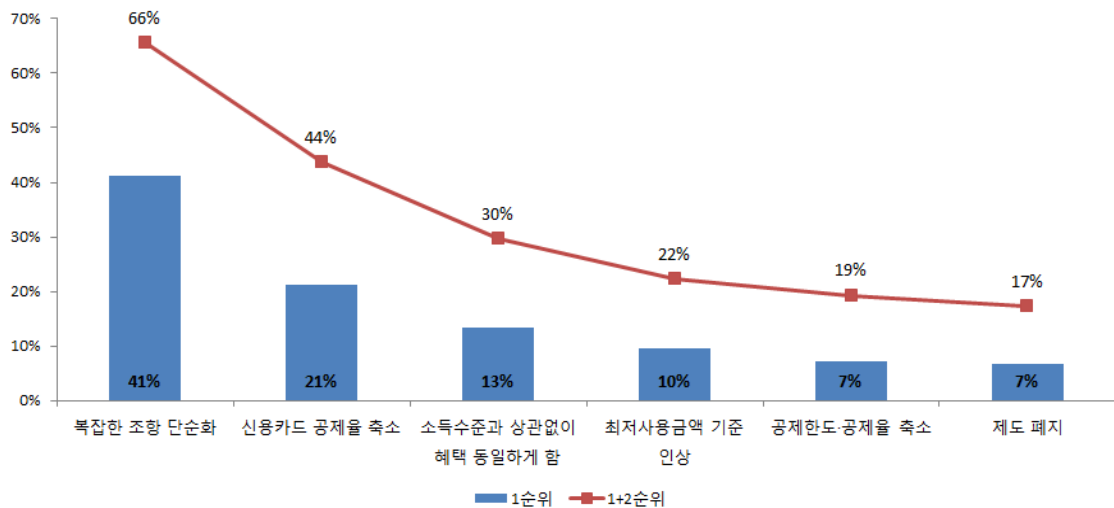
[그림 IX-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제도의 개편 방안 중 가장 선호되는 방안은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단순화한다’가 1순위 41.2%, 1+2순위 65.5%로 가장 높고, ‘가맹점수수료가 높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가 1순위 21.2%, 1+2순위 43.6%로 그다음으로 높음
- 그 외에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동일하게 함(1순위 13.3%, 2순위 29.6%), 최저사용금액 기준 인상(1순위 9.5%, 2순위 22.2%) 등의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X-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 선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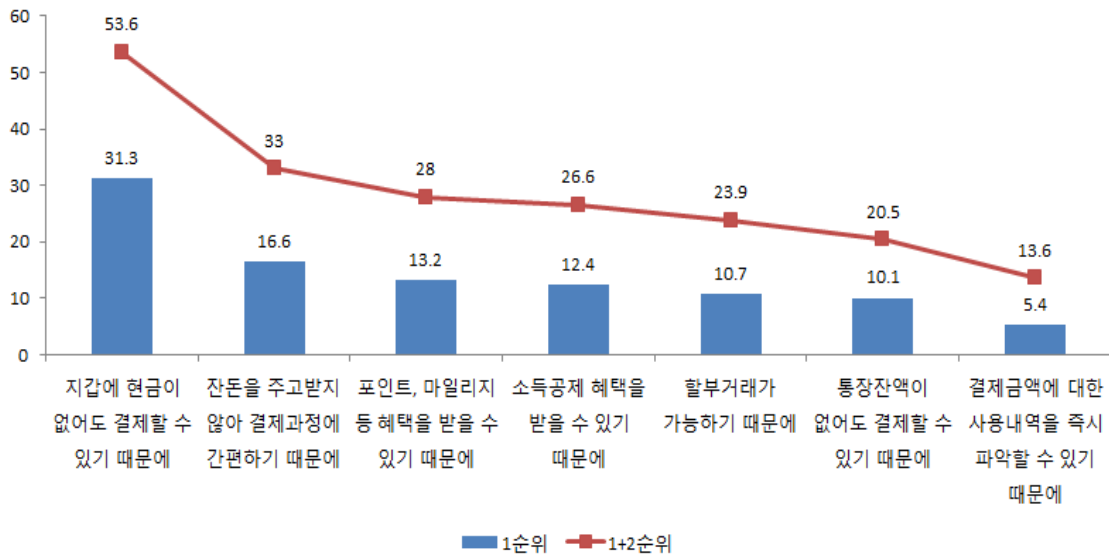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축소 시 예상 효과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결제 시 편의성과 관련된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가 약 47%로 가장 높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는 12.4%로 네 번째로 높았음

-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으로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31.3%)’,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16.6%)’로 결제과정의 편의성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음
- 또한,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13.2), 할부거래 가능(10.7%) 등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선택도 24%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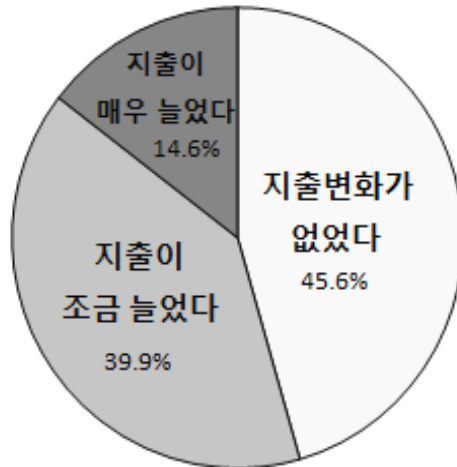
[그림 IX-3]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위의 설문 결과로 볼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변경 시 소비·지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록 그 비율은 12.4%에 불과하지만 제도 변경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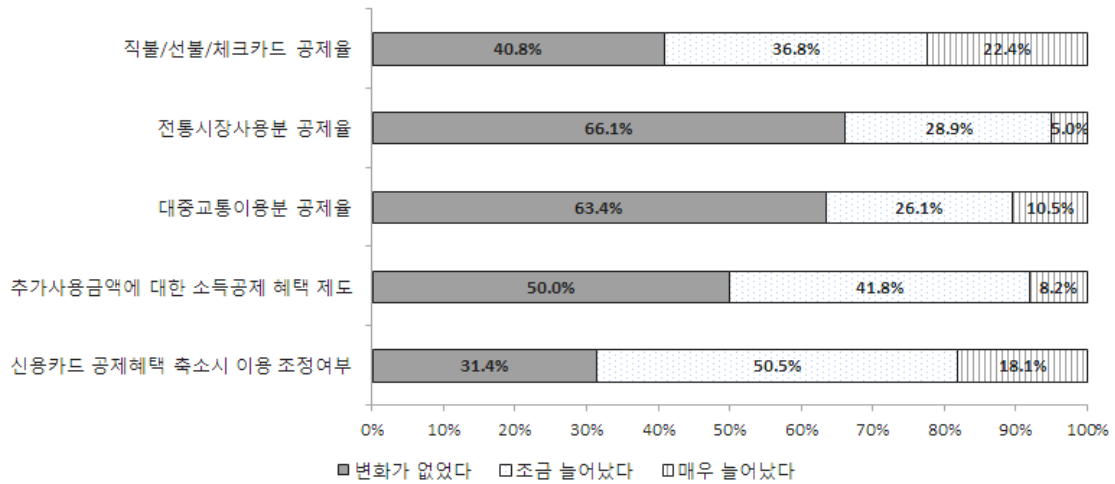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지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39.9%),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14.6%) 순임

[그림 IX-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도로 인한 소비·지출 영향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전년 대비 카드 사용금액 초과로 인한 추가소득공제 등의 조항의 추가로 인하여 카드 사용 및 소비가 더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공제 및 전년 대비 카드사용금액 초과로 인한 추가 소득공제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공제율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비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12.4%)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공제 혜택 축소 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81%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18.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그림 IX-5] 공제제도 조항 추가에 따른 소비 변화(조항을 알고 있는 응답자 대상)



- 종합적으로 볼 때, 제도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제도 유지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신용카드의 주된 사용 이유는 편의성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축소 시 신용카드의 사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부적인 추가공제율 조항 또한 축소 혹은 폐지하더라도 소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그 비율은 12.4%로 높지 않은 편이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제도 유지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 재설계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2. 정책 대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타당성·효과성·효율성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동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 경기 상황에서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이 예상된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출구전략을 모색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타당성·효과성·효율성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함
 - 제도의 단순화: 설문조사의 제도의 개선방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된 방안으로, 실효성이 없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제도의 효율성 제고: 제도 유지를 통한 과표양성화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도를 축소하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제도의 형평성 개선: 소득공제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므로, 공제한도 인하 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감세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함

가. 제도의 단순화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제도는 각각 전통시장 소비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인지도 및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표 VI-31>, <표 VI-36>에 따르면 본 제도 도입 이후의 전통시장 소비 및 대중교통 이용이 유지 또는 감소함
 - <표 VIII-4>에 따르면 두 제도의 인지도 및 제도로 인한 소비 증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므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조항 폐지 시 소득별 귀착 효과를 파악하여 이후 정책 설정에 참고하고자 함

1) 1안: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은 2012년부터 적용되었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하면 총급여 5억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재기준 대비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나, 총급여 5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적게 감소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 중 총급여 5억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사용분 조항 폐지 시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은 2013년부터 적용되었고,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한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하면 총급여 5억원 이하 구간에서 대체로 공제 혜택이 4~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 중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증가하였고, 총급여 3억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다)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모두 폐지하면,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소득 구간 1억~5억원 이하에서 공제 혜택이 많이 감소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 대비 공제 혜택이 약 4~7%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총급여 3억~5억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감소함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시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과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감소함

-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할 때보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시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1> 공제조항 폐지에 따른 공제 혜택 변화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조항 폐지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조항 폐지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조항 폐지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088	-4	15,433	-8	14,679	-13
1.5천만 이하	42,662	-4	41,569	-6	39,912	-10
2천만 이하	93,574	-4	91,322	-6	87,395	-10
3천만 이하	211,426	-4	206,987	-6	197,934	-10
4천만 이하	265,315	-4	262,351	-5	249,989	-10
4.5천만 이하	144,660	-5	143,713	-5	136,458	-10
5천만 이하	139,132	-5	138,033	-5	130,879	-10
6천만 이하	231,620	-5	229,778	-6	217,281	-11
8천만 이하	338,015	-5	332,459	-7	313,047	-12
1억 이하	158,090	-6	155,283	-7	145,221	-13
2억 이하	171,811	-6	167,475	-8	155,876	-15
3억 이하	7,716	-6	7,625	-7	7,084	-14
5억 이하	1,516	-7	1,570	-4	1,419	-13
10억 이하	217	-5	222	-3	211	-8
10억 초과	25	-1	25	0	25	-1
합계	1,821,866	-5	1,793,844	-6	1,697,410	-1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그림 IX - 6]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금액이 추가 공제금액²⁸⁾을 제외한 전체 공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7%로, 추가공제금액은 전체 공제금액의 약 4~5%를 차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제 혜택 감소분 중 약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조항을 모두 폐지했을 때 총급여 5억원 이하 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1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추가공제금액이 전체 공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인 것으로 확인됨

28) $\min[\text{한도초과금액}, \text{전통시장 사용분} \times 0.3 + \text{대중교통 이용분} \times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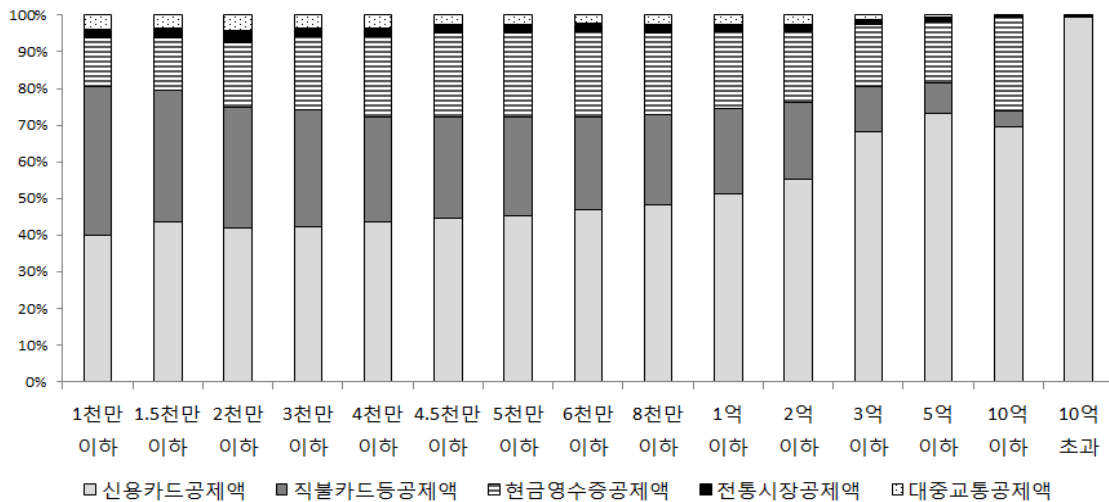
<표 IX-2> 소득별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신용카드 소득공제수혜자 대상)

(단위: 원)

총급여액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
1천만 이하	842,541	855,301	273,541	46,553	85,989
1.5천만 이하	1,141,903	933,218	375,592	60,346	99,351
2천만 이하	1,261,453	992,576	526,902	96,596	127,902
3천만 이하	1,585,821	1,192,906	740,319	85,842	134,995
4천만 이하	2,112,092	1,391,931	1,055,146	108,139	173,618
4.5천만 이하	2,482,031	1,506,905	1,280,857	122,758	138,661
5천만 이하	2,721,651	1,600,347	1,384,522	131,037	148,939
6천만 이하	3,056,064	1,642,863	1,498,794	142,264	159,489
8천만 이하	3,555,033	1,828,971	1,630,873	154,846	196,192
1억 이하	4,439,573	2,002,725	1,806,409	178,540	222,006
2억 이하	5,652,485	2,142,855	1,977,059	190,562	254,870
3억 이하	11,116,351	2,009,101	2,736,284	191,368	222,501
5억 이하	16,779,818	1,893,702	3,772,507	264,062	162,880
10억 이하	29,399,658	1,751,253	10,763,192	194,900	66,216
10억 초과	73,160,242	124,848	322,235	33,900	0

주: 1. 각 공제액은 해당 항목의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수치임(ex. 신용카드공제액=신용카드사용액×0.15)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그림 IX-6] 현행 제도에서 각 공제항목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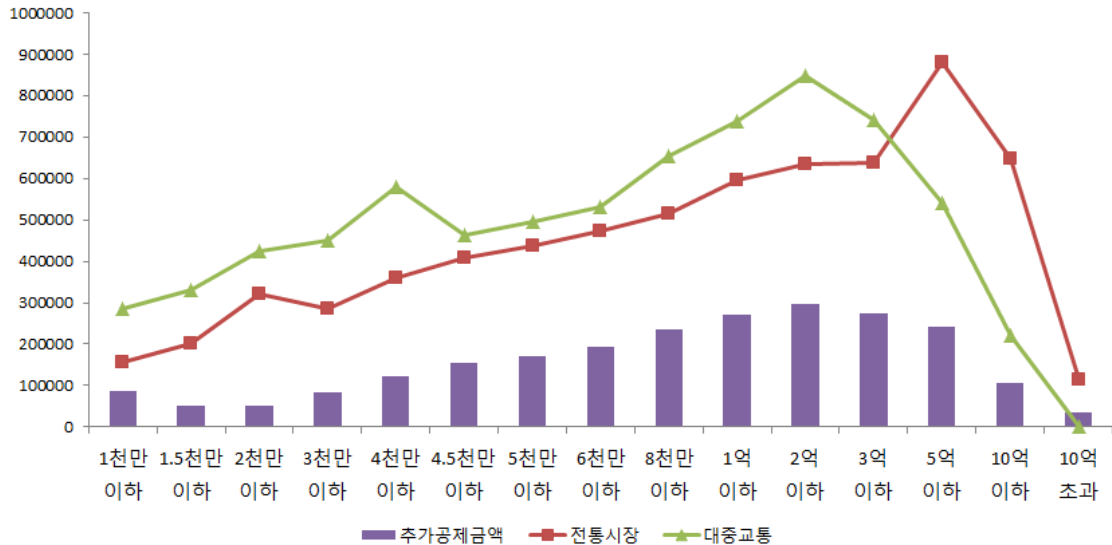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공제액, 직불카드공제액, 현금영수증공제액, 전통시장공제액, 대중교통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 총급여 8천만원~5억원 구간에서 공제 혜택 감소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제제도 폐지로 인하여 추가공제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추가공제금액의 추이를 보면, 총급여 2천만원 이하까지는 감소하였다가, 3억원 이하의 소득구간까지는 계속 증가함
- 5억원 이상의 소득구간 추이를 보면 오히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이전 소득구간보다 적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 동 조항을 폐지하여도 공제 혜택이 거의 변하지 않음

[그림 IX-7] 소득구간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공제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추이(소득공제수혜자 대상)

(단위: 원)



- 주: 1. 추가공제금액: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값을 200만원 한도로 공제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2) 2안: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 폐지 및 공제한도 11만원 인상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제도 하에서 개인 추가공제금액의 평균금액인 11만원만큼 공제한도를 인상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의 소득별 공제 혜택을 조사함

-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액을 더한 금액(각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 따라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하면 개인별 평균 11만원의 공제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제한도를 11만원 인상하여 소득구간별 공제 혜택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조항을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인상할 경우, 총급여 1.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공제 혜택은 공제조항을 폐지했을 때와 차이가 없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상 소득구간의 공제 혜택은 공제조항을 폐지했을 때보다 증가함
- 현행 제도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의 명목적인 한도는 200만원이나, [그림 IX - 7]의 소득구간별 추가공제금액 추이를 보면 추가공제금액이 가장 높은 소득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추가공제금액이 3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개인별로는 평균 11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음
 - 공제한도를 311만원으로 늘리게 되면, 신용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므로 이미 공제한도를 초과한 근로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
 - 그리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높은 소득구간 1.5천만원 이하의 공제 혜택은 공제한도를 늘려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공제한도 초과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 즉,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조항을 폐지하면서 1인당 평균 해당 공제액만큼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통한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3> 공제조항 폐지 및 공제한도 11만원 인상 시 공제 혜택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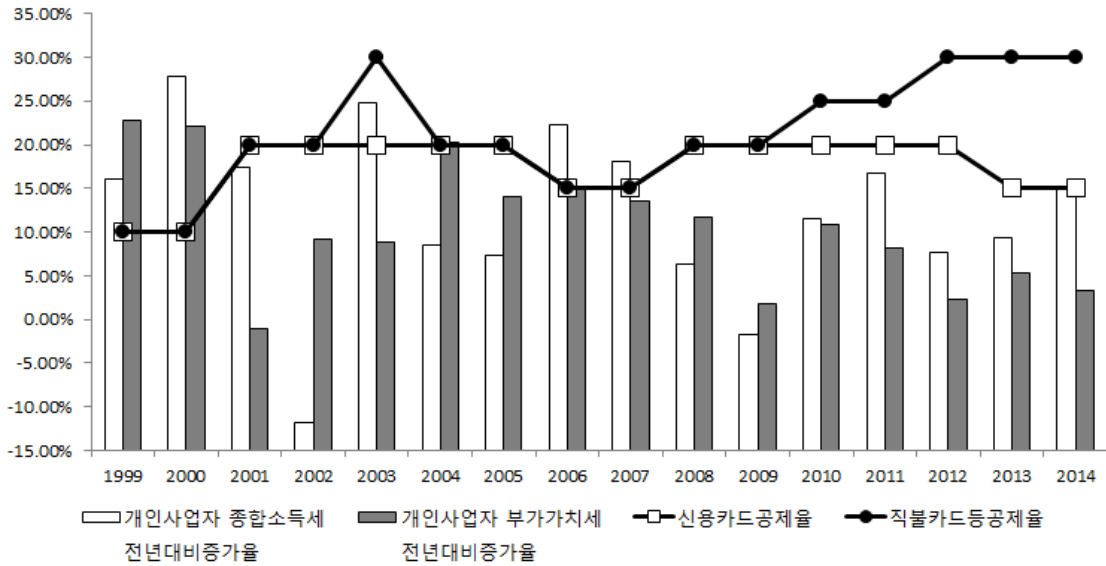
총급여액	현재기준	(1안)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조항 폐지		(2안)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조항 폐지+공제한도 311만원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828	14,679	-13	14,679	-13
1.5천만 이하	44,305	39,912	-10	39,912	-10
2천만 이하	97,458	87,395	-10	88,791	-9
3천만 이하	220,363	197,934	-10	202,242	-9
4천만 이하	277,401	249,989	-10	256,947	-8
4.5천만 이하	151,724	136,458	-10	140,731	-8
5천만 이하	146,041	130,879	-10	135,222	-8
6천만 이하	243,610	217,281	-11	224,762	-9
8천만 이하	356,636	313,047	-12	324,284	-10
1억 이하	167,599	145,221	-13	150,646	-11
2억 이하	182,770	155,876	-15	161,792	-12
3억 이하	8,225	7,084	-14	7,360	-11
5억 이하	1,636	1,419	-13	1,474	-11
10억 이하	228	211	-8	219	-5
10억 초과	25	25	-1	26	3
합계	1,914,850	1,697,410	-11	1,749,086	-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나. 제도의 효율성 제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지출비용은 약 2조원으로 높은 편에 속하나, 제도의 도입 목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최근에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 보다는 카드 사용의 편의성인 것으로 파악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과 2000년대에 약 20%씩 증가했으나, 공제율이 증가한 2001년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이후 2008년에 공제율이 증가하였을 때에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신용카드 공제율 변동과 관련 없이 세수 증가율이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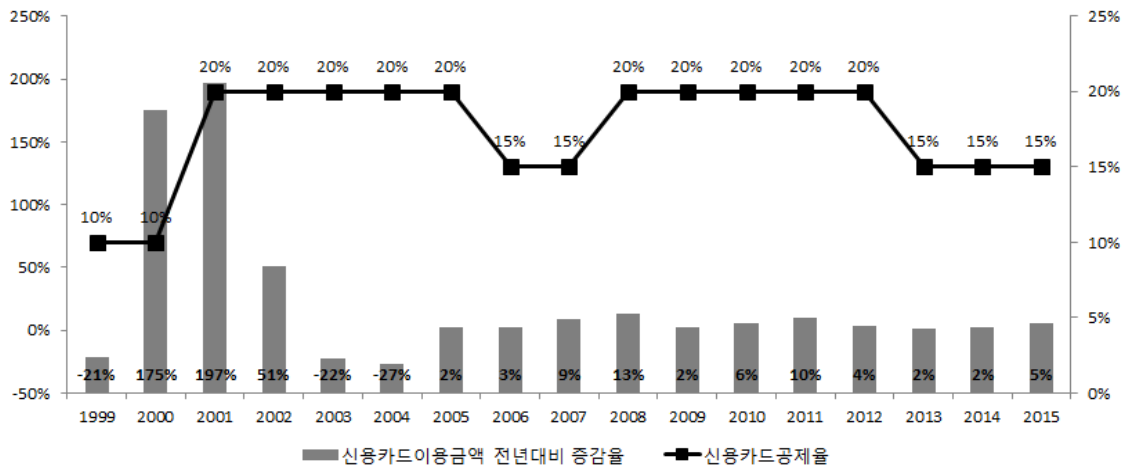
[그림 IX-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전년대비 증가율 및 공제율 변동



주: 공제율이 12월에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는 경우 그다음 해부터 공제율이 변경된 것으로 적용함

-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율도 제도 초기인 2000년과 2001년에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증감과 관련 없이 매년 10% 내외로 꾸준히 증가함
- 2006년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감소했을 때 신용카드 이용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후에도 신용카드 공제율의 증가 및 감소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그림 IX-9]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신용카드 공제율



주: 공제율이 12월에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는 경우 이듬 해에 공제율이 변경된 것으로 적용함

- [그림 VIII-8]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 및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제도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함

1) 1안: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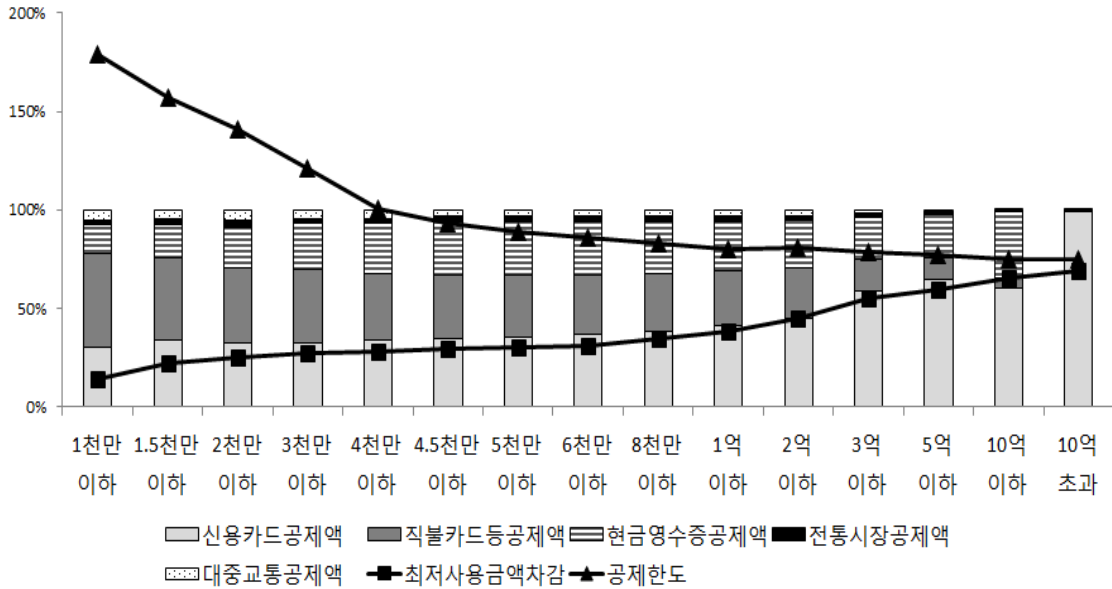
-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가맹점수수료 및 채무불이행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춰 제도의 조세지출 비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이용을 유도함
-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직불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한해 공제율의 하향조정을 제안²⁹⁾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10%와 5%로 하향 조정하여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하하게 되면 1천만~2천만원 구간의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적게 감소함

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로 인하

- 공제율을 10%로 인하했을 때, 총급여 1천만~2천만원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약 8% 정도 감소하고, 총급여 3억원 이상 구간의 공제 혜택은 거의 감소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인하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큰 수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공제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큼

29)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그림 IX-10]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0% 적용 시 소득별 공제금액 비중 추이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주: 1. 각 공제액은 공제분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준 값임(ex. 신용카드공제액=신용카드공제분×0.15)
 2.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 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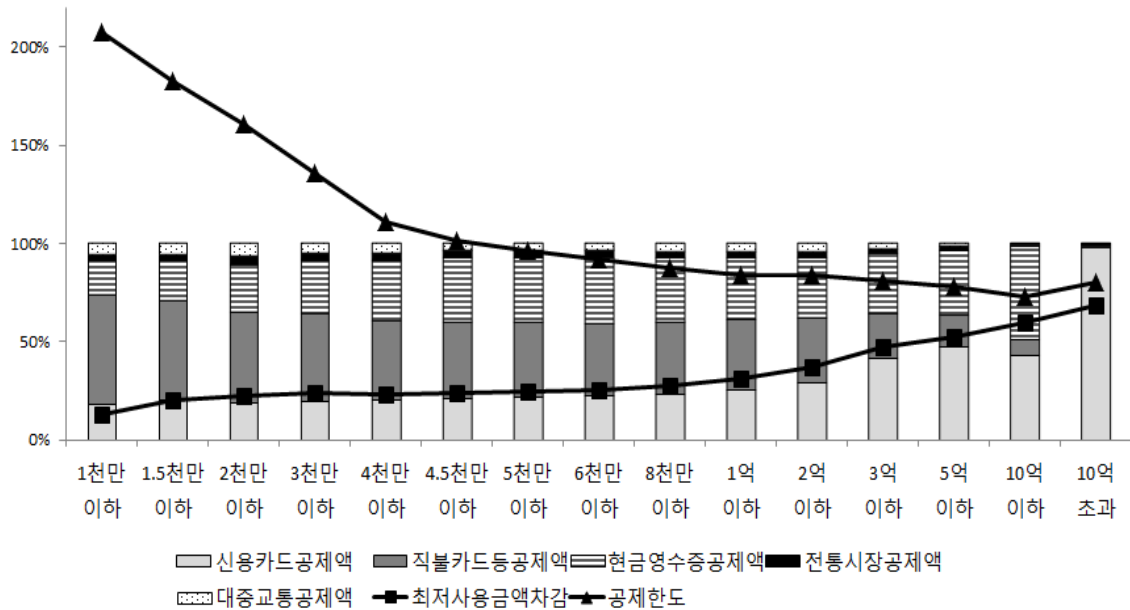
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5%로 인하

- 공제율을 5%로 인하했을 때에는 총급여 1천만~2천만원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급여 4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 혜택 감소 비율은 10% 이내로, 소득구간별로 감소율 차이가 큼
- 공제율을 5%로 인하하여 총급여 5천만원 이상 구간의 평균 공제금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제율이 인하되더라도 동 소득구간의 공제 혜택이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5%로 적용할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구간은 총급여 5천만원 이상 구간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 혜택 감소비율은 최소 10~19%이지만, 총급여 5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 혜택 감소비율은 10% 이내로 낮은 편에 속함
- 공제율을 5%로 인소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도 차감되므로 공제 혜택이 더 크게 감소함

- 저소득층의 경우 공제율을 인하한 만큼 공제 혜택도 감소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더라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함

[그림 IX-11]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5% 적용 시 소득별 공제금액 비중 추이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표 IX-4>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현재기준 (공제율 15%)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0%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5%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828	16,050	-5	14,765	-12
1.5천만 이하	44,305	40,692	-8	35,861	-19
2천만 이하	97,458	89,405	-8	79,238	-19
3천만 이하	220,363	206,306	-6	187,309	-15
4천만 이하	277,401	263,856	-5	243,512	-12
4.5천만 이하	151,724	145,691	-4	135,940	-10
5천만 이하	146,041	140,832	-4	131,766	-10
6천만 이하	243,610	235,736	-3	221,428	-9
8천만 이하	356,636	347,303	-3	329,329	-8
1억 이하	167,599	164,034	-2	156,007	-7
2억 이하	182,770	179,445	-2	171,242	-6
3억 이하	8,225	8,063	-2	7,661	-7
5억 이하	1,636	1,629	0	1,542	-6
10억 이하	228	225	-1	218	-5
10억 초과	25	25	0	25	0
합계	1,914,850	1,839,292	-5	1,715,844	-12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2) 2안: 최저사용금액³⁰⁾ 인상

- 최저사용금액은 제도 도입 시 총급여액의 10%였다가, 2005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5%p씩 증가하여 현재는 총급여액의 25%임
 - 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사용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감소함
 - 본 분석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0%, 35%로 조정했을 때의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를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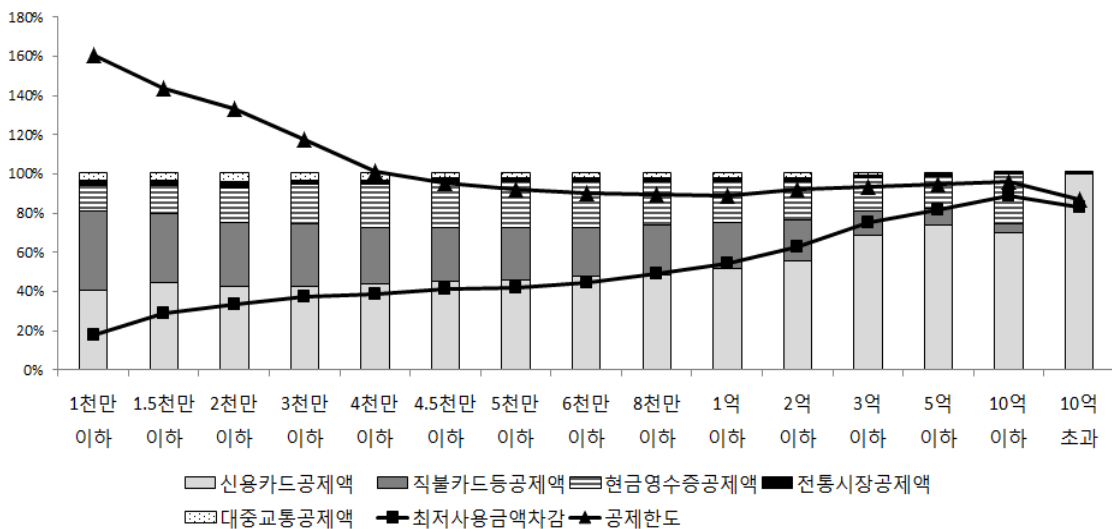
30)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초과해야 하는 금액, 현 제도에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줌

가)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0%로 인상

-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0%로 인상할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들고, 총급여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20% 이상 감소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10% 이내 규모로 감소한 반면,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10%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조세지출규모는 약 11% 감소함

-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이 모두 차감되어 직불카드 등 사용분까지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0%로 인상 시, 총급여 6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직불카드 등 사용분도 최저사용금액으로 차감되었고, 총급여액의 35%로 인상 시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이 최저사용금액으로 차감됨
 - 그리하여 총급여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구간별 평균 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함

[그림 IX-12]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0%로 인상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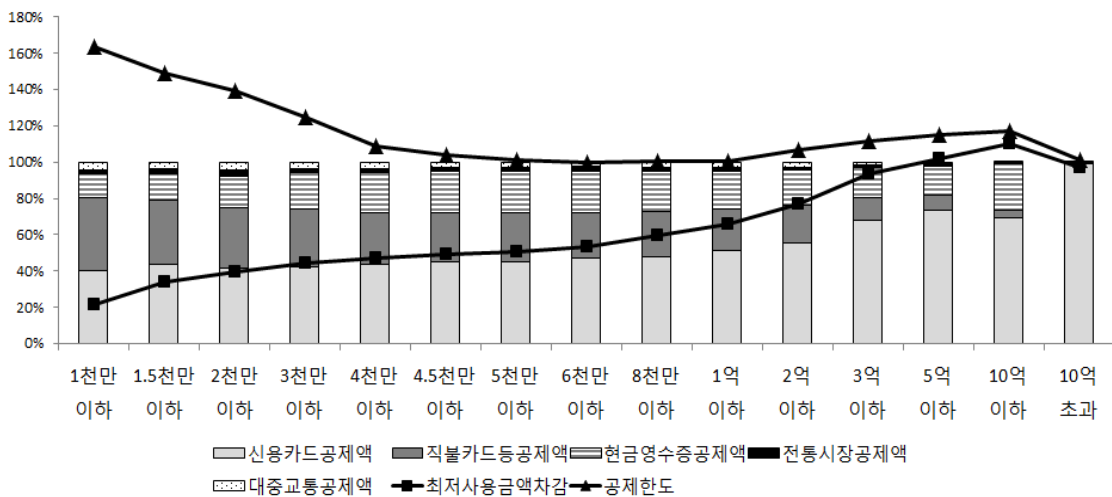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나)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5%로 인상

-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35%로 인상한 경우에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크게 감소함
 - 특히 총급여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60% 가까이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20% 이내로 감소함

- 대부분의 구간에서 소득구간별 평균 소득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못하여 공제 혜택이 이전 소득구간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30%일 때에는 총급여 3천만원 이상이면 소득구간별 평균 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35%로 조정되었을 때에는 소득구간별 평균 소득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특히 총급여 1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평균 소득공제금액이 공제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변경되어 공제 혜택 감소폭도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IX-13]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5%로 인상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표 IX-5> 최저사용금액 인상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현재기준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35%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828	16,164	-4	15,508	-8
1.5천만 이하	44,305	41,310	-7	38,402	-13
2천만 이하	97,458	89,165	-9	81,186	-17
3천만 이하	220,363	199,833	-9	179,704	-18
4천만 이하	277,401	250,770	-10	223,848	-19
4.5천만 이하	151,724	136,987	-10	121,719	-20
5천만 이하	146,041	131,701	-10	116,667	-20
6천만 이하	243,610	218,145	-10	191,134	-22
8천만 이하	356,636	313,089	-12	266,372	-25
1억 이하	167,599	143,090	-15	117,076	-30
2억 이하	182,770	146,390	-20	110,699	-39
3억 이하	8,225	5,526	-33	3,617	-56
5억 이하	1,636	949	-42	645	-61
10억 이하	228	159	-30	87	-62
10억 초과	25	25	0	19	-25
합계	1,914,850	1,693,302	-11	1,466,682	-2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다. 제도의 형평성 개선

-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공제 혜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한도 인하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표 VII-4>에 따르면,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된 2010~2011년에 조세지출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제한도 초과 시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중 적은 값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조항(이하 추가공제한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조세지출규모가 약 2조원까지 증가함

- 공제한도와 추가공제한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한도가 100만원씩 인하여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및 공제한도 200만원 적용 시’, ‘공제한도 150만원 적용 시’, ‘추가공제한도 폐지 시’의 소득별 공제 혜택을 조사함
- 소득공제제도는 누진적인 소득세율로 인하여 경감세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고소득자의 혜택 편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1안: 공제한도 200만원·추가공제한도 100만원으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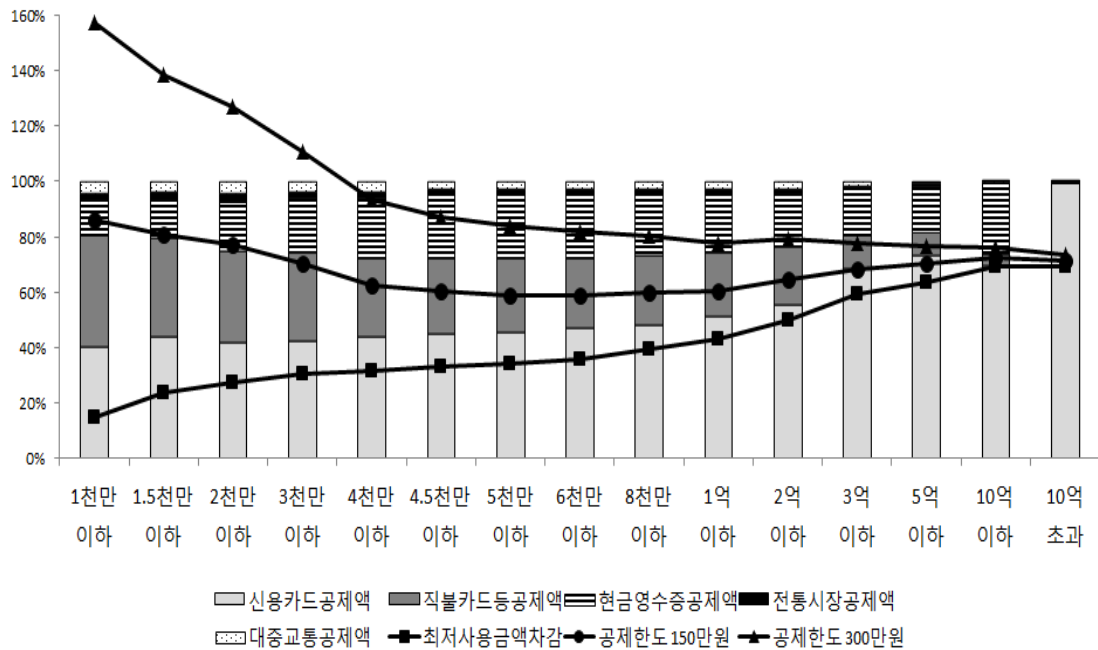
- 추가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인하한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총급여 1천만원~1.5천만원 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10% 감소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여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감소율이 25%를 초과함
 - 추가공제한도는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추가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인하해도 공제금액에 변화는 없으므로,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인하했을 때의 효과와 거의 동일함

2) 2안: 공제한도 150만원으로 인하

- 추가공제한도는 유지하되 공제한도를 150만원으로 인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은 더 많이 감소하여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현재기준 대비 약 50%의 공제 혜택이 감소함
 - 공제한도를 150만원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추가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인하했을 때와 추가공제금액을 폐지했을 때보다 50만원의 공제액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이 다른 방안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부터 공제 혜택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그에 비해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 혜택은 4%밖에 감소하지 않아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제한도가 인하되면, 공제한도를 초과한 사람의 공제 혜택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공제 혜택은 그에 비해 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 감소율이 높아짐
- 소득공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제한도 변경에 따른 공제액을 살펴보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일 때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별 평균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공제한도가 150만원일 때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평균 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함
- 따라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한도 인하로 인한 공제 혜택의 감소 비율이 나머지 구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IX-14] 공제한도 150만원으로 감소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
(소득공제 수혜자 대상)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3) 3안: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상위 10%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함
 -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4.6천~8.8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8.8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4.6천~8.8천만원 이하 구간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7.5%를 차지하며, 1인당 총급여액은 대략 7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과세표준 4천~4.6천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약 6,900만원대이므로, 과세표준 4.6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은 약 7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8.8천만~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전체근로자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총급여액은 약 1억 1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과세표준 8천만~8.8천만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1억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최소금액인 과세표준 8.8천만원 수준에서의 총급여액은 약 1억 2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은 전체근로자의 약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대략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총급여액 상위 10% 구간에 속하는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한도를 인하하여 고소득층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완화함
 - 전체 근로소득자의 7.5%를 차지하는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이하 구간의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2%를 차지하는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한도를 200만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표 IX-6> 과세표준별 적용세율(2014년 기준)

(단위: 만원, %)

과세표준	1인당 평균 총급여액 (B/A)	소득세율	인원			적용 공제한도
			인원수(A)	비율	누적비율	
1천만 이하	1,577	6	6,469,253	45.59	45.59	300만원
1.2천만 이하	2,640	6	845,052	5.96	51.54	300만원
3천만 이하	3,895	15	4,179,201	29.45	81.00	300만원
4천만 이하	5,983	15	951,434	6.70	87.70	300만원
4.6천만 이하	6,911	15	397,886	2.80	90.50	300만원
6천만 이하	7,932	24	583,861	4.11	94.62	250만원
7천만 이하	9,351	24	239,837	1.69	96.31	250만원
8천만 이하	10,466	24	160,933	1.13	97.44	250만원
8.8천만 이하	11,417	24	90,098	0.63	98.08	250만원
1억 이하	12,389	35	87,684	0.62	98.70	200만원
2억 이하	16,051	35~38	145,011	1.02	99.72	200만원
3억 이하	27,239	38	22,435	0.16	99.88	200만원
5억 이하	41,185	38	11,332	0.08	99.96	200만원
10억 이하	71,774	38	4,690	0.03	99.99	200만원
10억 초과	196,881	38	1,646	0.01	100.00	200만원
총합계			14,190,353	10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 경우,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2014년 기준과 동일하나, 총급여 6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감소하여 동 제도로 인한 전체 조세지출규모는 기존에 비하여 약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6천만~8천만원 구간의 공제 혜택은 약 5%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이 더 감소하여 총급여 5억원 이상의 경우 2014년의 공제 혜택보다 약 25% 이상 감소함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구간의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안에 비하여 전체 조세지출액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IX-7> 공제한도 인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1안) 초과공제한도 100만원, 공제한도 200만원		(2안) 공제한도 150만원		(3안)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 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821	0	16,167	-4	16,828	0
1.5천만 이하	40,024	-10	34,629	-22	44,305	0
2천만 이하	82,914	-15	71,422	-27	97,458	0
3천만 이하	180,560	-18	152,109	-31	220,363	0
4천만 이하	217,955	-21	179,860	-35	277,401	0
4.5천만 이하	116,562	-23	95,306	-37	151,724	0
5천만 이하	111,178	-24	90,743	-38	146,041	0
6천만 이하	184,371	-24	150,421	-38	243,610	0
8천만 이하	268,803	-25	220,129	-38	340,023	-5
1억 이하	125,806	-25	103,513	-38	148,034	-12
2억 이하	137,360	-25	113,828	-38	152,438	-17
3억 이하	6,153	-25	5,101	-38	6,204	-25
5억 이하	1,231	-25	1,044	-36	1,240	-24
10억 이하	171	-25	136	-40	171	-25
10억 초과	17	-33	13	-49	17	-33
합계	1,489,926	-21	1,234,422	-34	1,845,856	-2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4) 4안: 세액공제로의 전환

- 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공제제도하에서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감세액이 동일함
- 본 분석에서는 ‘VI-2-다. 세액공제로 전환 시 공제 혜택’의 공제문턱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공제율을 차등 있게 적용한 방안 1과 2를 현행 제도의 공제 혜택과 소득별로 비교함

□ 세액공제로 전환 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과세표준이 0인 과세미달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시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과세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 약 350만명 중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는 3만여명으로, 전체의 1% 미만을 차지함³¹⁾

-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과세미달자 중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는 3만여명의 경우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여전히 세부담이 영(零)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총급여 1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로 인하여 큰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제도 전환 시에도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 [방안 1] 신용카드 공제율 1%, 직불카드 등 공제율 2%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 1%, 직불카드 등 공제율 2%로 적용 시, 총급여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최대 62%까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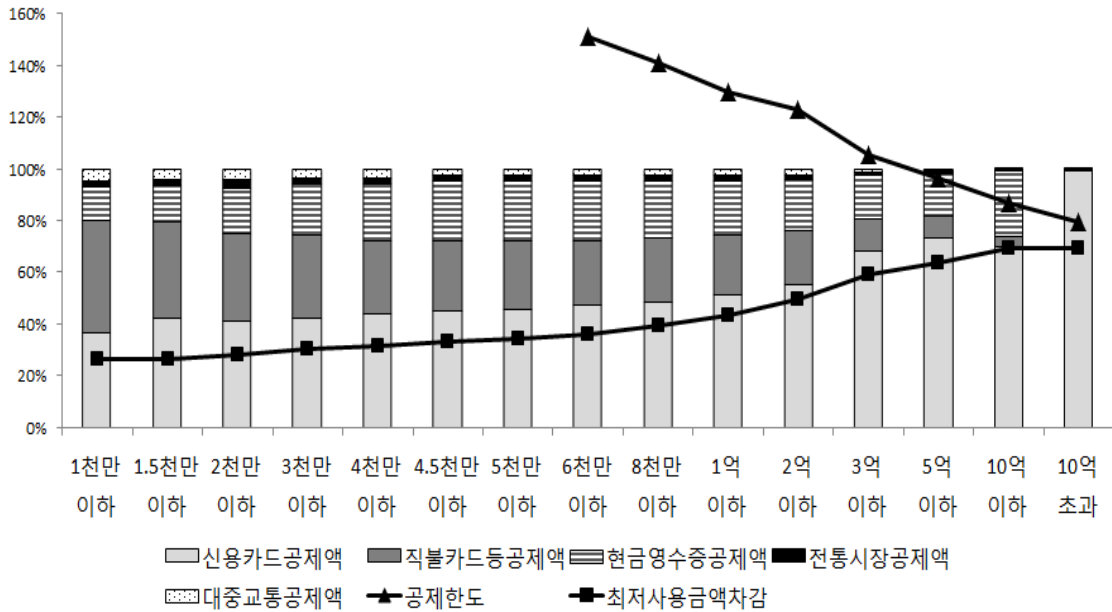
□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분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급여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제금액 초과자가 급격히 감소함

○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나머지 항목에 적용되는 공제액의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총급여액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전체 공제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참고

- 총급여 3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급여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제도보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비율이 낮음

[그림 IX-15] 세액공제[방안 1]로 전환 시 공제금액 비중 추이(공제수혜자 대상)



- 주: 1. 각 공제액의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액, 직불카드 등 공제액, 현금영수증 공제액, 전통시장 공제액, 대중교통 공제액의 합에서 각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전년도 대비 추가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은 적용하지 못함(관련조항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나) [방안 2] 신용카드 공제율 0.5%, 직불카드 등 공제율 1%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 0.5%, 직불카드 등 공제율 1% 적용 시 전체 조세지출액이 지금보다 약 52% 정도 감소하고, 모든 총급여 구간에서 공제 혜택이 30% 이상 감소함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총급여 10억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감소했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함

<표 IX-8> 세액공제로 전환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단위: 백만원, %)

총급여액	현재기준 (소득공제)	[방안 1]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율: 1% 직불카드 등 공제율 ¹⁾ : 2%		[방안 2]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율: 0.5% 직불카드 등 공제율: 1%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증감률
1천만 이하	16,828	6,059	-64	3,057	-82
1.5천만 이하	44,305	45,633	3	23,144	-48
2천만 이하	97,458	115,116	18	58,655	-40
3천만 이하	220,363	296,644	35	152,611	-31
4천만 이하	277,401	304,775	10	159,084	-43
4.5천만 이하	151,724	139,856	-8	73,676	-51
5천만 이하	146,041	125,399	-14	66,607	-54
6천만 이하	243,610	213,867	-12	114,336	-53
8천만 이하	356,636	270,520	-24	146,222	-59
1억 이하	167,599	113,482	-32	62,715	-63
2억 이하	182,770	94,111	-49	53,089	-71
3억 이하	8,225	3,249	-61	2,043	-75
5억 이하	1,636	621	-62	437	-73
10억 이하	228	95	-58	83	-64
10억 초과	25	11	-54	11	-54
합계	1,914,850	1,729,438	-10	915,770	-52

주: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라. 정책적 시사점

- 제도의 단순화, 제도의 효율성 제고, 제도의 형평성 개선의 세 측면에서 제도 변경 시 소득수준별 공제 혜택 변화 추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제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제제도의 단순화 측면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 조항 폐지 이후의 공제 혜택은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지만,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공제율 인하와 최저사용금액 인상 방안을 각각 분석함
 - 공제율을 인하하면 소득이 낮은 구간의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사용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

하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 감소폭 차이가 공제제도 축소 방안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공제 혜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제한도 인하,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및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함
 - 공제한도를 인하하는 경우는 공제한도 및 공제한도 초과 시 적용되는 초과공제금액의 한도도 함께 고려한 결과, 공제한도 인하 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여 인하하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많이 감소하나 차등화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이 낮아 전체 조세지출규모는 약 2% 정도만 감소함
 -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더 많이 감소함

<표 IX-9> 제도별 공제 혜택 감소율

제도		총급여액별 공제 혜택 감소율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전체	
제도 단순화	전통시장공제율 폐지	4%	4~5%	5%	5~6%	1~7%	5%	
	대중교통공제율 폐지	6~8%	5%	6~7%	7~8%	0~7%	6%	
	모두 폐지	10~13%	10%	10~12%	13~15%	1~14%	11%	
제도 효율성 제고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공제율 10%)	11~17%	10~15%	9%	8%	0~7%	11%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공제율 5%)	12~19%	10~15%	8~9%	6~7%	0~6%	12%	
	최저사용금액 인상(총급여액 30%)	4~9%	9~10%	10~12%	15~20%	0~42%	11%	
	최저사용금액 인상(총급여액 35%)	8~17%	18~20%	20~25%	30~39%	24~62%	23%	
고소득층 공제 혜택 집중 해결	공제한도 인하	추가공제한도 200→100만원, 공제한도 300→200만원	0~15%	18~24%	24~25%	25%	25~33%	21%
		공제한도 300→150만원	4~27%	31~38%	38%	38%	38~49%	34%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0%	0%	0~5%	12~17%	25~33%	2%
	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공제율 1% 그 외 공제율 ¹⁾ 2% 공제한도 50만원	-7~67%	-21~2%	23~35%	44~60%	54~74%	21%
		신용카드공제율 0.5% 그 외 공제율 1% 공제한도 50만원	40~82%	31~54%	53~59%	63~71%	54~75%	52%

주: 1) 직불카드 등 공제율, 현금영수증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고려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제도는 행정적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대체로 저소득층에서는 두 제도로 인한 공제비율이 다른 소득구간보다 높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함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를 모두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은 공제금액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추가공제금액이 하락하여 소득수준별로 공제 혜택의 감소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소득공제율 인하 방안은 여러 안 중 공제 혜택의 감소가 가장 역진적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의 여러 사회적 비용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만 단독으로 인하하였으나, 신용카드 공제액의 전체 대비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함
 -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으로 직불카드 등 공제율을 인상한 경우, 직불카드 사용률이 신용카드 사용률보다 높은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 혜택 감소분이 하락하는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남
 -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제율제도 변경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표 IX-10〉 신용카드 공제율 하락 및 직불카드 등 공제율 인상 시 소득별 공제 혜택 변화

(단위: 백만원)

총급여액	현재기준	신용카드공제율: 10% 직불카드등 공제율 ¹⁾ : 35%		신용카드공제율: 5% 직불카드등 공제율 ¹⁾ : 40%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공제 혜택	현재기준대비
1천만 이하	16,828	24,649	46%	24,294	44%
1.5천만 이하	44,305	40,488	-9%	38,853	-12%
2천만 이하	97,458	93,175	-4%	89,525	-8%
3천만 이하	220,363	217,699	-1%	211,428	-4%
4천만 이하	277,401	275,700	-1%	268,804	-3%
4.5천만 이하	151,724	151,154	0%	147,873	-3%
5천만 이하	146,041	145,522	0%	142,288	-3%
6천만 이하	243,610	242,908	0%	237,734	-2%
8천만 이하	356,636	356,572	0%	350,628	-2%
1억 이하	167,599	167,726	0%	164,835	-2%
2억 이하	182,770	183,155	0%	180,198	-1%
3억 이하	8,225	8,189	0%	7,987	-3%
5억 이하	1,636	1,648	1%	1,610	-2%
10억 이하	228	230	1%	227	0%
10억 초과	25	25	0%	25	0%
합계	1,914,850	1,908,840	0%	1,866,311	-3%

주: 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가공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국토교통부, 『국토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9.
_____,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김재진·홍범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박춘래·이은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활용실태』, 한국전산회계학회 정기학술발표회, 2003. 11., pp. 231~2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안종범,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7.3.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14.9.
윤현석,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와 세제지원」, 『한양법학』 20, 2007.2., pp. 404-424.
임윤화, 『2014년 국내 카드업 현황과 향후 전망』, 여신금융연구소, 2015.
장 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3.
정 훈, 『국내 VAN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수단』, 2009.
_____, 『한국의 지급결제수단』, 201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 - Figures for 2014, December 2015.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http://panel.kipf.re.kr>

부 록



<부록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지

I. 결제수단 사용 현황

<지불결제수단별 특징>	
신용카드	약 240만개의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함. 가맹점수수료율은 평균 0.8%~2.7%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보다 높은 편임. 부가서비스,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가입 시 연회비를 내야 함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0.5%~1.55%로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보다 낮은 편이나 가맹점이 많이 없고, 오전 8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부가서비스, 현금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이용한도는 예금잔액에 한함.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형태. 가맹점 수와 사용시간 측면과 부가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점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0.5%~1.5%이고, 이용한도는 예금잔액에 한정된다는 점은 직불카드와 같음. 현금서비스는 신용공여 제공에 따라 가능함.
선불카드	일정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있는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는 형태의 결제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함.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0.5~1.45%임

1. 다음 지불결제수단을 평소에 사용하는 금액 비중을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현금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금	=	합계
□ □ %		□ □ %		□ □ %		□ □ %		100%

I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126의2)>

○ 도입목적

- 1999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제도관련 용어

용어	의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사용 금액의 합계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한도초과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얻는 소득공제 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에서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직불카드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의 합계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
직계존비속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형제 및 시부모를 포함하지 않음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 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여 공제율을 최대로 적용받게끔 유도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 2015년 7월부터 12월에 사용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율 20%를 2015년 소득공제에 적용
 - 2016년 1월부터 6월에 사용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율 20%를 2016년 소득공제에 적용
 - ※ 추가공제를 받을 때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① + ② + ③ + ④ + ⑥ - ⑤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0.3
 - ② 대중교통 이용분 × 0.3
 - ③ 직불카드 등 사용분 × 0.3
 - ④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⑤ 다음 중 해당되는 금액
 - 1)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최저사용금액 × 0.15
 - 2)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 0.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0.3}
 - ⑥ 2015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4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초과한 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금액
 - 1) 201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2016년 12월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0.5)} × 0.2
 - 2)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2016년 6월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0.5)} × 0.2

- 공제한도
 - 기본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공제한도: Min[(전통시장 사용분의 30% + 대중교통 이용분의 30%), 한도초과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추가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의 30%,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의 한도는 각각 100만원으로 한도를 초과해도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2. 본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 ② 받은 적이 없다

3. 본 제도가 귀하의 소비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늘렸다
- ② 조금 늘렸다
- ③ 변화가 없다

4. 본 제도가 귀하의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매우 늘렸다
- ② 조금 늘렸다
- ③ 변화가 없다

5. 본 제도에 따르면 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5-1)로 이동
- ② 몰랐다 ☞ 6으로 이동

5-1) 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 대비 직불·선불·체크카드 사용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사용을 매우 늘렸다
- ② 사용을 조금 늘렸다
- ③ 변화가 없다

6. 2011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최대 300만원)를 초과해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6-1)로 이동
- ② 몰랐다 ☞ 7로 이동

6-1)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전통시장 이용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매우 증가했다 ☞ 7로 이동
- ② 조금 증가했다 ☞ 7로 이동
- ③ 변화가 없다 ☞ 6-2)로 이동

6-2)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더 이용하지 않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②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③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④ 주변 환경과 판매 상품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 ⑤ 전통시장 이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 ⑥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 ⑦ 기타

7. 2013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을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최대 300만원)를 초과해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7-1)로 이동
- ② 몰랐다 ☞ 8로 이동

7-1)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대중교통 이용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매우 증가했다
- ② 조금 증가했다
- ③ 변화가 없었다

8. 2014년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초과하면 신용카드를 제외한 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를 공제해주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8-1)로 이동
- ② 몰랐다 ☞ 8-2)로 이동

8-1)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 조항이 소비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습니까?

- ① 소비를 매우 늘렸다
- ② 소비를 조금 늘렸다
- ③ 변화가 없었다

8-2)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포함
- (2) 신용카드를 포함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자 대상
- (3) 공제액을 산출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사용금액만 기준으로 함
- (4) 과세연도의 하반기와 그 다음해 상반기 사용금액이 전년도의 50%를 초과해야 함

이 조항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 ① 이해하기 어렵다
- ② 적정하다
- ③ 이해하기 쉽다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향

9.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3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통장 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 ③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④ 할부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 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⑥ 기타(사용하지 않음 등)

10. 만약 본 제도로 인한 공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얼마나 조정하시겠습니까?

- ① 많이 줄일 것이다
- ② 조금 줄일 것이다
- ③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성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세 기본세율의 누진적인 구조로 인하여 고소득자의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들
-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 **소득공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의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소득세의 누진세 체계 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감소함**
 -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A와 과세표준이 2억원인 B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최저과표구간에 속한 A는 **6만원**, 최고과표구간에 속한 B는 **38만원**의 세액이 감소함
- **세액공제**: 기본세율이 적용된 이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결정된 세액공제액만큼 세액이 감소함**
 -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A와 과세표준이 2억원인 B가 동일하게 10만원의 세액공제액이 산출된 경우 A, B 모두 세액공제액인 **10만원**의 세액이 감소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단위: 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A		B		A		B	
소득	1,000		20,000		1,000		20,000	
(-) 소득공제	0	100	0	100	0	0	0	0
↓ 과세표준	1,000	900	20,000	19,900	1,000	1,000	20,000	20,000
(×) 기본세율	6%		38%		6%		38%	
↓ 산출세액	60	54	7,600	7,562	60	60	7,600	7,600
(-) 세액공제	0	0	0	0	0	10	0	10
↓ 납부세액	60	54	7,600	7,562	60	50	7,600	7,590
↓ 감소세액	6만원		38만원		10만원		10만원	

11. 본 제도는 봉급생활자의 신용·직불·선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해당 과표구간의 세율을 곱한만큼 소득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몰랐다

12. 본 제도를 동일한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다소 찬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반대한다
- ⑤ 매우 반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공제한도,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 값으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의 한도는 각각 100만원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
 - 2014년 기준으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최소 소득구간은 4억 2천만원
 - 공제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최소 소득구간은 4,050만원
 - 공제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최소 소득구간은 2,300만원
 - 공제한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함
- **공제율:** 항목에 따라 15~30%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이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금액 제외)	15%
직불·선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금액 제외)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분	추가 20%

- **최저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이를 초과된 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이 증가하면 소득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됨

<과거 공제율, 공제한도 변화에 따른 소득구간별 공제금액 변화>

- 2008년 공제율을 15%에서 20%로 늘리고,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늘린 결과 2007년 대비 2008년의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20만원~6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소득 2천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20만원~6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하고,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20%에서 25%로 늘린 결과 2009년 대비 2010년의 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액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4천만원 이상 1억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20만원~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억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100만원 이상이 감소하였음.

13.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2013년 한 해에만 약 8조 8천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물가 상승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몰랐다

14. 본 제도로 인하여 2015년 기준 조세수입은 약 1조 8,163억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조세항목에서 추가 징수하거나 줄어든 조세수입만큼 복지 등의 정부 사업이 축소되어 결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몰랐다

15.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 ②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높다
- ③ 소득공제 혜택보다 가맹점수수료, 신용불량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 ④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지출 비용이 크다
- ⑤ 기타

16. 본 제도를 개편한다면, 다음 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인하한다
- ②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
- ③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소득수준 간 공제금액 차이를 줄인다
- ④ 가맹점수수료가 높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하여 체크·직불·선불카드와의 공제율 격차를 늘린다
- ⑤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 ⑥ 기타

IV. 통계처리 관련 개인정보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18.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19.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고졸 미만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 졸 이상

20.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 ② 단순근로자 : 경비, 배달, 행사, 노동, 청소부 등
- ③ 자영업자 : 상업, 농·수산업, 가내수공업, 수리업, 운전기사 등
- ④ 사무직 :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 기술자 등
- ⑤ 관리직: 고위공무원, 기업체 고위 임원, 경영 및 일반관리자 등
- ⑥ 전문직: 교사,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종교인, 예술가 등
- ⑦ 판매업자 : 도매, 소매업체, 통신판매, 모델, 홍보 등
- ⑧ 기타(학생, 전업주부, 직업군인 등)

21.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부부
- ② 부부+자녀로만 이루어져 있는 2인 가구
- ③ 부부+부모+자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3인 이상 가구
- ④ 1인가구
- ⑤ 기타

22. 귀하 본인(가족이 아닌 개인)의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세전, 2015년 기준)

- ① 2,000만원 미만
- ②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③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④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⑤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⑥ 1억원 이상
- ⑦ 모름 / 무응답

<부록 2>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제출 연월일	결제 연도	분기	신용카드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카드 회사명	대표자명	결제기간 시작 연월일	결제기간 종료 연월일	

2. 신용카드 가맹점

2-1.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결제 연도	분기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				결제 연월	결제 구분	결제건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2-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금액

카드 구분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봉사료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록 3〉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5.3.6.>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1. 신용카드업자

1-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세 무 서	제출 연월일	신용카드업자								
				제출자 구분	사업 자 등록 번호	결제기 간시작 연월일	결제기 간종료 연월일	신용 카드 회사명	대 표 자 명	소재지 법정동 코드 우편번호	소재지 납세지	

1-2. 제출내용

전화번호	제출내용				
	제출건수 계	결제건수 계	결제금액 계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음수표시	금 액	
				원	

2. 신용카드 가맹점

2-1.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사항

레코드 구분	자료 구분	세무서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				결제연월	결제구분	결제건수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성명	주민등 록번호			

2-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금액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봉사료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원			원	

<부록 4>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14.3.14>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자료구분 (1 ~ 5)	가맹점정보					회원정보					거래정보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적발일시	적발사유				

* 자료구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부록 5>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정보 제출 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14.3.14>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1. 입금하는 금융회사 관련 사항	금융회사				제출내용								
레코드구분	귀속연도	분기	제출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금융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제출진수계	결제진수계	봉사료계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계	
			연	월								일	음수표시
레코드구분												음수표시	금액

2.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관련 사항	가맹점				결제금액									
레코드구분	귀속연도	분기	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관리번호		결제연월	결제구분	결제진수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결제금액계	
			번호	번호		연	월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레코드구분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부록 6〉 신용카드 회원 등의 항목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카드종류별·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자 상호	제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구분 코드	연간 카드사용 총금액	국내연간 사용금액	국외연간 사용금액

작성 방법

1. 제출자 사업자 번호 (X10):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2.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3. 카드번호 (X20):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행번호
4. 구분코드 (X01): 1(개인신용카드), 2(직불카드), 3(기타: 체크카드 등)
5.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S9(15)) : 국내 연간 카드사용 금액과 국외 연간 카드사용금액 합계
 - 개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자금유통을 위해 사용한 여신금액(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외
 - 해당년도에 승인(해외사용분은 현지 승인일자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취소된 금액은 제외
6. 국내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내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7. 국외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외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8. X모드: 한글, 영문자 등 항목 왼쪽정렬, 우측 남는 자리는 공간(SPACE)으로 채움
 항목정렬: 신용카드 금액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 항목 왼쪽 정렬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공란(SPACE)으로 채움, 취소의 경우 "-"를 유효숫자 앞에 기재
 * 카드사 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유의

<부록 7> 주유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정보 제출서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6.3.11.>

주유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업자

레코드 구분	제출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 카드 업자 코드	자료 일련 번호	가맹사업자(주유소)			결제 연월	결제 건수	품목* (유종)	수량 (ℓ)	결제금액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음수 표시	금 액

* 품목: 코드로 입력 (1: 경유, 2: 등유, 3: 휘발유, 4: 기타)